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2012. 4.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총괄 | 김춘순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
정영진 (법안비용추계1과장)
박선춘 (법안비용추계2과장)

1부 작성 | 임준기 (법안비용추계1과 예산분석관)

2부 작성 | 전광희 (법안비용추계1과 예산분석관)
김태완 (법안비용추계1과 예산분석관)
정주완 (법안비용추계1과 예산분석관)
서명관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관)
강상규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관)
문지은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관)
이진우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관)
여은구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관)

지원 | 양승미, 정선미

문의 :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과 788-3773 bce@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더 원하시는 의원실에서는 「의정종합지원센터」(788-3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2012. 4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제17대 국회부터 활성화된 입법활동은 제18대에 들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출범하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 소요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법안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것은 입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법안비용추계 요구에 따라 비용추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총 500건의 지출 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18대 국회에 들어서는 법안 비용추계 의뢰가 더욱 증가하여 2008년 383건, 2009년 442건, 2010년 455건 및 2011년 414건 등 총 1,694건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회답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는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 개청 이래 여덟 번째 발간되는 사례집으로서, 지출 비용추계의 현황과 보완점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 및 2011년 지출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11년 우리 처에서 작성한 지출 비용추계서 중 4가지 유형별(보장, 보상, 조직, 사업) 사례 17건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17건의 비용추계서는 이미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거나 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본 사례집이 국회의원님의 입법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요 약

- 2011년 비용추계서 첨부법안은 전체 제안법안 3,717건 중 31.7%인 1,179건임
-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원실에 회답한 법안은 414건임
- 2011년 지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의원발의법안 863건의 29.3%인 253건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였음

- 2011년 지출 및 세수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은 1,179건으로 전체 제안 법안 3,717건 대비 31.7%를 점유
 - 예산명세서가 최초로 첨부된 제13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의원발의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3.8%임
 - 제17대 국회에서는 전체 제안법안 7,489건 대비 21.7%인 1,628건에 비용추계서 첨부
 -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2008년 957건(29.4%), 2009년 1,231건(33.5%), 2010년 1,014건(33.7%) 및 2011년 1,179건(31.7%)으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은 총 4,381건(32.1%)임
-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여 회답한 지출 비용추계 첨부 법안은 414건으로 2010년 455건 대비 9.0% 감소하였음
 -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접수한 지출 비용추계 건수는 477건으로 2010년 516건 대비 7.6% 감소하였으며, 회답 건수는 414건으로 전년 455건 대비 9.0% 감소

- 2011년 회답 건수 414건에 대한 평균 회답기간은 26.5일로서 2010년 26.9일보다 감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지출법안 접수 및 회답 현황

(단위: 건, %)

	접수	철회	회답
2010	516 (100.0)	61 (11.8)	455 (88.2)
2011	477 (100.0)	63 (13.2)	414 (86.8)

- 2011년 지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의원발의법안 863건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법안은 29.3%인 253건임
 -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지출 비용추계 414건 중 61.1%인 253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2011년 재정지출법안 대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작성 현황

(단위: 건)

	국회발의(A)	국회예산정책처 작성(B)	작성 비율(B/A)
지출수반 법안	962	253	26.3
의원발의 지출수반 법안	853	253	29.3

- 2011년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 265건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법안은 66.4%인 176건임

작성주체별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단위: 건, %)

국회예산정책처	의원실	정부	합계
176 (66.4)	71 (26.8)	18 (6.8)	265 (100.0)

차 례

요 약 / 1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 7

I. 법안비용추계 개관	9
1.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및 의의	9
2. 법안비용추계 연혁	10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5
1. 역대 국회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5
2.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16
III.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27
1. 지출 법안비용추계 처리 현황	28
2.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 비용추계 첨부 법안 추계액	37
3. 법안비용추계 만족도 조사결과	42

제2부 법안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 45

I. 보장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5
II. 보상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141
III. 조직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5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
IV. 사업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3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287

표 차 례

[표 1] 법안비용추계 연혁	13
[표 2] 역대 국회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6
[표 3] 연도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17
[표 4] 제18대 국회 위원회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20
[표 5] 연도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22
[표 6] 제18대 국회 작성주체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23
[표 7] 2011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소요액 현황	25
[표 8] 2011년 위원회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액 현황	26
[표 9]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 현황	27
[표 10]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처리 현황	29
[표 11] 월별 재정지출법안 비용추계 접수 현황	29
[표 12] 2011년 지출 비용추계 의뢰 법안의 위원회별 현황	31
[표 13] 2011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기간 현황	32
[표 14] 제·개정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기간 현황	32
[표 15] 연도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처리 현황	33
[표 16] 2011년 추계유형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소요기간	34
[표 17] 의원발의 재정지출법안 중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 비율	35
[표 18] 재정지출법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비중	37
[표 19] 제18대 국회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38
[표 20]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추계액	39
[표 21] 2011년 위원회별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추계액 현황	41

그림 차례

[그림 1] 제안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비교	18
[그림 2] 연도별 지출 비용추계 법안 중 제3호 미첨부사유서 첨부 현황 ...	24
[그림 3] 2011년 위원회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액 비중	25
[그림 4]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지출 비용추계 추이	28
[그림 5] 월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접수 추이	30
[그림 6] 지출 법안비용추계 평균 회답기간	33
[그림 7] 작성주체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39
[그림 8] 2011년 위원회별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 비용추계 첨부 법안 추계액 비중	40
[그림 9] 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	42
[그림 10] 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	43
[그림 11] 법안비용추계 업무 만족도	44



제 1 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1.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및 의의

법안비용추계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비용추계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유사하나, 비용만을 추계대상으로 하고, 비용도 단순히 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화폐적, 회계적 비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더욱이 단순히 화폐적, 회계적 비용만이 아니라 경제학적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는 비용-편익분석과는 차이가 난다.

법안비용추계는 입법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입법평가(legislative evaluation)와 유사하나, 입법에 따르는 재정적 측면의 영향에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국가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입법 평가와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법안이 수반하는 비용을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되었다. 즉 법안이 가결될 경우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가용성 및 조달방법, 재정부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재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 법안비용추계 연혁

국회는 1973년 「국회법」을 개정(전부개정 1973.2.7)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하여 예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당시 「국회법」 제73조제1항은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과 기타 의안은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1981년 개정 「국회법」 제74조제1항 단서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발의 요건을 종전 20인 이상의 찬성에서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였으며, 1988년 개정 「국회법」 제74조제1항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포함한 모든 의안의 발의요건을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명세서(비용추계서)가 첨부되기 시작한 것은 13대 국회인 1988년부터이다.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예산명세서 첨부 실적을 보면, 제13대 국회 20건, 제14대 국회 12건, 제15대 국회 13건, 제16대 국회 76건 등 제16대 국회까지 총 121건(총 의원발의 법률안 3,171건 대비 3.8%)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한편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의 경우는 「법제업무운영규정」(1999년 10월 30일) 및 동 시행규칙(1999년 11월 30일)의 개정으로 재정소요 추계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1999년 11월 30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 작성요령」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1999년 12월 1일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법령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령안에 대한 재정소요 추계제도 역시 그 실적이 미미하였다.

이와 같이 비용추계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비용추계서¹⁾

1) 이전 「국회법」에서는 예산명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05년 7월 개정된 「국회법」

의 제출이 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제17대 국회(2004. 5. 30 ~ 2008. 5. 29)부터이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제17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 연도인 2003년부터 의원들의 예산명세서 작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안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예산정책국은 2003년 법률안 비용추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총 6건의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였다.

2003년 7월 18일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예산정책처를 신설(제22조의2)함과 동시에 「국회예산정책처법」을 제정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포함시켰다.

2005년 7월 「국회법」 제79조의2)의 신설을 통하여 기존의 의원이 발의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예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한 비용추계제도를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이 제정되고 동 규칙의 위임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관련 법규정의 제·개정으로 비용추계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국회의 재정수반의안에 대한 재정적 타당성 심사 또한 강화되었다.

정부의 비용추계제도 역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국가재정법」(2006.10.4

은 “예산명세서”를 “비용에 대한 추계서”로 변경하였다. 본 보고서는 “비용추계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정, 2007.1.1 시행) 제87조3)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제정(제40조)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비용추계제도의 발전으로 제17대 국회 이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업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 동안 비용추계 업무를 담당하던 법안비용추계팀과 세입세제분석팀으로는 의원들의 비용추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4월 30일 법안비용추계팀과 세입세제분석팀을 확대·개편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4)으로 지방자

-
- 3)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0.5.17>
- 4)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2. 2. 25 기준 전북, 강원, 대구, 부산, 대전, 충남, 경남, 인천(공포순) 등 8개 광역의회를 포함한 125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표 1] 법안비용추계 연혁

일 자	주 요 내 용
1973. 02. 07.	「국회법」 제73조 개정으로 예산명세서제도 도입 (예산상 조치수반 의안으로서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
1981. 01. 29.	「국회법」 제74조 (이전 제73조) 개정 (예산상 조치수반 의안으로서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
1988. 06. 15.	「국회법」 제74조 (이전 제73조) 개정 (예산상 조치수반 의안으로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
1988. 07. 18.	예산명세서를 첨부한 최초의 법안(「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덕규의원 대표발의)) 제출
2003. 07. 18.	국회예산정책처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2003. 10. 17.	국회예산정책처 개칭
2004. 06. 16.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세입세제분석팀 비용추계업무 시작
2005. 07. 28.	「국회법」 제79조의2 신설을 통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제안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수반 의안)
2006. 09. 08.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정
2006. 09. 26.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정
2006. 10. 4.	「국가재정법」 제정(제87조) (정부가 제출하는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추계자료 첨부)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정
2007. 01. 01.	「국가재정법」 시행
2009. 04. 30.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관련 조직 확대·개편
2010. 07. 14.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신설로 비용추계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수반 의안)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 역대 국회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최초로 첨부된 제13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의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매우 낮았으나, 제17대 국회(2004. 5. 30 ~ 2008. 5. 29)인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과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을 수반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추계제도가 활성화되었다. 이때부터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제17대 국회의 제안 법률안 총 7,489건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21.7%(1,628건)로서, 의원발의법률안은 23.9%(1,367건/5,728건)이며 정부제출 법률안은 22.1%(243건/1,102건)이다.

제18대 국회⁵⁾에 제안된 13,668건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32.1%(4,381건)로서, 제17대 국회의 21.7%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장기 재정수지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심사에 비용추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정비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 보고서의 제18대 국회 비용추계 통계는 2011.12.31. 기준으로 집계 한 것이다.

[표 2] 역대 국회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단위: 건, %)

	의원발의			정부제출			위원회제안			합 계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전체	첨부	첨부율
제13대	462	20	4.3	368	0	0	108	0	0	938	20	2.1
제14대	252	12	4.8	581	0	0	69	0	0	902	12	1.3
제15대	806	13	1.6	807	0	0	338	0	0	1,951	13	0.7
제16대	1,651	76	4.6	595	0	0	261	0	0	2,507	76	3.0
제17대	5,728	1,367	23.9	1,102	243	22.1	659	17	2.6	7,489	1,628	21.7
제18대	11,016	3,854	35.0	1,683	518	30.8	969	9	0.9	13,668	4,381	32.1

주: 1. 제18대 국회는 2008년 5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누계치임.

2. 추계서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제18대 국회 수입추계서는 751건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가. 법안 제안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국회에 제안되는 법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의 첨부율은 제17대 국회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이하에서는 제17대 국회가 시작된 2004년 5월 30일부터 2011년 말까지의 제안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어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⁶⁾를 첨부하게 되었고, 2006년 10월 유사한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다. 2006년 말부터 모든 의안은 접수 시점에서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지를 검토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운영하면서, 재정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법률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다.

6) 비용추계 건수는 세수 비용추계서를 포함하고, 지출 비용추계서는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를 합하여 구한 것인데, 미첨부사유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비용추계서 대신 제출하는 문서이다.

제17대 국회 제안법률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비율은 21.7%(1,628건/7,489건)이고, 임기 말인 2008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2007년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33.7%로 나타나 2006년의 19.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제18대 국회(2008. 5. 30 ~)에 제안된 법률안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비율은 32.1%(4,381건/13,668건)로서 제17대 국회의 21.7%보다 10%p 이상 증가한 높은 첨부율을 보이고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제17대 국회 임기 말인 2008년 5월까지 24.9%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2008년 29.4%에서 2009년 33.5%, 2010년 33.7%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31.7%(1,179건/3,717건)로 2010년에 비해 2.0%p 하락하였다.

[표 3] 연도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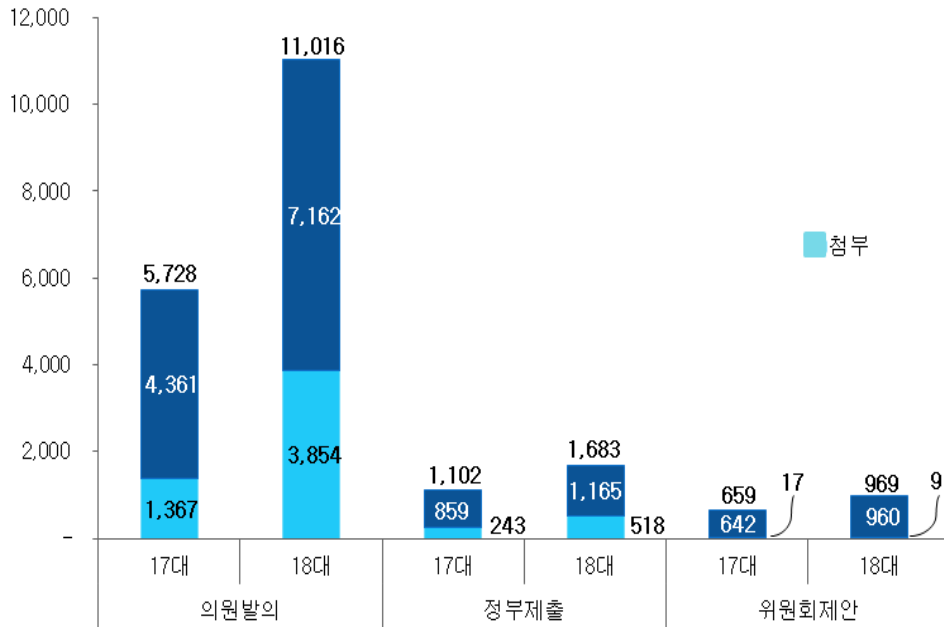
		의원발의		정부제출		위원회제안		합 계	
		전체	첨부	전체	첨부	전체	첨부	전체	첨부
제 17 대	2004 (5.30~)	807	149 (18.5)	201	0 (0.0)	50	0 (0.0)	1,058	149 (14.1)
	2005	1,817	331 (18.2)	242	23 (9.5)	174	3 (1.7)	2,233	357 (16.0)
	2006	1,452	317 (21.8)	325	64 (19.7)	165	5 (3.0)	1,942	386 (19.9)
	2007	1,476	513 (34.8)	319	149 (46.7)	192	6 (3.1)	1,987	669 (33.7)
	2008 (~5.29)	176	57 (32.4)	15	7 (46.7)	78	3 (3.8)	269	67 (24.9)
	계	5,728	1,367 (23.9)	1,102	243 (22.1)	659	17 (2.6)	7,489	1,628 (21.7)
제 18 대	2008 (5.30~)	2,675	782 (29.2)	548	175 (31.9)	37	0 (0.0)	3,260	957 (29.4)
	2009	3,009	1,099 (36.5)	399	123 (30.8)	272	9 (3.3)	3,680	1,231 (33.5)
	2010	2,439	906 (37.1)	406	108 (26.6)	166	0 (0.0)	3,011	1,014 (33.7)
	2011	2,893	1,067 (36.9)	330	112 (33.9)	494	0 (0.0)	3,717	1,179 (31.7)
	계	11,016	3,854 (35.0)	1,683	518 (30.8)	969	9 (0.9)	13,668	4,381 (32.1)

주: 제18대 국회는 2011년말 기준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그림 1] 제안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비교

(단위: 건)



주: 제18대 국회는 2011년말 기준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법안 제안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발의법안의 경우 제18대 국회에 11,016건이 발의되어 제17대 국회 5,728건 대비 92.3%가 증가하였다. 또한 의원발의법안의 증가와 함께 발의법안 대비 비용추계서 첨부율도 35.0%(3,854건)로 제17대 국회 23.9%(1,367건)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제출법안의 경우 제18대 국회 제출법안은 1,683건으로서 제17대 국회 1,102건 대비 52.7% 증가하였다. 제출법안 대비 비용추계서 첨부율도 제17대 국회의 22.1%(243건)에서 제18대 국회는 30.8%(518건)로 첨부율 및 첨부 건수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제18대 국회 위원회제안 법안은 969건으로 제17대 국회 659건 대비 47% 증가하였으나,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제17대 국

회의 위원회제안 법안 대비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2.6%(17건)이나, 제18대 국회의 경우 위원회제안 법안 969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9건(0.9%)에 불과하여 첨부율과 첨부 건수 모두 감소하였다.

위원회제안 법안의 경우, 대부분 위원회 대안으로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확률이 높으며, 또한 유사한 개별법안들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정수반 요인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통과에 따른 재정부담을 제대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위원회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예산처의 전반적인 업무 조정 및 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의 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나. 위원회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제18대 국회의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은 총 4,381건이며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651건(14.9%), 보건복지위원회 613건(14.0%), 행정안전위원회 602건(13.7%), 국토해양위원회 402건(9.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13건(7.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1,179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84건(15.6%), 행정안전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각각 152건(12.9%), 국토해양위원회 127건(10.8%) 및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07건(9.1%)이며, 국토해양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 2010년 대비 추계서 첨부 법안 건수가 각각 122.8% 및 78.3% 증가하였다.

[표 4] 제18대 국회 위원회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단위: 건)

위원회	2008 (5.30~)	2009	2010	2011	합계	평균
국회운영위원회	10	20	6	4	40	4
법제사법위원회	28	51	66	51	196	49
정무위원회	55	52	50	42	199	50
기획재정위원회	170	171	126	184	651	16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9	23	21	19	92	23
국방위원회	28	27	24	37	116	29
행정안전위원회	118	166	166	152	602	15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74	86	75	78	313	7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52	70	43	68	233	58
농림수산식품위원회	40	76	60	107	283	71
지식경제위원회	53	50	50	55	208	52
보건복지위원회	118	180	163	152	613	153
환경노동위원회	46	99	63	65	273	68
국토해양위원회	100	118	57	127	402	101
정보위원회	6	2	0	0	8	2
여성가족위원회	12	19	36	22	89	22
기 타	18	21	8	16	63	16
합 계	957	1,231	1,014	1,179	4,381	1,095

주: 1. 지출 비용추계와 세수추계를 합한 건수임.

2. 특별위원회 중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소관 미확정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다.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및 문제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3조제1항 단서에서는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그 사유서(이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대신에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 ‘제3호사유’에 따른 미첨부사유서의 경우에는 의안의 비용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첨부사유 요건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추계는 지출 비용추계와 세수추계로 나누어지며 지출과 세입이 예산 및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필요한 정보의 성격 및 추계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개청 이후 각기 다른 부서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관리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지출 비용추계 중 ‘제3호사유’ 미첨부사유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17대 국회의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1,628건 중에서 세수추계를 제외한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은 총 1,456건으로서, 2004년 144건에서 2007년에는 560건으로 증가하였다. 제18대 국회의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은 총 3,622건으로서, 2008년부터 2011년 말까지 각각 776건, 1,024건, 860건, 962건이며 제17대 국회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우선 제18대 국회 지출 비용추계 법안 3,622건을 추계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비용추계서 27.5%(995건), 제1호사유 미첨부사유서 23.9%(864건), 제3호사유 미첨부사유서 47.9%(1,736건) 그리고 기타 미첨부사유서 0.7%(27건)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지출 비용추계 법안 대비 제3호 미첨부사유서 첨부 비율은 2007년에는 26.3%(147건)이었으나, 제18대 국회에 들어서 2008년 45.6%(354건), 2009년 49.4%(506건), 2010년 44.4%(382건) 및 2011년 51.4%(494건)로 나타나, 제3호 미첨부사유서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18대 국회의 제3호 미첨부사유서 1,736건을 비용추계서 작성주체별로 살펴보면, 의원실 1,397건(80.5%), 위원회 2건(0.1%), 국회예산정책처 169건(9.7%) 그리고 정부 168건(9.7%)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연도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단위: 건, %)

대별	연 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합 계
			제1호	제3호	기 타	
제17대 국 회	2004	124 (86.1)	19 (13.2)	1 (0.7)	0 (0.0)	144 (100.0)
	2005	272 (77.3)	51 (14.5)	12 (3.4)	17 (4.8)	352 (100.0)
	2006	165 (48.1)	78 (22.7)	55 (16.0)	45 (13.1)	343 (100.0)
	2007	199 (35.5)	175 (31.3)	147 (26.3)	39 (7.0)	560 (100.0)
	2008 (~5.29)	16 (28.1)	16 (28.1)	23 (40.4)	2 (3.5)	57 (100.0)
	소 계	776 (53.3)	339 (23.3)	238 (16.3)	103 (7.1)	1,456 (100.0)
제18대 국 회	2008 (5.30~)	209 (26.9)	207 (26.7)	354 (45.6)	6 (0.8)	776 (100.0)
	2009	246 (24.0)	264 (25.8)	506 (49.4)	8 (0.8)	1,024 (100.0)
	2010	275 (32.0)	201 (23.4)	382 (44.4)	2 (0.2)	860 (100.0)
	2011	265 (27.6)	192 (20.0)	493 (51.2)	12 (1.2)	962 (100.0)
	소 계	995 (27.5)	864 (23.9)	1,736 (47.9)	27 (0.7)	3,622 (100.0)
합 계		1,771	1,203	1,974	130	5,078

주: 1. 전체 비용추계서 첨부법안 중에서 세수추계 법안을 제외한 지출 비용추계 법안 통계 자료임.

2. 미첨부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제3호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면 '제3호사유'로, '제1호사유'와 '제2호사유'가 결합되어 있으면 '제2호사유'로 분류함.

3. '기타'는 '제2호사유'인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재정수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한 경우를 의미함.

4. 제18대 국회는 2011년말 기준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6] 제18대 국회 작성주체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단위: 건, %)

작성주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합 계	
			제1호사유		제3호사유		기타사유			
	18대	2011	18대	2011	18대	2011	18대	2011	18대	2011
국회 예산처	560 (58.0)	176 (69.6)	234 (24.2)	61 (24.1)	169 (17.5)	13 (5.1)	3 (0.3)	3 (1.2)	966 (100.0)	253 (100.0)
위원회	2 (50.0)	- (-)	- (-)	- (-)	2 (50.0)	- (-)	- (-)	- (-)	4 (100.0)	- (-)
의원실	326 (14.8)	71 (11.7)	453 (20.6)	93 (15.3)	1,397 (63.6)	437 (71.9)	22 (1.0)	7 (1.1)	2,198 (100.0)	608 (100.0)
정 부	107 (23.6)	18 (17.8)	177 (39.0)	38 (37.6)	168 (37.0)	43 (42.6)	2 (0.4)	2 (2.0)	454 (100.0)	101 (100.0)
합 계	995 (27.5)	265 (27.6)	864 (23.9)	192 (20.0)	1,736 (47.9)	494 (51.2)	27 (0.7)	11 (1.2)	3,622 (100.0)	962 (100.0)

주: 1. 의원실 작성 추계서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추계서도 포함됨.

2. 제18대 국회는 2008년 5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누계치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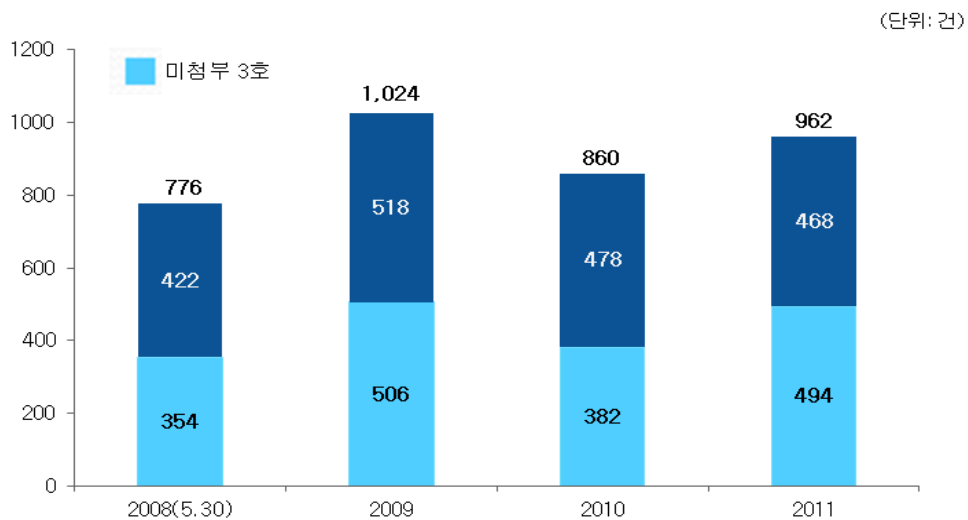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제3호' 미첨부사유서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하고 의안 접수단계에서 재정수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강화함에 따라 의원실에서 점차 연도별 비용추계가 포함된 비용추계서 대신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첨부사유서의 폭넓은 허용은 자칫 비용추계를 통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국회법」의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다. 모든 미첨부사유서가 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나 소요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비교 및 판단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미첨부사유서가 많아지지 않도록 비용추계서의 품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7) 제17대 국회 5,728건(추계서 첨부 1,367건)에서 제18대 국회에는 11,016건(추계서 첨부 3,854건)으로 증가하였다.

미첨부사유서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고 비용추계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용추계서에 활용된 정보에 대한 출처 제시와 작성자를 명확히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비용추계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절차를 고안하여 작성 주체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연도별 지출 비용추계 법안 중 제3호 미첨부사유서 첨부 현황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라.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소요액 현황

2011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962건 중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265건에 대한 향후 5년간⁸⁾의 총 추계액은 417조 3,535억 원이며 연평균 추계액은 84조 7,974억 원이다. 또한 법안 1건당 평균 추계액은 1조 5,749억 원이고 법안 1건당 연평균 추계액은 3,200억 원이다.

8) 제안된 법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계시점과 제안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추계시점에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재정소요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7] 2011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소요액 현황

(단위: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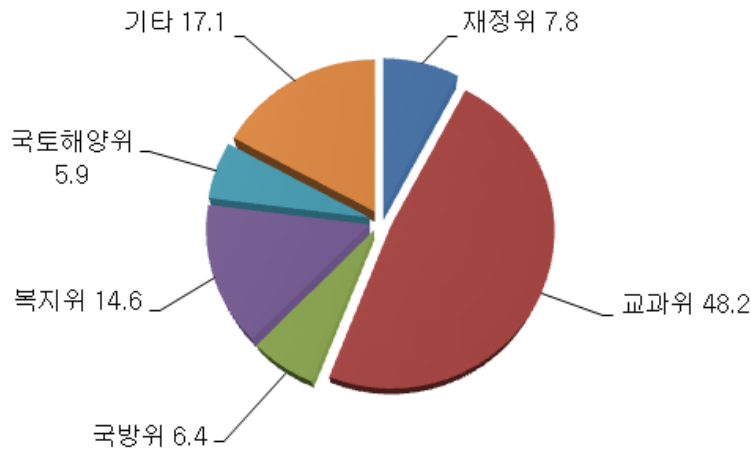
법안 건수	총 추계액	연평균 추계액	법안1건당 추계액	법안1건당 연평균 추계액
265	4,173,535	847,974	15,749	3,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265건의 5년간 추계액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8건에 201조 3,366억 원(48.2%), 보건복지위원회가 48건에 60조 7,469억 원(14.6%),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2건에 39조 1,136억 원(9.4%), 기획재정위원회가 4건에 32조 7,098억 원(7.8%), 국방위원회가 10건에 26조 6,389억 원(6.4%)이다.

[그림 3] 2011년 위원회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액 비중

(5년기준, 단위: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법안의 추계액이 총 추계액의 48.2%에 이르는 것은 2011년에 대학 등록금 감면 또는 무이자 대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및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 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8] 2011년 위원회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액 현황

(단위: 건, 억원, %)

위원회	법안 건수	총 추계액	연평균 추계액	법안 1건당 추계액	법안 1건당 연평균 추계액
국회운영위원회	1 (0.4)	18 (0.0)	4	18 (0.0)	4
법제사법위원회	6 (2.3)	4,556 (0.1)	911	759 (0.0)	152
정무위원회	16 (6.0)	12,015 (0.3)	2,475	751 (0.0)	155
기획재정위원회	4 (1.5)	327,098 (7.8)	65,503	81,774 (5.2)	16,37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 (1.5)	1,049 (0.0)	210	262 (0.0)	52
국방위원회	10 (3.8)	266,389 (6.4)	53,936	26,639 (1.7)	5,394
행정안전위원회	32 (12.1)	52,711 (1.3)	15,714	1,647 (0.1)	49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8 (10.7)	2,013,366 (48.2)	400,026	71,906 (4.6)	14,28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7 (6.4)	8,352 (0.2)	3,758	522 (0.0)	22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30 (11.3)	29,876 (0.7)	5,565	996 (0.1)	186
지식경제위원회	12 (4.5)	36,201 (0.9)	18,341	3,291 (0.2)	1,528
보건복지위원회	48 (18.1)	607,469 (14.6)	121,939	12,656 (0.8)	2,540
환경노동위원회	20 (7.5)	136,355 (3.3)	28,089	6,818 (0.4)	1,405
국토해양위원회	23 (8.7)	246,464 (5.9)	44,900	11,736 (0.7)	1,952
여성가족위원회	2 (0.8)	653 (0.0)	131	327 (0.0)	6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1.9)	2,068 (0.0)	555	414 (0.0)	111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1 (0.4)	1,961 (0.0)	392	1,961 (0.1)	392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 대회개최지원특별위원회	3 (1.1)	1,327 (0.0)	406	135 (0.0)	442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2 (0.8)	391,136 (9.4)	78,227	195,568 (12.4)	39,114
공향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 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1 (0.4)	34,472 (0.8)	6,894	34,472 (2.2)	6,894
합 계	265 (100.0)	4,173,535 (100.0)	847,974	15,749 (1.0)	3,200

주: 1. 본 집계는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소요액을 단순 취합하여 유사한 내용의 대안 등이 중복 집계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괄호안은 합계액에 대한 비율이며, 법안 1건당 추계액은 전체 평균 추계액의 배율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Ⅲ.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 중 하나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를 규정하고 있다.⁹⁾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부서는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팀이다. 법안비용추계팀은 제17대 국회에서 500건의 지출 법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원실에 회답하였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2011년 말 기준으로 1,694건의 법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회답하였다.

[표 9]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 현황

(단위: 건,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회답건수	54	145	139	143	402 (383)	442	455	414

주: ()는 제18대 국회(2008. 5. 30 ~) 추계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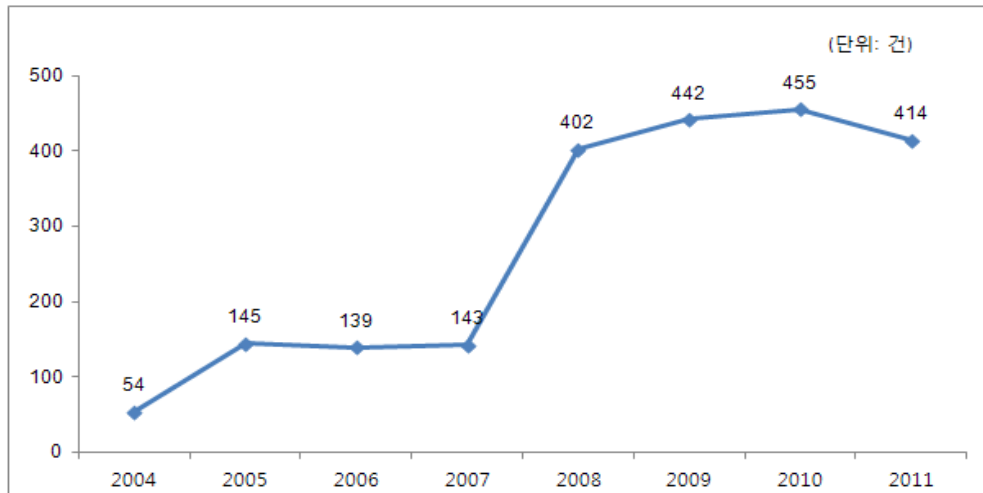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법안비용추계팀은 비용추계 관련 제도·기법에 대한 연구, 조사·분석 및 자료발간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18대 국회 들어 비용추계 업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법안비용추계팀을 확대·개편하였다.

9) 비용추계는 지출 비용추계와 세수추계로 나누어지며, 지출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에 대한 추계이며, 수입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대한 추계이다. 세수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의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작성 현황은 지출추계 현황으로 한정함.

이하에서는 2011년 의원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지출 법안비용 추계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4]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지출 비용추계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지출 법안비용추계 처리 현황

가. 지출 법안비용추계 접수 및 회답 현황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받아 회답한 지출 법안비용추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1년 의원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출 법안비용추계를 의뢰한 법안은 477건으로서 2010년 516건(455건 회답) 대비 7.6% 감소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뢰 법안 477건 중 414건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회답하였으며, 재정수반요인을 수반하지 않는 63건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추계요구를 철회하였다.

2008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접수한 지출 법안비용추계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바,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비용추계 관련 업무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처리 현황

(단위: 건, %)

	접수	철회	회답	미대상
2010	516	61	455	37
2011	477 (-7.6)	63 (3.3)	414 (-9.0)	40 (8.1)

주: 1. 회답 건수에는 재정수반요인이 없는 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대신에 '미대상사유서'를 작성하여 회답한 미대상법안이 포함됨.

2.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감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월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접수 현황

국회예산정책처가 접수한 월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일정한 추세를 가지지는 않지만 국회운영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임시회¹⁰⁾가 열리지 않는 3월에는 비용추계 의뢰건수가 증가하고, 정기회¹¹⁾가 열리는 9~10월에는 감소하며, 연말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1] 월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접수 현황

(단위: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8	5	3	0	5	11	80	88	57	48	43	46	58	444
2009	34	39	56	36	53	53	58	42	29	19	51	38	508
2010	33	34	62	40	34	29	49	59	31	31	55	59	516
2011	44	45	58	58	44	43	22	41	35	43	35	9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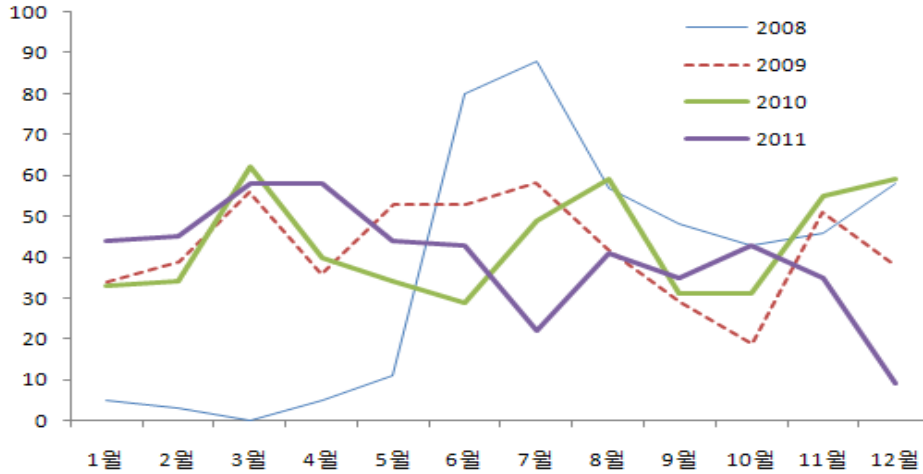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임시회는 「국회법」 제5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매 짝수월(8, 10, 12월 제외) 1일에 집회함.

11) 정기회는 「국회법」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집회함.

[그림 5] 월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접수 추이

(단위: 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회예산정책처 접수 지출 법안비용추계의 위원회별 현황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 접수된 지출 법안비용추계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전체 477건 중에서 행정안전위원회 71건(14.9%), 보건복지위원회 69건(14.5%), 국토해양위원회 52건(10.9) 및 농림수산식품위원회 49건(10.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지출 법안비용추계 477건을 의뢰 주체별로 살펴보면, 의원실 의뢰 건수가 470건(98.5%)이고 위원회 의뢰 건수가 7건(1.5%)으로서, 위원회의 의뢰 건수는 2010년의 9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많은 법안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 또는 대안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법안비용추계 의뢰 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2011년 지출 비용추계 의뢰 법안의 위원회별 현황

(단위: 건, %)

위원회	법안 건수	위원회제안
국회운영위원회	7 (1.5)	-
법제사법위원회	15 (3.1)	1
정무위원회	25 (5.2)	-
기획재정위원회	0 (0.0)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7 (1.5)	-
국방위원회	21 (4.4)	-
행정안전위원회	71 (14.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7 (7.8)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45 (9.4)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49 (10.3)	-
지식경제위원회	22 (4.6)	6
보건복지위원회	69 (14.5)	-
환경노동위원회	43 (9.0)	-
국토해양위원회	52 (10.9)	-
여성가족위원회	9 (1.9)	-
특별위원회	5 (1.0)	-
합 계	477 (100.0)	7 (1.5)

주: 특별위원회(5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2건), 평창 동계 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1건), 공항발전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 (2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기간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 접수된 477건 중 철회 63건을 제외한 414건의 법안에 대한 평균 회답요구기간은 7.4일, 중앙값은 7.0일로 집계되었다. 접수 이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회답하는데 소요된 평균 회답소요기간은 26.5일, 중앙값은 22.0일이다.

[표 13] 2011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기간 현황

(단위: 건, 일)

회답 법안	회답요구기간		회답소요기간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414	7.4	7.0	26.5	2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접수하여 회답한 지출 비용추계법안은 제정안¹²⁾ 120건이고 개정안 294건이다. 법안 유형별로 평균 회답요구기간을 살펴보면 제정안은 8.1일, 개정안은 7.2일이며 전체 평균 회답요구기간은 7.4일이다.

[표 14] 제·개정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기간 현황

(단위: 건, 일, %)

년도	구분	회답 법안	회답요구기간		회답소요기간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2009	제정안	129	8.1	8.0	24.5	21.0
	개정안	313	6.9	7.0	21.3	17.0
	전 체	442	7.2	7.0	22.2	18.0
2010	제정안	100	9.0 (0.9)	8.0 (0.0)	29.9 (5.4)	28.5 (7.5)
	개정안	355	8.5 (1.6)	7.0 (0.0)	26.0 (4.7)	23.0 (6.0)
	전 체	455	8.6 (1.4)	7.0 (0.0)	26.9 (4.7)	24.0 (6.0)
2011	제정안	120	8.1 (-0.9)	7.0 (-1.0)	28.3 (-1.6)	22.5 (-6.0)
	개정안	294	7.2 (-1.3)	7.0 (0.0)	25.7 (-0.3)	21.0 (-2.0)
	전 체	414	7.4 (-1.2)	7.0 (0.0)	26.5 (-0.4)	22.0 (-2.0)

주: 1. 2011년 제정안에는 전부개정안 7건 및 결의안 2건이 포함되어 있음.
 2. 2009년 제정안에는 전부개정안 7건 및 결의안 1건, 2010년 제정안에는 전부개정안 5건 및 결의안 2건이 각각 포함되어 있음.
 3. 대상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며, 회답 요구 및 소요기간은 전년 대비 차(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전부개정법률안과 결의안을 포함한 건수임.

접수 이후 추계서를 작성하여 회답하는데 소요된 평균 회답소요기간은 제정안이 28.3일, 개정안이 25.7일이며 전체 평균 회답소요기간은 26.5일이다. 2010년의 유형별 회답소요기간과 비교하면, 제정안은 1.6일(2010년 29.9일), 개정안은 0.3일(2010년 26.0일)이 단축되었으며, 전체 평균 회답소요기간은 0.4일 단축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출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연도별 평균 회답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부터 의회 법안 건수가 증가하면서 평균 회답소요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연도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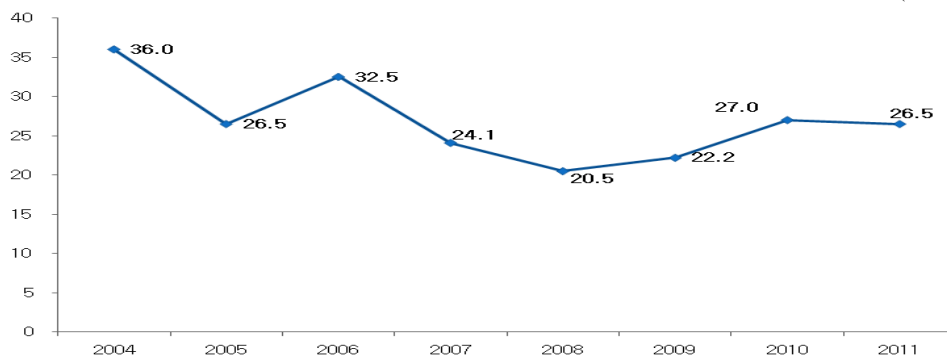
연도별	접수	철회	회답	평균 회답기간
2004	54	-	54	36.0
2005	184	39	145	26.5
2006	184	45	139	32.5
2007	166	22	143	24.1
2008	444 (421)	42 (38)	402 (383)	20.5
2009	508	66	442	22.2
2010	516	61	455	27.0
2011	477	63	414	26.5
합 계	2,533	338	2,194	

주: ()는 제18대 국회의 건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6] 지출 법안비용추계 평균 회답기간

(단위: 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하여 회답한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법안비용추계서는 272건으로 전체 회답건수 374건 대비 72.7%이며, 평균 회답소요기간은 30.4일이다. 제1호사유 미첨부사유서는 전체 회답건수 대비 22.2%인 83건이고, 평균 회답소요기간은 20.4일이다. 제2호 및 제3호사유 미첨부사유서는 각각 1건과 18건이며, 평균 회답소요기간은 각각 3.0일과 21.8일이다.

[표 16] 2011년 추계유형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소요기간

(단위: 건, 일)

유형	회답 건수	회답소요기간	
		평균	중앙값
비용추계서	272	30.4 (30.1)	27.0 (28.0)
제1호사유 미첨부사유서	83	20.4 (20.5)	15.0 (15.0)
제2호사유 미첨부사유서	1	3.0 (24.0)	3.0 (24.0)
제3호사유 미첨부사유서	18	21.8 (33.0)	15.5 (33.0)
합 계	374	27.7 (28.2)	22.5 (26.0)

주: 회답 건수는 전체 회답 건수 414건에서 미대상법안 40건을 제외한 건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제3호사유’ 미첨부사유서를 포함한 미첨부사유서 회답 건수를 줄이면서도 회답소요기간을 단축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의 비용추계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추계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용추계서를 유형별로 관리·분석하며, 상호 토론과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안의 조문 해석 및 실태 조사,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고서 작성, 검토 및 결재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비용추계 업무의 특성상 추계서 회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추계 의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에는 회답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회답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안 초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 및 비용추계 업무의 적절한 배분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 재정지출법안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서 첨부 비율

국회의원실에서 재정지출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의뢰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회답을 한 경우에 회답된 법안이 모두 발의 되지는 않는데 이는 국회의원실의 법률안 발의에 대한 재검토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의원실에 회답한 지출 비용추계 건수 대비 국회 발의 비율은 제17대 국회 57.2%, 제18대 국회 57.0%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지출 비용추계서 414건 중 61.6%인 253건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표 17] 의원발의 재정지출법안 중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 비율

(단위: 건수, %)

구 분	국회접수 법안건수 (a)	국회예산처		발의비율 (b/c)	국회예산처 작성 비율 (b/a)	
		작성건수 (b)	회답건수 (c)			
제17대	2004	144	15	54	27.7	10.4
	2005	352	77	145	53.1	21.9
	2006	343	76	139	54.7	22.2
	2007	560	111	143	77.6	19.8
	2008 (~5.29)	57	7	19	36.8	12.3
	소 계	1,456 (1,215)	286	500	57.2	19.6 (23.5)
제18대	2008 (5.30~)	776 (623)	181	383	47.3	23.3 (29.1)
	2009	1,024 (923)	284	442	64.3	27.7 (30.8)
	2010	860 (771)	248	455	54.5	28.8 (32.2)
	2011	962 (863)	253	414	61.1	26.3 (29.3)
	소 계	3,622 (3,180)	966	1,694	57.0	26.7 (30.4)

주: 1. ()는 지출수반 법률안 중 의원발의 법률안 수 및 작성비율임.

2. 제18대 국회는 2011년말 기준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재정지출법안 중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비율은 제17대 국회에는 19.6%였으나 제18대 국회의 경우 26.7%로 대폭 증가하였다. 재정지출법안 중 의원발의 법안에 한정하면 제17대 국회에는 23.5%였으나 제18대 국회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약 30.4%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다.

2011년에는 재정지출법안 962건 중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26.3%인 253건이며, 의원발의 법안 863건을 기준으로 하면 29.3%이다.

바. 작성주체 및 제출주체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국회에 접수된 재정지출법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비율을 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제17대 국회에는 전체 재정지출법안 1,456건 대비 19.6%인 286건이었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연도별로 약 2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경우 제17대 국회에는 15.8%인 230건이었으나 제18대 국회에는 약 11%로 점유율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의원발의 법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제안된 재정지출법안은 2010년 860건 대비 11.9% 증가한 962건이며, 이를 작성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6.3%인 253건, 의원실에서 63.2%인 608건 그리고 정부에서 10.5%인 101건이다.

[표 18] 재정지출법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비중

(단위: 건, %)

제안자	작성자	국회예산처		의원실		정부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7대	의원	285	23.5	928	76.4	2	0.2	1,215	100.0
	정부	-	-	-	-	226	100	226	100.0
	위원회	1	6.7	12	80	2	13.3	15	100.0
	합계	286	19.6	940	64.6	230	15.8	1,456	100.0
2008 (5.30~)	의원	181	29.1	432	69.3	10	1.6	623	100.0
	정부	-	-	-	-	153	100.0	153	100.0
	위원회	-	-	-	-	-	-	-	100.0
	합계	181	23.3	432	55.7	163	21.0	776	100.0
2009	의원	283	30.7	634	68.7	6	0.7	923	100.0
	정부	-	-	-	-	92	100.0	92	100.0
	위원회	1	11.1	4	44.4	4	44.4	9	100.0
	합계	284	27.7	638	62.3	102	10.0	1,024	100.0
2010	의원	248	32.2	522	67.7	1	0.1	771	100.0
	정부	-	-	-	-	89	100.0	89	100.0
	위원회	-	-	-	-	-	-	-	100.0
	합계	248	28.8	522	60.7	90	10.5	860	100.0
2011	의원	253	29.3	608	70.5	2	0.2	863	100.0
	정부	-	-	-	-	99	100.0	99	100.0
	위원회	-	-	-	-	-	-	-	100.0
	합계	253	26.3	608	63.2	101	10.5	962	100.0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 비용추계 첨부 법안 추계액

2011년 제안된 법안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의 향후 5년간 추계액을 분석한다.¹³⁾ 법안의 내용 등에 따라 재정수반요인 또는 추계액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뢰법안에 대한 비

13) 제안된 법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계시점과 제안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추계시점에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재정소요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용추계를 객관적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별, 연차별 재정소요액의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된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09건, 2009년 246건, 2010년 275건 및 2011년 26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지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73건(34.9%), 2009년 132건(53.7%), 2010년 179건(65.1%) 및 2011년 176건(66.4%)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제18대 국회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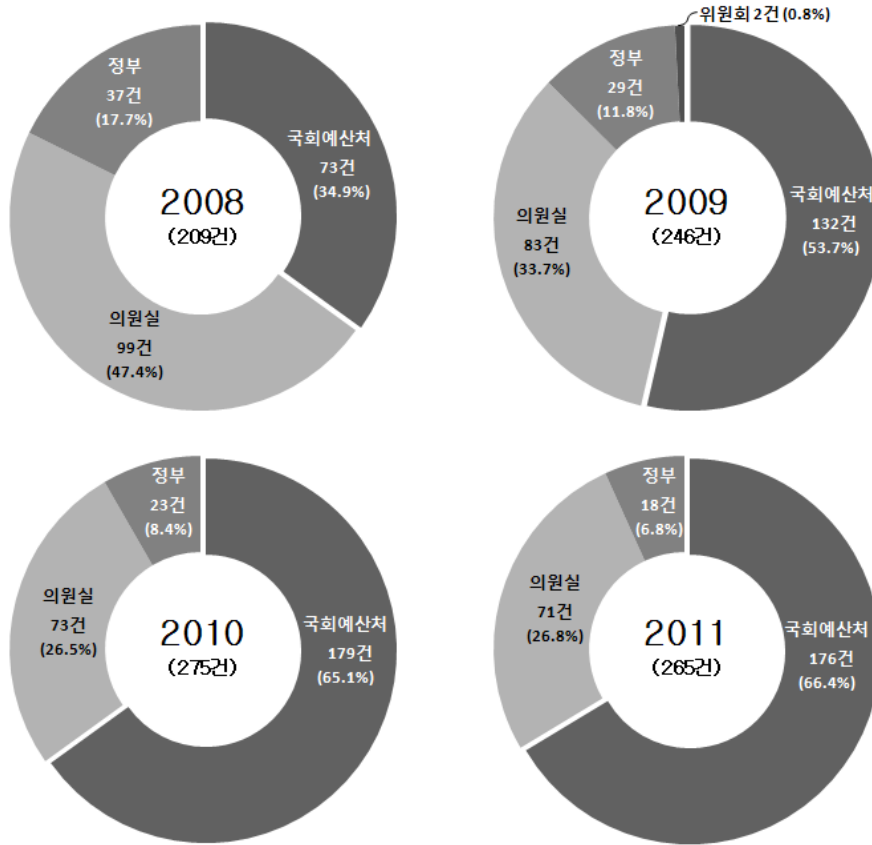
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의원실	정부	위원회	합계
2008	73 (34.9)	99 (47.4)	37 (17.7)	-	209 (100.0)
2009	132 (53.7)	83 (33.7)	29 (11.8)	2 (0.8)	246 (100.0)
2010	179 (65.1)	73 (26.5)	23 (8.4)	-	275 (100.0)
2011	176 (66.4)	71 (26.8)	18 (6.8)	-	265 (100.0)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11년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 265건을 추계서 작성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66.4%인 176건, 의원실이 26.8%인 71건 정부가 6.8%인 18건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가 3분의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 176건의 재정소요는 5년간 총 202조 9,715억원이며, 연평균 추계액은 42조 410억원, 법안 1건당 평균 추계액은 1조 1,532억원 그리고 법안 1건당 연평균 추계액은 2,389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작성주체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20]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 비용추계 첨부 법안 추계액
(단위: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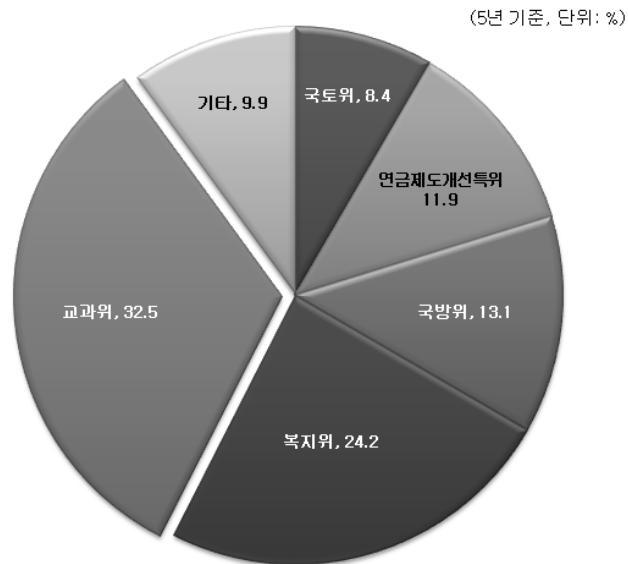
법안 건수	총 추계액	연평균 추계액	법안 1건당 평균 추계액	법안 1건당 연평균 추계액
176	2,029,715	420,410	11,532	2,389

주: 본 집계는 제안된 법안의 소요액을 단순 취합하여 작성한 결과로 유사한 재정수반요인이 중복되어 집계될 수 있고 미첨부사유서 등도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위원회별 추계소요액을 집계한 결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 추계액은 2012년부터 5년간 총 65조 8,992억원으로 전체 추계액의 32.5%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안 1건당 추계액은 3조 2,950억원으로 전체 법안 1건당 평균 추계액의 2.9배이다. 다음으로 추계액의 점유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추계액은 49조 531억원으로서, 전체 추계액 대비 24.2%이며 법안 1건당 평균 추계액은 1조 6,351억원으로 전체 평균의 1.4배이다.

[그림 8] 2011년 위원회별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 비용추계 첨부 법안 추계액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1] 2011년 위원회별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추계액 현황

(단위: 건, 억원, %)

소관위원회	법안 건수	총 추계액	연평균 추계액	법안1건당 추계액	법안1건당 연평균 추계액
국회운영위원회	1 (0.6)	18 (0.0)	4	18 (0.0)	4
법제사법위원회	3 (2.3)	3,715 (0.2)	743	1,238 (0.1)	248
정무위위원회	8 (4.5)	1,371 (0.0)	274	171 (0.0)	34
기획재정위원회	0	0	0	0	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 (2.3)	1,049 (0.0)	210	262 (0.0)	53
국방위원회	7 (4.0)	265,689 (13.1)	53,506	37,956 (3.3)	7,644
행정안전위원회	25 (14.2)	47,181 (2.3)	11,729	1,887 (0.2)	46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 (11.4)	658,992 (32.5)	129,900	32,950 (2.9)	6,49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9 (5.1)	2,096 (0.1)	2,441	233 (0.0)	27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6 (14.8)	27,448 (1.4)	5,079	1,056 (0.1)	195
지식경제위원회	8 (4.5)	5,723 (0.3)	12,246	715 (0.1)	1,531
보건복지위원회	30 (17.0)	490,531 (24.2)	98,074	16,351 (1.4)	3,269
환경노동위원회	9 (5.1)	76,157 (3.8)	15,984	8,462 (0.7)	1,776
국토해양위원회	17 (9.7)	169,909 (8.4)	34,217	9,995 (0.9)	2,013
여성가족위원회	2 (1.1)	653 (0.0)	131	327 (0.0)	66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 (2.3)	1,232 (0.0)	262	411 (0.0)	87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1 (0.6)	1,961 (0.1)	392	1,961 (0.2)	392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개최지원특별위원회	1 (0.6)	431 (0.0)	108	431 (0.0)	108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1 (0.6)	241,088 (11.9)	48,218	241,088 (20.9)	48,218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1 (0.6)	34,472 (1.7)	6,894	34,472 (3.0)	6,894
합 계	176 (100.0)	2,029,715 (100.0)	420,410	11,532 (1.0)	2,389

주: 1. 본 집계는 발의된 법안의 소요액을 단순 취합하여 작성한 집계이므로, 유사한 내용의 대안 등이 중복되어 집계될 수 있고 미첨부사유서 등도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괄호안은 합계액 대비 점유비중이며, 법안 1건당 추계액은 전체 평균 추계액의 비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법안비용추계 만족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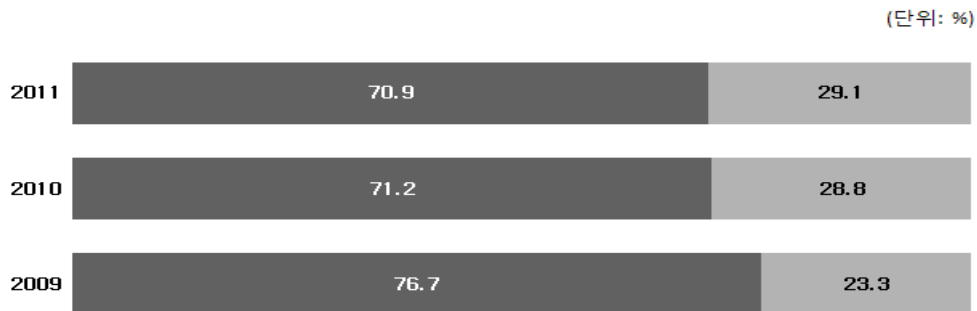
제18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법안비용추계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이다. 본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 모집단은 제18대 국회의원 전원이며, 유효표본 집단은 보좌진을 포함한 총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전 전화접촉 후 방문배포 및 회수방식이며, 회수율은 전체 295명 대비 87.5%이다.

가. 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 및 이유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법안비용추계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의뢰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9%, ‘의뢰경험 없다’는 응답이 29.1%로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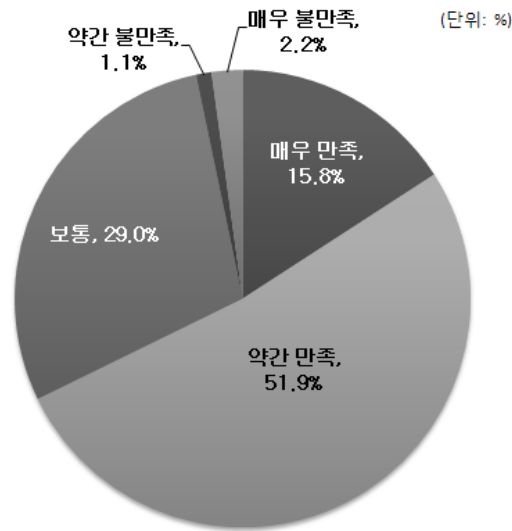
주: 유효 표본집단은 2009년 253명, 2010년 243명 및 2011년 258명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를 의뢰한 이유를 살펴보면,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라는 응답이 53.6%, ‘국회예산정책처 외 마땅히 의뢰할 만한 곳이 없어서’가 21.3%, ‘법안비용추계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가 18.0% 그리고 ‘의원실에서 작성할 시간이 부족해서’ 7.1%로 나타났다.

나.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만족도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여 회답한 법안비용추계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15.8%, ‘약간 만족한다’ 51.9%로서, ‘만족한다’는 평가가 67.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 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



주: 2011년 법안비용추계 의뢰경험자 183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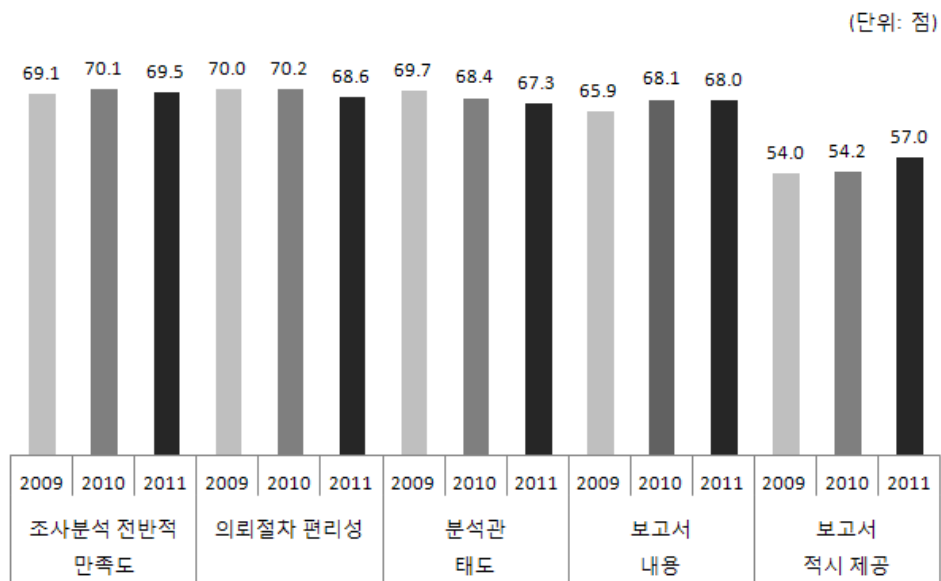
2011년 법안비용추계 업무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점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69.5점으로, 2009년 69.1점 및 2010년 70.1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세부항목별로는 비용추계서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의뢰절차의 편리성은 2010년 70.2점에서 2011년 68.6점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용추계서의 적시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54.2점에서 2011년 57.0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편으로는 법안비용추계 업무 개선요망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비용추계서의 적시 제공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추계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기간 단축, 통계처리 및 분석기법 등에 대한 지속적 학습을 통하여 비용추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회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법안비용추계 업무 만족도



주: 해당년도의 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 2 부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 장 법 안	47
보 상 법 안	103
조 직 법 안	179
사 업 법 안	231

보장법안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49
(일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 재부여)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7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범위 확대)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73
(최저임금 차액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대상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5
(진폐 의증판정자 진폐보상연금 지급)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가지고 있던 일부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은 2009년 7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단계별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동 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마저 상실한 빈곤층으로 국고에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대납되고 있고, 이들이 사용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일부 차상위계층을 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켜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필요성에 따라 제기되었다. 또한 재정상황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가 변동되어 옴에 따라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의료급여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차상위계층이 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온 국고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급여비의 90% 이상(의료급여 수급권자 당시 평균 본인부담비율이 1종의 경우 0.4%, 2종의 경우 9.0%이므로, 이를 제외한 1종 99.6%, 2종 91%를 국가가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급 예산이 기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본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 일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출 실적, 보험료 국고지급액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당시 평균 본인부담비율이 1종의 경우 0.4%, 2

종의 경우 9.0%이므로, 이를 제외한 99.6%(1종), 91.0%(2종)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급하여왔으므로, 동 금액에 대한 향후 5년간 추정값을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추계결과 일부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재전환함에 따라 2012년 7,50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4조 9,77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일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전환

개정안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동 계층의 급여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안 제3조제1항제9호).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서,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일부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 시킬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2012년 7,503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1조 2,709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4조 9,777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안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7,503	8,588	9,806	11,173	12,709	49,777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자격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에게 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대상의 급여비용을 최근 5년간 실적을 통해 추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부담금(1종 0.4%, 2종 9.0%!)을 제외한 급여비를 국고로 지원하게 될 때 소요되는 규모를 추정한다.

2. 일부 차상위계층 진료 실적

개정안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이들의 급여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의료급여 2종에 해당한다. 동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본인부담차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일부 차상위계층 급여비 부담 및 국고지원규모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본인부담	보험자부담 ¹⁾	본인부담	보험자부담	본인부담	보험자부담
1종	594	140,085	1,088	249,984	1,099	261,053
(본인·공단부담 비율)	(0.4%)	(99.6%)	(0.4%)	(99.6%)	(0.4%)	(99.6%)

1) 동 대상의 2009~2010년 평균 본인부담비율임

	2008		2009		2010	
	본인부담	보험자부담 ¹⁾	본인부담	보험자부담	본인부담	보험자부담
2종 ²⁾	-	-	28,079	279,584	50,505	514,022
(본인·공단부담 비율)	-	-	(9.1%)	(90.9%)	(8.9%)	(91.1%)
국고지원액 계	51,656		127,254		113,870	
- 본인부담차액지원	50,176		116,051		98,088	
- 보험료 지원	1,480		11,203		15,782	
총진료비	140,679		558,735		826,679	

주: 1) 보험자 부담금은 본인부담차액지원금 포함 금액임

2) 차상위2종의 경우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분리하여 금액 산출 불가

- 종별 차상위 전환 시기별 차이로 인해, 총진료비 실적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제출자료(2011. 8)

추계의 대상인 일부 차상위계층의 최근 5년간 대상인원과 총진료비, 1인당 진료비는 다음과 같다.

[표 3] 일부 차상위계층 급여비 실적: 2006~2010년

(단위: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희귀 난치성 질환자	대상자수	17,722	17,819	19,227	20,226	21,789
	총진료비	202,160,443	221,380,978	230,462,332	251,735,216	262,152,108
	1인당 진료비	11,407	12,424	11,986	12,446	12,031
만성 질환자	대상자수	69,786	71,168	78,579	90,127	91,962
	총진료비	210,719,406	265,237,065	313,805,502	288,841,970	350,006,822
	1인당 진료비	3,020	3,727	3,994	3,205	3,806
18세 미만 아동	대상자수	112,582	115,520	121,864	140,623	162,938
	총진료비	53,063,635	56,559,463	58,864,544	179,245,679	214,520,310
	1인당 진료비	471	490	483	1,275	1,317

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달리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의료급여 2종으로 두 계층을 분리할 수 없어, 2009년도 및 2010년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수 평균비율(만성62%, 18세 미만 38%)을 총진료비에 적용하여 1인당 진료비를 추정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급여비 추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대상자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일부 차상위계층 인원 추정: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희귀난치성질환자	24,160	25,441	26,789	28,209	29,705
만성질환자	105,567	113,107	121,185	129,840	139,113
18세 미만 아동	196,019	214,999	235,817	258,651	283,696

주: 최근 5년간 대상인원 실적자료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적용함

최근 5년간 총진료비 실적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해당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일부 차상위계층 1인당 진료비추정: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희귀난치성질환자	12,356	12,522	12,690	12,860	13,032
만성질환자	4,273	4,528	4,797	5,083	5,386
18세 미만 아동	1,405	1,451	1,499	1,548	1,599

4.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일부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 시킬 경우, 진료비 중 국가가 부담해야 할 규모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전액(C)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 대상에 대해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차액 등을 지원하

여 왔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이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경우 동 예산지원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동 대상의 총진료비(C) 중 본인부담금(D)을 차감하고, 기지원액(E)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액은 2012년 7,503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1조 2,709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4조 9,777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6] 일부 차상위계층 국고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의료급여 1종 총진료비(A)	[희귀난치성 질 환자]	294,577	314,350	335,450	357,966	381,993	1,684,336
의료급여 2종 총진료비(B)	[만성질환자]	451,089	512,101	581,364	659,996	749,263	2,953,813
	[18세 미만 아동]	275,329	311,921	353,376	400,340	453,545	1,794,511
총진료비 합계 (C = A+B)		1,020,996	1,138,372	1,270,190	1,418,302	1,584,802	5,998,574
본인부담금 합계 (D = [A×0.4%]+[B×9.0%])		66,556	75,419	85,468	96,862	109,781	434,087
기지원액 (E)		204,166	204,166	204,166	204,166	204,166	1,020,830
추가 재정소요 (C-D-E)		750,274	858,786	980,555	1,117,274	1,270,855	4,977,744

- 주: 1.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0.4%, 나머지 99.6%는 국고부담,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은 최근 2년간 평균 9.0%, 평균국고부담 91.0% 적용함
 2. 기지원액(D)은 동 대상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및 본인부담차액으로, 2012년 예산요구안 기준이며, 향후 5년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2) 의료급여제도에서도 본인부담금 차액지원 및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에서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일종인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지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공적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동 개정안은 현재 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과거 가입자의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보험료 납부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과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은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자들 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를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이들에 대한 등급별 장애연금 지급액이 될 것이다. 추계방법은 신규수급자를 60세를 기준으로 2개 범주로 나누어 추계한다. 60세 미만은 장애 1~4급 신규수급자 수, 60세 이상은 1~2급 신규수급자수를 먼저 구하고, 동 신규수급자 수에 기본연금액과 장애등급별 지급율, 부양가족 연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추계결과,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2년 181억원을 비롯하여 2012~2016년의 5년간 총 1,014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범위 확대

개정안은 과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은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범위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를 추가하고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2010년 기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수(노령연금 수급자 제외), 연령별 인구 수 대비 장애연금 수급율, 60세 미만 대비 60세 이상의 장애출현율, 장애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수급율(배우자 87%, 자녀 또는 부모 56%),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장애연금 1/2 수급자의 비중 31%는 추계기간 중 각각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고의에 의한 장애나 납부기간 요건의 미달로 인하여 장애연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로 한다.

(3)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 기본연금액 및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2008년 장기재정계산' 자료를 활용한다.

(4)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서,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5)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경우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편입되어 이들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이 발생한다.

신규 장애연금 수급자 수 산출은 중복급여시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장애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감안하였는데,

첫째, 2010년 현재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선택 비중은 전체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0.5%에 불과하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가능성은 배제하였다.

둘째, 평균 가입기간을 15년으로 가정하여 급여간 비교한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장애 1~2급에서만 기존의 노령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장애연금액 산출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만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였다. 2010년 전체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이러한 사유로 감액 지급하는 자의 비중은 60세 미만은 35.0%, 60세 이상은 18.2%로서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개정안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액은 2012년 181억원을 비롯하여 2012~2016년간 총 1,014억원으로 예상되었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장애 1급	60세 미만	12	13	14	14	15	68
	60세 이상	62	66	75	84	94	382
장애 2급	60세 미만	21	22	24	25	27	119
	60세 이상	44	46	52	57	64	262
장애 3급	60세 미만	29	31	33	35	37	165
	60세 이상	-	-	-	-	-	-
장애 4급	60세 미만	12	1	1	1	1	17
	60세 이상	-	-	-	-	-	-
계		181	180	199	217	237	1,014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장애연금 개요

가. 지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 1~3급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표 2]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일시금)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나. 지급 제한

첫째, 장애연금 외 다른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의 20%를 장애연금에 더하여 지급한다.(법 제56조)

둘째,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82조)

셋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한 기간

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6개월 이상)을 합산한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85조)

넷째,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법 제 113조)

다섯째,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는 다른 법률¹⁾에 의해 장애급여를 지급받으며 중복 수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어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더라도 장애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추계대상 및 산식

가. 추계대상

개정안에 의해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편입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므로 추계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개정안에 의해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편입되는 자>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 10년의 가입이력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임의계속가입자 제외)(법 제6조 및 제13조)
- ②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인해 조기노령이 중지된 자는 제외): 법 제6조 및 영 제18조제2호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③ 임의가입 대상자 중 미가입자(법 제9조제1호)

- 다음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법 제9조제1호)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 국민연금 가입자

· 별정우체국 직원

·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4호)

- 퇴직연금 수급권자 등(법 제9조)

나. 추계산식

〈 비용추계 산식 〉

추가 재정소요= ① 60세 미만 신규수급자 수(1~4급)× [기본연금액×장애등급별 지급
율+ 부양 가족연금액] ×(0.65+0.5×0.35)+② 60세 이상 신규수급
자 수(1~2급)× [기본연금액×장애등급별 추가지급율+부양가족연
금액] ×(0.82+0.5×0.18)

- 장애등급별 지급율 : 장애 1급 1.0, 2급 0.8, 3급 0.6, 4급 2.25

- 장애등급별 추가지급율 : 장애 1급 0.25, 장애 2급 0.05(수급하는 급여가 기존의 노
령연금에서 장애연금으로 전환에 따른 추가 지급)

- 0.65, 0.82 : 장애연금 전액 수급자 수 비중

- 0.35, 0.18 : 장애연금 2분의 1 수급자 수 비중(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애급여시)

- 부양가족연금액 : (t-1)년도 연금액×3개월 + t년도 연금액×9개월

(부양가족연금액이 4월에 확정됨에 따라 t년도의 1~3월은 (t-1)년
도의 연금액을 적용

3. 신규수급자 수

본 추계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수에 장애연금 수급율을 곱하여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수를 산출하되, 연령별로 장애출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령별로 장애연금 수급율을 세분화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수

가입자였던 자는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자와 노령연금 수급자 등이다. 최근 이들의 임의계속가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입자였던 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 각 변수별 추이를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2010년 현재 10년 이상의 가입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수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다만, 향후 추정이 가능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0~2014)’를 활용하였다²⁾. 노령연금 수급자 중 60세 미만의 비중이 4.1%(2010년 기준)로 미미하므로 노령연금 수급자 모두 60세 이상으로 간주하였다.

[표 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수

(단위: 명)

연령별	2012	2013	2014	2015	2016
50세미만	259,241	259,241	259,241	259,241	259,241
60세미만	124,648	124,648	124,648	124,648	124,648
60세이상	2,690,794	2,719,108	2,924,627	3,099,369	3,284,552
계	3,074,683	3,102,997	3,308,516	3,483,258	3,668,441

2) 2011~2014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0~2014)을, 2015년 이후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0~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6.0%를 적용하여 추정함.

나. 장애연금 수급율

장애연금 수급율은 국민연금공단의 2010년 현재 장애연금 수급자 수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누어 도출하되, 현재의 장애연금은 가입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만을 인정하고 있어 가입연령을 벗어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실제 장애출현에 비해 장애연금 수급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³⁾ 이들의 수급율은 60세 미만과 구별하였다.

1) 60세 미만

국민연금공단의 2010년 현재 장애연금 수급자 수를 기초로 한 60세 미만의 연령별·장애등급별 장애연금 수급율은 [표 4]와 같으며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다만, 장애 4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 첫 해 해당자 모두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그 이후의 수급인원은 신규 유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첫 해 인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가정하였다.

[표 4] 60세 미만의 장애연금 수급율

(단위: %)

연령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50세 미만	0.045	0.092	0.171	0.022
60세 미만	0.059	0.142	0.248	0.023

주: 2010년말 현재 장애연금 수급자인 50세 미만과 2010년 말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인 50세 미만의 연령분포가 40~49세로서 동일하다고 가정

2) 60세 이상

60세 이상인 자의 장애연금 수급율은 50~60세 미만의 장애연금 수급율에 50~60세 미만 대비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장애출현율(1급 2.0, 2급 1.9, 3

3) 실제 2010년 60세 이상의 인구 대비 장애연금 수급율은 0.310%로서 50~60세 미만의 0.47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60세 이상의 장애출현이 50~60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급 2.0, 4급 1.9)을 곱하여 도출하였다. 이 때 50~60세 미만 대비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장애출현율은 2009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수와 국민연금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과의 관계⁴⁾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표 5] 60세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율

(단위: %)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0.119	0.269	0.497	0.043

3) 중복급여 발생시 선택급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수에 장애연금 수급율을 곱하여 연령별 장애연금 수급권자 수를 산출하더라도 급여중복에 따른 조정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는 장애연금 외에 다른 급여가 중복될 수 있고 이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조정돼 실제 수급자 수가 장애연금 수급권자 수보다 작아지기 때문이다. 즉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력이 있는 배우자 등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60세⁵⁾ 이상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며, 수급권자는 부여된 수급권 중 더 많은 급여 하나만을 선택한다⁶⁾. 이하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노령연금 수급

4) <장애연금 장애등급(1~4급)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1~6급)과의 관계>

	1	2	3	4
1	79.9%	14.5%	3.2%	1.5%
2	17.0%	58.4%	20.3%	6.0%
3	2.6%	22.1%	38.3%	17.0%
4	0.2%	3.5%	14.8%	16.5%
5	0.1%	1.1%	18.7%	31.5%
6	0.1%	0.4%	4.8%	27.5%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장애관정체계 개선 및 재활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2008. 4.

5)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으로서, 국민연금법 부칙(제8541호, 2007. 7.23) 제8조에 의거 2012년까지는 60세이고, 2013~2017년까지는 61세임.

6)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라면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권을 갖는 경우와 유족연금 수급권과 노령연금 수급권을 동시에 갖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먼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급여액 비교결과⁷⁾, 장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기본연금액이 같다면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0년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 장애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0.5%에 불과해 장애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을 가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⁸⁾. 이에 본 추계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 장애연금 수급권의 유족연금 수급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과 노령연금 수급권을 동시에 가질 경우에 대한 가정도 배제된다.

다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가입기간을 15년으로 가정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는 장애연금 수급권은 장애 1~2급에서는 장애연금이, 장애 3~4급에서는 노령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⁹⁾ 이에 본 추계는

을 더하여 지급함.

7) <장애연금 수급권과 유족연금 수급권을 동시에 갖는 자의 선택급여>

유족연금액		장애연금액			
		1급	2급	3급	4급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0.8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0.6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2.25 (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0.4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20년 미만	기본연금액×0.5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20년 이상	기본연금액×0.6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8) 설령,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98.5%가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장애연금액을 수급하도록 설정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1인 평균 유족연금액 전망을 기초로 추계한 결과 연간 추가 지급액이 0.3~0.4억원으로 예상된다.

9) <노령연금 수급권과 장애연금 수급권을 동시에 갖는 자의 선택급여>

노령연금액		장애연금액			
		1급	2급	3급	4급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0.8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0.6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2.25 (일시금)
가입기간 15년(가정)	기본연금액×0.75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추가지급액	기본연금액×0.25	기본연금액×0.05	-	-

장애 1~2급만을 고려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현재의 노령연금에서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추가 지급(장애 1급: 기본연금액×0.25, 장애 2급: 기본연금액×0.05)을 추계대상으로 하였다.

다.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수

앞서 제시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수와 장애연금 수급율을 종합하면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수는 [표 6]과 같다. 장애연금 지급제한 요건(1. 나) 중 중복급여시 조정 규정은 반영하되, 현 시점에서 추정이 곤란하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고의에 의한 장애, 납부기간 요건 미달 등은 배제하였다

[표 6] 신규 장애연금 수급자 수

(단위: 명)

장애등급	2012	2013	2014	2015	2016
1급	3,388	3,421	3,666	3,873	4,093
2급	7,650	7,726	8,278	8,748	9,246
3급	752	752	752	752	752
4급	85	8	8	8	8

4. 장애연금 수급액

가. 평균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수급액 추계는 부양가족연금액과 평균 기본연금액은 공단의 '2008년 장기재정계산' 자료를 적용하되,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요구되는 부양가족연금은 수급하지 못하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율을 반영하였다. 수급율을 반영하는 방법은 공단의 연도별

부양가족별 부양가족연금액에 2010년 장애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수급율¹⁰⁾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표 7]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단위: 연간,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본연금액 (장애 1급 기준)		6,994,660	7,408,353	7,844,934	8,304,380	8,788,765	9,299,564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201,390	206,827	212,412	218,147	224,037	230,085
	자녀 또는 부모	85,817	88,134	90,513	92,957	95,467	98,044
	계	287,207	294,961	302,926	311,104	319,504	328,130

나. 감액 지급률

한편,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만 지급¹¹⁾하는데, 2010년 전체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이러한 사유로 감액 수급하는 자의 비중은 60세 미만은 35.0%, 60세 이상은 18.2%로서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0) 2010년 말 장애연금 수급자 55,647명의 부양가족연금 수급은 배우자 48,660명, 자녀 또는 부모 31,105명으로 각각의 수급율은 배우자 87%, 자녀 또는 부모 56%임.

11)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5.20>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신원법」 제88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장애연금 지급권을 보장할 경우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편입되어 이들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이 발생한다.

신규 장애연금 수급자 수 산출은 중복급여시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장애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감안하였는데,

첫째, 2010년 현재 유족연금 지급권을 가진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선택 비중은 전체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0.5%에 불과하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가능성은 배제하였다.

둘째, 평균 가입기간을 15년으로 가정하여 급여간 비교한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장애 1~2급에서만 기존의 노령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장애연금액 산출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만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였다. 2010년 전체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이러한 사유로 감액 지급하는 자의 비중은 60세 미만은 35.0%, 60세 이상은 18.2%로서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개정안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장애연금 지급권을 보장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액은 2012년 181억원을 비롯하여 2012~2016년간 총 1,014억원으로 예상되었다.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장애 1급	60세 미만	12	13	14	14	15	68
	60세 이상	62	66	75	84	94	382
장애 2급	60세 미만	21	22	24	25	27	119
	60세 이상	44	46	52	57	64	262
장애 3급	60세 미만	29	31	33	35	37	165
	60세 이상	-	-	-	-	-	-
장애 4급	60세 미만	12	1	1	1	1	17
	60세 이상	-	-	-	-	-	-
계		181	180	199	217	237	1,01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경우,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하고, 대위권을 통하여 기 지급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처리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반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 따른 신규 소요비용은 첫째, 근로자가 청구하여 국가가 지급한 금액(최저임금 차액)과 대위권 행사 시 발생하는 전년도 반환금의 결손액을 합한 금액이며 둘째, 재원관리, 최저임금 차액분의 신청내역 조사 및 지급, 대위권 행사, 재산압류 및 결손처리, 부정수급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신규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구성될 것이다.

본 추계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차액을 곱하여, 추계기간 중 국가가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차액의 총액(당해연도)을 산출하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미만 범주를 4개로 분리하여 추계한 다음, 그 결과를 모두 합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 대위권 행사 시 사용자의 무재산 등에 의한 반환금 결손비용을 전년도 최저임금 차액 지급금에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 최저임금 차액 지급금과 합계하여 당해연도의 최종적인 소요비용을 구한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신청자 1인당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신규 소요비용은 2012~2016년간 매년 7,505억~1조 4,007억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소요액은 총 5조 3,008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최저임금 차액 지급

개정안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안 제7조의2)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당해연도)은 첫째, 근로자가 청구하여 국가가 지급한 금액(최저임금 차액)과 대위권에 따른 전년도 반환금의 결손액을 합한 금액이며 둘째, 재원관리, 최저임금 차액분의 신청내역 조사 및 지급, 대위권 행사, 재산압류 및 결손처리, 부정수급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신규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구성될 것이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 중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수 비중은 2010년 71.5%를 기준으로 2006~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1.2%p)만큼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2) 추계기간 중 최저임금 근로자 수 대비 최저임금 차액 지급 신청자 수 비중은 70%라고 전제한다.

(3) 당해연도에 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총액의 대위권에 따른 결손률은 5년에 걸쳐 매년 8%씩 총 40%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4) 신청자 1인당 운영경비는 우편요금, 안내문 등(2,000원), 홍보자료

(2,000원), 출장비(4,000원), 설명회 개최 등(2,000원) 총 1만원으로 구성된다
고 가정한다.

(5) 추계기간은 2012~2016년의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차액을 지급(안 제7조의2)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2012년 5,887억원을 비롯하여 2012~2016년간 총 3.6조원 수준이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안 제7조의3)할 경우, 반환금의 결손에 따른 비용은 5년간 총 5,248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가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최저임금 차액분의 신청내역 조사 및 지급, 대위권 행사 등을 수행할 신규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2012년 1,618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1.1조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소요비용은 2012~2016년간 매년 7,505억~1조 4,007억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소요액은 총 5.3조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최저임금 차액 지급분	5,887	6,537	7,229	7,983	8,794	36,430
반환금 결손액	-	471	994	1,572	2,211	5,248
인건비	1,602	1,886	2,200	2,563	2,979	11,229
운영경비	16	18	20	22	24	101
합 계	7,505	8,912	10,443	12,140	14,007	53,008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산출방식

개정안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안 제7조의2)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최저임금 차액 지급금에 따른 소요비용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당해연도 금액(최저임금 차액)과 전년도 국가가 지급한 최저임금 차액 지급금의 반환금 결손액을 더하여 추계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차액을 곱하여, 추계기간 중 국가가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차액의 총액(당해연도)을 구한 다음, 대위권 행사 시 사용자의 무재산 등에 의한 반환금 결손비율을 전년도 최저임금 차액 지급금에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 최저임금 차액 지급금과 합계하여 당해연도의 최종적인 소요비용을 구한다.

둘째,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신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신청내역 조사 및 지급, 대위권 행사, 채용관리, 재산압류 및 결손처리, 부정수급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소요된다. 인건비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신청자 1인당 각 처리업무 연간 소요시간을 공무원 1인당 연간 소요시간(2,000시간)으로 나누어 소요인원 수를 구하고, 동 인원 수에 공무원 연간 보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운영경비는 최저임금 차액 지급 신청자 수에 각종 운영경비의 합계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상의 산출방식을 요약하면 아래 <비용추계 산식>과 같다.

〈 비용추계 산식 〉

1. “사업비” 또는 “최저임금 차액 지급분 및 결손액”(전체비용과 혼동)t =

$$\text{지급액}_t^1 + \sum_{n=1}^5 [\text{지급액}_{t-n} \times \text{반환금 결손률}^2(8\%)]$$

주: 1) 최저임금 차액 지급액 = 연간 최저임금 차액 지급 신청자 수³⁾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저임금 차액⁴⁾ 이 때, t는 2012~2016년

2) 반환금 결손률은 매년 이전 연도 사업비의 8%씩, 5년간 총 40% 발생

3) 최저임금 차액 지급 신청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실업률)}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수 비중] × 최저임금 미만을 × 신청률(70%)

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저임금 차액

$$= \sum_{i=1}^7 (\text{차액}_i \times \text{연간임금 전환계수} \times \text{근로자 수}_i \times \text{가중치}_i^5) \div \text{최저임금 차액 지급자 수}$$

단, i는 시간당 최저임금 차액을 100원 단위의 7개 구간으로 분리

5) 가중치 = 차액 구간별(100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 $\sum_{i=1}^7$ 차액 구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2. 인건비 = [{연간 최저임금 차액 지급 신청자 수 × 신청자 1인당 업무 처리시간⁶⁾} ÷ 공무원 1인당 연간 근로시간(2,000시간)] × [공무원 인건비(7급 5호봉 기준) × (1+명목임금상승률)]

6) 신청자 1인당 업무 처리시간은 최저임금 차액분 조사 및 부정수급 조사 각각 4시간, 재원 관리 및 대위권 행사 등 1시간

3. 운영경비 = 연간 최저임금 차액 지급 신청자 수 × 운영경비(1만원)⁷⁾

7) 우편요금, 안내문 등(2,000원), 홍보자료(2,000원), 출장비(4,000원), 설명회 등(2,000원)

2. 최저임금 차액 지급액

연간 최저임금 차액 지급 신청자 수를 구하기 위하여 첫째,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¹⁾을 기초로 전체 취업자 수 추계치를 구한

1) 국회예산정책처,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2010. 11.

다음, 2009~2010년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수 비중²⁾을 곱하여 추계기간 중 임금근로자 수를 산출하며, 산출된 추계치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둘째, 임금근로자 수 대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 비중인 최저임금 미만을 추계치는 2005년 8.1%를 기준으로 로그선형 ($\tau_t = 0.45 \ln(t)$) 형태로 증가하여 2016년에 17.1%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³⁾ 셋째, 최저임금 근로자 수 중에서 신청자 수는 임의적으로 70%로 설정하여 추계한다. 이러한 설정은 현행 제도 하에서의 신고 건수⁴⁾와 비교해서 매우 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신고해도 근로자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신청자 수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근로자와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신청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넷째,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연간 최저임금 차액은 2008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3,770원) 차액 범주(100원)별로 근로자 수를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시간당 임금 기준 차액 144원)한 다음, 월 환산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과 12개월을 곱하여 산출(36만 2,037원)한다. 동 금액은 추계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한다.⁵⁾ 다섯째, 당해연도에 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총액의 대위권에 따른 결손률은 5년에 걸쳐 매년 8%씩 총 40%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급하고 대위권을 통하여 반환받는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지급사업」의

2) 추계기간 중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수 비중은 2010년 71.5%를 기준으로 2006~2010년간 연간 증가율의 평균(1.2%p)만큼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3) 이는 최저임금 미만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 증감하는 추세라는 점, 그리고 2008년 기준 시간당 임금 4,600원 미만 근로자 수 비중이 전체 임금 근로자 수 대비 18.7%라는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가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이 지속적 선형형태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4) 2009년 700건, 2010년 652건에 불과하다.

5) 시간당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차액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는 동 금액이 차액 범주별로 근로자 수를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결손률 추이를 본 추계에 적용한 것이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2년부터 시행될 경우, 결손액은 차년도인 2013년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2012년에는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2013년에는 2012년 당해연도 지급액의 8%, 2014년에는 2012년 지급액의 8%와 2013년 당해연도 지급액의 8%가 결손액이 될 것이다.

[표 1] 최저임금 미만을 및 미만자 수(실제치 및 추계치): 2005~2016년

(단위: %, 만명)

	임금근로자 수 ¹⁾	최저임금 미만을 실제치	최저임금 미만을 추계치	최저임금 미만자 수 실제치	최저임금 미만자 수 추계치
2005	1,496.8	8.1	8.1	121.2	-
2006	1,535.1	9.4	8.4	144.3	-
2007	1,588.2	11.9	8.9	178.1	-
2008	1,610.4	10.8	9.5	174.6	-
2009	1,647.9	12.8	10.3	210.4	-
2010	1,704.8	11.3 ²⁾	11.1	198.4 ²⁾	-
2011	1,749.3	-	11.9	-	208.8
2012	1,804.6	-	12.9	-	232.3
2013	1,861.1	-	13.9	-	258.0
2014	1,914.9	-	14.9	-	285.3
2015	1,971.8	-	16.0	-	315.0
2016	2,029.8	-	17.1	-	347.0

주: 1) 각 년도 8월 기준 통계치이며, 2005~2010년 자료는 실제치, 이후 연도 자료는 추계치.

2) 잠정치.

자료: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통계청, 각 년도) 및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재구성.

3. 인건비 및 운영경비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차액분의 신청 내역 조사 및 지급, 대위권 행사, 재산압류 및 결손처리, 부정수급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신규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인건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 차액 지급 신청자 1인당 각 업무처리의 연간 소요시간을 공무원 1인당 연간 근로시간(2,000시간)으로 나누어 소요인원 수를 구하고, 동 인원 수에 공무원 연간 보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때 신청자 1인에 대한 업무별 소요시간을 보면, 사용자 및 근로자 조사확인⁶⁾ 등 최저임금 미만 차액분 청구에 따른 조사시간은 4시간으로 하는 반면, 채용관리,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업무, 대위권행사, 재산압류 및 결손처리 등 업무는 1시간⁷⁾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부정수급 조사업무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신청자의 10%에 대하여 조사하며, 신청자 1인당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공무원 1인당 연간 근로시간(2,000시간)은 1주 40시간 근무와 연간 휴가일수(10일)를 제외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하였다. 공무원 연간 보수는 2011년 공무원 7급 5호봉⁹⁾ 보수(34,521,480원)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다.

둘째, 운영경비는 최저임금 차액 지급 신청자 수에 각종 운영경비의 합계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청자 1인당 소요경비는 우편요금, 안내문 등(2,000원), 홍보자료(2,000원), 출장비(4,000원), 설명회 개최 등(2,000원) 총 1만원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¹⁰⁾

-
- 6)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연동된 차액분 확인, 출석요구 문서작성 및 발송 등.
 - 7) · 채용관리, 차액분 지급업무: 1건당 15분(근로자, 금액 등 확인 후 조치)
· 대위권행사 등: 1건당 15분(사용자, 근로자, 금액 등 확인후 문서작성 시행)
· 재산압류 등 조치(재산조회, 압류조치 등) 및 결손처리: 1건당 평균 1시간×50% 추정=30분(최저임금 위반은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임)
 - 8) 최저임금 차액분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결탁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부정수급 발생이 예상된다.
 - 9)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한 확인 및 출석 요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현행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 10) 신문 및 TV 홍보 등은 제외한다.

4.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차액을 지급(안 제7조의2)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2012년 5,887억원을 비롯하여 2012~2016년간 총 3.6조원 수준이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안 제7조의3)할 경우, 반환금의 결손에 따른 비용은 5년간 총 5,248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가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최저임금 차액분의 신청내역 조사 및 지급, 대위권 행사 등을 수행할 신규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2012년 1,618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1.1조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소요비용은 2012~2016년간 매년 7,505억~1조 4,007억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소요액은 총 5.3조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최저임금 차액 지급분	5,887	6,537	7,229	7,983	8,794	36,430
반환금 결손액	-	471	994	1,572	2,211	5,248
인건비	1,602	1,886	2,200	2,563	2,979	11,229
운영경비	16	18	20	22	24	101
합 계	7,505	8,912	10,443	12,140	14,007	53,00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한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고용불안층 대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취약계층인 저임금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및 동 근로자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5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하되, 최저임금 130% 미만을 3단계로 나누어 보험료 지원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재정소요가 될 것이다. 개정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130% 미만을 3단계로 나누어 보험료 지원을 차별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계방법은 기본적으로 임금수준별(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110%, 120%, 130% 미만) 근로자 수와 각 임금수준별 연간 보수액, 그리고 각 사회보험료율을 모두 곱하여 임금수준별·2개 사회보험별 부과보험료를 각각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금액 산출식(안 제22조의4 제2항)에 적용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한다.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금액 합계는 추계기간 중 매년 1,545억~1,533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7,699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대상 확대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5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한다(안 제22조의4).

2. 비용추계의 전제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는 2011년 기준 126만 5,400명으로, 매년 5.5%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추계된 지원대상자는 모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3) 지원대상 모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과보험료의 50%를 상한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전제한다.

(4) 추계기간 중 보수총액 대비 총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은 2011년 기준 1.35%, 1.77%가 추계기간 중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5) 추계기간은 2012~2016년의 5년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안 제22조의4제2항에 규정된 지원비율 산식에 근거하여 지원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재정소요액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지원액은 2012~2016년간 매년 244억~245억원 수준이며, 사업주에 대한 지원액은 동 기간 매년 1,300억~1,290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금액 합계는 추계기간 중 매년 1,545억~1,533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7,699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단, 동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모두 2개 보험에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되었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22조의4):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 합계
고용보험	650	650	648	646	645	3,239
산재보험	895	895	892	890	888	4,461
합 계	1,545	1,545	1,540	1,537	1,533	7,699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 방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5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재정소요가 될 것이다. 추계방법은 기본적으로 임금수준별(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110%, 120%, 130% 미만) 근로자 수와 각 임금수준별 연간 보수액, 그리고 각 사회보험료율을 모두 곱하여 임금수준별·2개 사회보험별 부과보험료를 각각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안 제22조의4제2항의 지원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며, 구체적인 추계방식은 아래 <비용추계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지원대상자 수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와 부과보험료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130% 이하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와 이들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통계는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추계에서는 타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한편, 가용통계로부터 추계하였다.

〈 비용추계 산식 〉

$$\text{신규 재정소요} = \sum_{r=1}^2 \left[\sum_{i=1}^4 \{4\text{개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1\} \times 4\text{개 임금수준별 보수월액}^2\right. \\ \left. \times 12\text{월} \times \text{보험료율}^3\right] \times \{((\text{최저임금} \times 1.3 - \text{임금}^4) \div (\text{최저임금} \times 1.3 - \text{최저임금})) \times 0.4 + 0.1\} \cdot i \cdot r$$

이 때, i 는 4개 임금수준, r 은 2개 사회보험

- 1) 전체 대상자 수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대상자 수(2011년 126만 5,400명)를 기준으로, 동 근로자 수의 2006~2009년간 연평균 증가율 -5.5% 적용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100%~110%, 최저임금 110%~120%, 최저임금 120%~130%의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각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는 2009년 기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최저임금 130% 미만 전체 근로자 수 대비 각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
- 2) 4개 임금수준별 보수월액 =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구간별 월 임금의 중간값(2009년 기준)과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구간별 월 임금 최대값의 평균) × 최저임금(또는 명목임금) 상승률 × 보수월액 조정계수(1.034)
단, 4개 임금수준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수준은 2009년 8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최저임금 상승률(2010~2012년간)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추계치 적용
- 3) 고용보험 1.35%(근로자 0.55%, 사업주 0.8%), 산재보험 1.77%(사업주 전액 부담)임
- 4) 사업주 부담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산정 시 임금 = $\sum_{i=1}^4$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구간별 월 임금의 중간값(2009년 기준)과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구간별 월 임금 최대값의 평균) × 최저임금(또는 명목임금) 상승률 × 4개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비중 j]

추계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추계기간 중 전체 지원대상자 수의 경우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¹⁾를 이용하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대상자 수(2011년 126만 5,400명)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수의 2006~2009년간 연평균 증가율 -5.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둘째, 본 추계에서는 추계

1)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책연구, 2011. 5.

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추정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130% 미만 총 근로자 수 추계치에 2009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130% 미만 총 근로자 수 대비 4개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비중²⁾을 곱하여 각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저임금 미만	233,321	220,488	208,362	196,902	186,072
최저임금 110%	226,335	213,886	202,122	191,006	180,500
최저임금 120%	352,313	332,936	314,625	297,320	280,968
최저임금 130%	383,834	362,723	342,773	323,921	306,105
합 계	1,195,803	1,130,034	1,067,882	1,009,148	953,645

3. 보수총액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서, 통상 정액임금과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과세기준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사회보험료도 기본적으로 연 보수총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가용한 (정액)임금 통계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하였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총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4개 임금수준별 평균임금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추계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9년 기준 최저임금 130% 미만 4개의 월 임금구간별 중간

2) 최저임금 미만 19.5%, 최저임금 100%~110% 18.9%, 최저임금 110%~120% 29.5%, 최저임금 120%~130% 32.1%임.

값³⁾에 최저임금상승률(2009~2012년간)과 명목임금상승률⁴⁾(2013~2016년간)을 곱하여, 4개 임금구간별 중간값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2009~2012년간 실제 최저임금에 각각 1.1, 1.2, 1.3을 곱하여,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수준별 임금값을 산출하고, 2012년 4개 수준별 임금값에 명목임금상승률을 곱하여 2013~2016년간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임금수준별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앞에서 산출한 4개 임금구간별 중간값 추계치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4개 임금수준별 값을 더한 다음 각각 2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 임금수준별 평균임금을 산출하였다. 단,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에는 2009년 8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최저임금 상승률(2010~2012년간)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 값을 사용하였다. 넷째,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4개 임금수준별 1인당 보수총액은 앞에서 산출한 4개 임금수준별 월 평균임금에 보수월액 조정계수와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다. 보수월액 조정계수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6~2009년간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0~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 대비 월 정액임금 비중을 구한 다음, 2006~2009년간 가중평균 비중⁵⁾(1.034)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섯째, 안 제22조의4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비율 산식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 시 임금은 동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체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추계는 앞에서 추계된 4개 임금수준별 월 평균임금에 총 지원대상자 수 대비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비중을 곱한 다음, 이를 모두 더하여 가중평균된 월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3) 통계자료에서 월 임금구간은 80만원 미만, 80~89.9만원, 90~99.9만원, 100~109.9만원의 4개 구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본 추계에서는 구간별 중간값을 최저임금 미만 80만원, 최저임금 100%~110% 85만원, 최저임금 110%~120% 95만원, 최저임금 120%~130% 105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2009년 월 최저임금은 83만 6,000원(주 40시간 근로기준)이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4.

5) 상시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 총 근로자 수 대비 2개 사업장별(5~10인, 10~30인) 근로자 수 비중(가중치)을 2006~2009년간 2개 사업장별 월 임금총액 대비 월 정액임금 비중에 곱한 값을 더하여 산출하였다.

[표 2]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임금구간별 월 평균임금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저임금 미만	915,757	968,871	1,022,159	1,079,400	1,139,846
최저임금 110%	1,012,828	1,071,572	1,130,508	1,193,816	1,260,670
최저임금 120%	1,117,911	1,182,750	1,247,801	1,317,678	1,391,468
최저임금 130%	1,222,994	1,293,928	1,365,094	1,441,539	1,522,265

[표 3]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임금구간별 1인당 연 보수총액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저임금 미만	11.36	12.02	12.68	13.39	14.14
최저임금 110%	12.57	13.30	14.03	14.81	15.64
최저임금 120%	13.87	14.68	15.48	16.35	17.27
최저임금 130%	15.17	16.06	16.94	17.89	18.89

4. 부과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보수총액에 기초하여 부과한다. 부과보험료는 지원대상자 수([표 1] 참조)에 1인당 연 보수총액([표 3] 참조)을 곱한 다음, 2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때, 안 제22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비율 산식은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설계⁶⁾되어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부과

6) 전술한 바와 같이, 지원비율 산식에서 특히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율 산정 시 임금을 동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체의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율과 다르게 나타난다.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로 분리하였고, 추계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수총액 대비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계정 0.55%,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0.8%(실업급여계정 0.5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0.25%)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의 경우에는 2011년 적용되는 업종 전체 평균인 1.77%⁸⁾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표 4]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임금구간별·사회보험별 부과보험료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근로자 부과보험료]					
고용보험	89,139	89,122	88,853	88,668	88,484
- 최저임금 미만	14,581	14,579	14,535	14,504	14,474
- 최저임금 110%	15,644	15,641	15,594	15,561	15,529
- 최저임금 120%	26,878	26,873	26,792	26,736	26,680
- 최저임금 130%	32,036	32,029	31,933	31,866	31,800
소 계	89,139	89,122	88,853	88,668	88,484
[사업주 부과보험료]					
고용보험	129,657	129,633	129,240	128,972	128,703
- 최저임금 미만	21,209	21,205	21,141	21,097	21,053
- 최저임금 110%	22,755	22,751	22,682	22,635	22,588
- 최저임금 120%	39,096	39,088	38,970	38,889	38,808

7) 실업급여계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총액 대비 0.55%를 부담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본 추계에서는 동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150인 미만 사업장에 부과되는 0.25%를 적용한다. 따라서 총 고용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1.35%가 된다.

8) 2009년과 2010년은 1.80%, 2011년 1.77%이다. 동 보험료율은 통상 1.60%~1.80% 범위 내에 분포하는데, 본 추계에서는 2011년 요율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주 부과보험료]					
- 최저임금 130%	46,597	46,588	46,447	46,351	46,254
산재보험	286,866	286,812	285,944	285,350	284,756
- 최저임금 미만	46,926	46,917	46,775	46,677	46,580
- 최저임금 110%	50,346	50,336	50,184	50,079	49,975
- 최저임금 120%	86,499	86,483	86,221	86,042	85,863
- 최저임금 130%	103,096	103,077	102,765	102,551	102,338
소 계	416,524	416,444	415,185	414,321	413,459
[근로자 및 사업주 부과보험료 합계]					
고용보험	218,796	218,755	218,093	217,640	217,187
산재보험	286,866	286,812	285,944	285,350	284,756
합 계	505,662	505,567	504,037	502,990	501,943

5.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안 제22조의4제2항에 규정된 지원비율 산식⁹⁾에 근거하여 지원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재정소요액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지원액은 2012~2016년간 매년 244억~245억원 수준이며, 사업주에 대한 지원액은 동 기간 매년 1,300억~1,290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금액 합계는 추계기간 중 매년

9) 지원비율 산식에 따라 지원비율을 추정한 결과, 임금수준별 근로자 부과보험료 대비 보험료 지원비율은 최저임금 미만 55.8%(상한 50% 적용), 최저임금 100%~110% 42.3%, 최저임금 110%~120% 27.6%, 최저임금 120%~130% 10.0%이며, 사업주 부과보험료 대비 보험료 지원비율은 31.2%로 추정되었다.

1,545억~1,533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7,699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단, 동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모두 2개 보험에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되었다.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22조의4):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근로자 보험료 지원금액]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만	7,291	7,289	7,267	7,252	7,237	36,336
- 최저임금 110%	6,617	6,616	6,596	6,582	6,569	32,981
- 최저임금 120%	7,418	7,417	7,395	7,379	7,364	36,973
- 최저임금 130%	3,204	3,203	3,193	3,187	3,180	15,966
소 계	24,530	24,525	24,451	24,400	24,350	122,257
[사업주 보험료 지원금액]						
고용보험	40,453	40,445	40,323	40,239	40,155	201,616
- 최저임금 미만	6,617	6,616	6,596	6,582	6,569	32,980
- 최저임금 110%	7,100	7,098	7,077	7,062	7,047	35,384
- 최저임금 120%	12,198	12,196	12,159	12,133	12,108	60,793
- 최저임금 130%	14,538	14,536	14,492	14,461	14,431	72,458
산재보험	89,502	89,485	89,215	89,029	88,844	446,075
- 최저임금 미만	14,641	14,638	14,594	14,563	14,533	72,969
- 최저임금 110%	15,708	15,705	15,657	15,625	15,592	78,287
- 최저임금 120%	26,988	26,983	26,901	26,845	26,789	134,505
- 최저임금 130%	32,166	32,160	32,063	31,996	31,929	160,314
소 계	129,955	129,931	129,538	129,268	128,999	647,691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금액 합계]						
고용보험	64,983	64,971	64,774	64,640	64,505	323,873
산재보험	89,502	89,485	89,215	89,029	88,844	446,075
합 계	154,485	154,456	153,989	153,669	153,349	769,9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중 진폐의증환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에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지급받으나, 진폐보상연금 등 기타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동 개정안은 진폐장해등급에 의증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의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본 개정안은 진폐 의증판정자에 대하여 진폐장해 13등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91조의8)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진폐 의증판정자 수에 진폐장해 13등급 대상자의 평균 진폐보상연금단가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추가 재정소요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첫째, 과거 산재 초진자 수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신규 진폐의증판정자 수를 산출하고, 산재보험이 시작된 해로부터 누적된 진폐 의증판정자가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2012년에 모두 신청하여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의 2가지로 구성된다. 진폐장해연금 산출에 중요한 변수인 고용노동부장관 일 고시금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추계결과, 진폐 의증판정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산재보험급여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2012~2016년간 매년 448억~595억원, 향후 5년간 추가 재정소요 총액은 2,597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진폐 의증판정자 진폐보상연금 지급

개정안은 진폐 의증판정자에 대하여 진폐장해 13등급에 해당하는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91조의8)하고 있어, 산재보험급여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누적 진폐 의증판정자 수는 1987년부터 신규로 발생한 의증판정자 수로서, 2006년까지 매년 186명이 발생하며, 2011년 이후에는 매년 96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추계기간 중 진폐 의증판정자는 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추계기간 중 진폐 의증판정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추계기간은 2012~2016년의 5년으로 하되, 이후에도 추가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진폐 의증판정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산재보험급여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2012~2016년간 매년 448

억~595억원으로, 향후 5년간 추가 재정소요 총액은 2,597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기초연금	352	380	410	442	476	2,061
진폐장해연금	96	102	107	113	119	537
합 계	448	482	517	555	595	2,597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방법

개정안은 진폐 의증판정자에 대하여 진폐장해 13등급에 해당하는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91조의8)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은 기본적으로 진폐 의증판정자 수에 진폐보상연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첫째, 진폐 의증판정자 수는 2007~2010년간 초진자 수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1987~2006년간 신규 진폐 의증판정자가 매년 186명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둘째, 추계기간 중 진폐보상연금은 1987~2011년간 발생한 총 누적 진폐 의증판정자가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2012년에 모두 신청하여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의 2가지로 구성된다.

본 추계에서는 기초연금 산출에 중요한 최저임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다. 진폐장해연금 산출에 중요한 변수인 고용노동부장관 일 고시금액은 2011년 기준 88,776.07원을 기준으로 2010~2011년간 평균 증가율 3.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산출방식은 아래 <비용추계 산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비용추계 산식 〉

$$\text{추가 소요비용} = \text{진폐 의증판정자 수}^1) \times \text{1인당 진폐보상연금 지급단가(기초연금} \\ \text{+진폐장해연금}^2)$$

1) 진폐 의증판정자 수는 1987~2006년간 의증판정자 중 초진자 수로서, 동 기간 의증판정자의 사망 등을 고려하여 2007년 수준(186명)이 과거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며, 2011년 이후에는 2008~2010년 평균 수준인 96명이 매년 신규로 발생한다고 가정

2) 기초연금 = 일 최저임금 × (1+명목임금상승률) × 8시간 × 365일

진폐장해연금 = 고용노동부장관 일 고시금액 × (1+단가상승률 3.2%) × 월 2일 × 12개월

2. 진폐 의증판정자 수

진폐 의증환자 수에 대한 통계는 재진자¹⁾와 초진자로 구성되며, 연도별 총 의증판정자 수 중에서 재진자 및 초진자 수 비중은 각각 87.4%, 12.6%이다.²⁾ 동 개정안에 따른 진폐 의증환자 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폐 진료가 시작된 연도부터의 의증판정자 중에서 초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나,³⁾ 현 단계에서의 가용 통계는 2007~2010년간 초진자 수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2006년 이전의 초진자 수에 대한 자료가 없다. 한편, 가용 통계인 연도별 재진자 수 통계는 과거 초진자 및 재진자

1) 2011년 현재 진폐 의증환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진료를 통해 의증으로 판정되면, 1년 후에 재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재진료는 횡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2) 2007~2010년간 재진자 수는 2007년 787명, 2008년 814명, 2009년 925명, 2010년 760명이다. 초진자 수는 2007년 186명, 2008년 117명, 2009년 78명, 2010년 92명이다.

3) 개정안이 과거에 통과되었다면 진폐 의증판정자 중 초진자는 매년 신규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초진자 수가 평균적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계기간 중 의증환자 추계에 있어 초진자 수는 추정상의 어려움이 크지 않다.

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상자 수 중복 문제를 초래한다.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거 연도별 재진자 수에서 1회 이상 재진한 사람의 수를 제외한 통계가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 이러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추계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큰 재진자 수에 대한 통계를 이용하는 대신, 초진자 수에 대한 통계만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2010년간 초진자 수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1987~2006년간 신규 진폐 의증판정자가 매년 186명 발생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1987~2010년간 총 누적 진폐 의증판정자 수는 4,193명⁵⁾이 된다. 한편, 2011년부터 신규 진폐 의증판정자 수는 2008~2010년간 평균인 96명이 매년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다.

일단, 과거 누적 진폐 의증판정자 수가 추계된 이후에는 기존 누적 의증판정자가 추계기간인 2012~2016년 중 어느 연도에 신청하는가는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를 예상하는 데 주요한 변수이다. 진폐보상연금은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므로, 신청시기가 빠를수록 연금 총액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진폐 의증판정자는 동 개정안 통과 즉시 신청을 통하여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추계에서는 기존 누적 진폐 의증판정자 전원이 2012년부터 신청하여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이러한 경우, 추계기간 중 대상자 수는 기존 누적 진폐 의증판정자 수에 신규 의증판정자 수를 매년 누적적으로 더한 숫자가 될 것이다.⁶⁾

4) 예를 들어, 2009년 재진자 수에는 과거 초진 및 재진을 통하여 의증 판정을 받은 사람의 일부 또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5)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진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추계에서 신규 진폐 의증판정자 수를 1987년부터 감안한 이유는 진폐 의증판정자의 수명과 재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관적인 판단이다. 한편, 과거 20년 전에는 진폐 의증판정자 수가 최근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987~2006년간 매년 신규 진폐 의증판정자 수를 2007년과 동일한 186명이라고 가정한 이유는 과거 의증판정자의 사망과 재진료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6)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신규 지원대상자 수는 2012년 4,385명, 2013년 4,481명, 2014년 4,577명, 2015년 4,673명, 2016년 4,769명이다.

3. 진폐보상연금 단가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의 2가지로 구성된다. 일일 기초연금은 일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월간 진폐장해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 진폐고시임금에 월 2일(진폐장해 13등급)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연간 기초연금 단가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일 최저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60%와 365일⁷⁾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시간당 최저임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다.⁸⁾ 연간 진폐장해연금은 월 2일에 12개월을 곱한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일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고용노동부장관 일 고시금액은 2011년 기준 88,776원을 기준으로 2010~2011년간 평균 증가율 3.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진폐 의증판정자에 대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산재보험급여의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2012~2016년간 매년 448억~595억원으로, 향후 5년간 추가 재정소요 총액은 2,597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기초연금	35,186	38,042	40,994	44,197	47,631	206,050
진폐장해연금	9,639	10,162	10,709	11,280	11,876	53,666
합 계	44,825	48,204	51,703	55,477	59,508	259,716

7) 본 추계에서는 모든 의증판정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8)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4.

보 상 법 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5
(본인사망시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지급)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3
(참전유공자 진료비 지원)
- 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141
(소음·진동 대책구역 내 건물 및 토지 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가 사망하면 무공영예수당 지급도 소멸되므로,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무공수훈자 배우자들의 경우 생계에 곤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무공수훈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무공영예수당의 일정비율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무공영예수당의 일정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무공영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본 추계에서는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사망인원을 연도별로 추정한 다음, 각 연도별 이들의 생존 배우자 수를 추정하여 연도별 지급대상자 수를 추정한다. 무공영예수당 금액에 대한 최근 5년간 현황을 분석하여 연도별 증액 규모를 추정한다. 본 추계에서는 매년 1만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추계결과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2012년 26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 배우자 지급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1]과 같이 2012년 25억 8,200만원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 5년간 409억 5,1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2,582	5,315	8,172	11,009	13,873	40,9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비용추계 대상

개정안 제16조의2는 무공영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나. 비용추계 방법

(1) 무공영예수당 수급자는 남녀가 있고, 남녀의 생존연령의 차이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중 여성(67명)이 많지 않아 남녀 구별에 따른 소요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재 무공영예수당 수급자는 모두 남자로 가정하기로 한다.

< 비용 추계 방법 >

재정 소요 = 사망한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 수 × 무공영예수당 단가 × 65%

(2)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간에는 연령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현재 가용 통계 중에서 가장 과거치인 1990년도의 혼인연령 차이의 평균치(여자가 남자보다 4세 연하)¹⁾를 적용하기로 한다.

1) 통계청

2. 무공영예수당 소요액

가. 수급대상자 수(배우자 수) 전망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 수급자(60세 이상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대상자는 추계기간 시작 연도인 2012년도 이후 60세 이상으로 사망한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사망인원을 연도별로 추정한 다음, 각 연도별 이들의 생존 배우자 수를 추정하면 될 것이다.

[표 2]는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연령별 현황(2011.4월 기준)에 남자의 연령별 생존율(1-사망률)을 곱하여 추정한 생존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현황이다. 따라서 사망자 수는 이 생존인원간의 차이가 될 것이다.

[표 2] 무공영예수당 대상자의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2~2017년

(단위: 명)

연령 (세)	2011년 생존자수	남자 사망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05	-	0.22942	-	-	0	0	0	0
104	-	0.22942	-	1	0	0	1	0
103	-	0.22942	1	0	0	1	0	1
102	1	0.22942	0	1	1	0	1	0
101	0	0.22942	1	1	0	1	1	1
100	1	0.22942	2	1	2	1	2	2
99	2	0.22942	1	2	1	2	2	4
98	1	0.22942	3	1	3	3	5	4
97	4	0.22942	2	4	4	6	5	10
96	2	0.22942	5	5	8	7	12	15
95	7	0.22942	7	10	9	16	20	28
94	9	0.22942	13	12	21	25	37	56
93	17	0.22942	15	27	33	48	72	95
92	20	0.22942	35	43	62	94	123	164
91	46	0.22942	55	80	122	159	213	319
90	72	0.22942	104	158	207	277	415	626
89	126	0.17183	191	250	334	501	755	994

연령 (세)	2011년 생존자수	남자 사망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8	224	0.14753	293	392	587	886	1,166	1,349
87	341	0.14046	456	683	1,031	1,356	1,569	1,817
86	528	0.13647	791	1,194	1,570	1,817	2,104	2,151
85	892	0.11318	1,346	1,771	2,049	2,372	2,426	2,241
84	1,508	0.10741	1,984	2,296	2,658	2,718	2,510	1,723
83	2,176	0.08830	2,518	2,915	2,981	2,753	1,890	899
82	2,747	0.08323	3,180	3,251	3,003	2,061	981	397
81	3,446	0.07720	3,524	3,255	2,234	1,063	430	218
80	3,798	0.07227	3,508	2,408	1,145	464	235	198
79	3,747	0.06377	2,572	1,223	496	251	211	195
78	2,712	0.05177	1,290	523	264	223	206	258
77	1,355	0.04781	549	278	234	216	271	292
76	573	0.04224	290	244	226	283	305	349
75	302	0.03994	254	235	295	317	363	441
74	264	0.03740	244	306	330	377	458	674
73	253	0.03463	317	342	391	474	698	831
72	328	0.03205	353	404	490	721	858	998
71	363	0.02804	416	504	742	883	1,027	924
70	427	0.02677	518	762	907	1,055	949	1030
69	530	0.02310	780	929	1,080	972	1,054	762
68	797	0.02106	949	1,104	993	1,077	779	583
67	969	0.02078	1,127	1,014	1,099	795	595	267
66	1,149	0.01911	1,033	1,121	811	607	272	126
65	1,049	0.01487	1,138	823	616	276	128	62
64	1,154	0.01408	835	624	280	130	63	30
63	844	0.01097	631	283	132	63	30	15
62	639	0.01187	287	133	64	31	15	17
61	290	0.01069	135	65	31	15	17	15
60	136	0.00980	65	31	16	17	15	-
59	66	0.00938	32	16	18	16	-	
58	32	0.00748	16	18	16	-		
57	16	0.00787	18	16	-			
56	18	0.00703	16	-				
55	16	0.00664	-					

주: 55세 이상 인원만 표시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은 2012년도 사망자 수(60세 이상으로 사망한 인원)를 이용하여 배우자 수를 추정한 현황이다.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자 수에 가구 구성률(배우자 존재율)을 곱하여 배우자 수를 추정하고, 앞의 비용추계 방법에서 가정한 것처럼 배우자를 4살 연하로 배치하였다. 그 다음 생존 배우자도 매년 사망인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다시 여기에 여성의 생존율(1-여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생존 배우자 수를 추정하였다.

[표 3] 2012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 (세)	2012년 사망자	배우자 구성비율	2012년	여성 사망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8	1	0.6954	-	0.1910	-	-	-	0
97	1	0.6954	-	0.1910	-	-	0	0
96	1	0.6954	-	0.1910	-	1	0	0
95	2	0.6954	-	0.1910	1	0	0	0
94	3	0.6954	1	0.1910	0	1	1	1
93	4	0.6954	0	0.1910	1	1	1	1
92	8	0.6954	1	0.1910	1	1	1	3
91	13	0.6954	1	0.1910	2	2	4	5
90	24	0.6954	2	0.1910	2	4	6	11
89	33	0.6954	2	0.1286	5	7	12	15
88	43	0.6954	6	0.1038	8	14	17	21
87	64	0.6954	9	0.0998	15	19	23	33
86	108	0.6954	17	0.0975	21	26	36	58
85	152	0.6954	23	0.0738	28	39	62	84
84	213	0.8261	30	0.0677	42	67	90	143
83	222	0.8261	45	0.0587	71	95	152	152
82	265	0.8261	75	0.0548	101	160	161	186
81	272	0.8261	106	0.0487	169	169	196	196
80	254	0.8261	176	0.0425	177	204	205	186
79	164	0.8713	184	0.0371	212	212	193	129
78	67	0.8713	219	0.0289	219	199	133	53
77	26	0.8713	225	0.0265	204	137	55	21
76	12	0.8713	209	0.0240	140	56	22	10
75	10	0.8713	143	0.0205	57	22	10	8
74	9	0.9011	58	0.0181	22	10	8	8
73	11	0.9011	23	0.0159	11	9	8	9

연령 (세)	2012년 사망자	배우자 구성비율	2012년	여성 사망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2	11	0.9011	11	0.0139	9	8	10	10
71	12	0.9011	9	0.0122	8	10	10	10
70	14	0.9011	8	0.0113	10	10	10	12
69	18	0.9111	10	0.0100	10	10	12	16
68	20	0.9111	10	0.0077	10	12	16	18
67	23	0.9111	10	0.0081	12	16	18	21
66	20	0.9111	12	0.0070	16	18	21	18
65	17	0.9111	16	0.0057	18	21	18	15
64	12	0.9116	18	0.0052	21	18	15	11
63	7	0.9116	21	0.0040	18	15	11	6
62	3	0.9116	18	0.0044	15	11	6	3
61	1	0.9116	15	0.0040	11	6	3	1
60	1	0.9116	11	0.0035	6	3	1	1
59	-	0.9036	6	0.0031	3	1	1	-
58	-	0.9036	3	0.0027	1	1	-	-
57	-	0.9036	1	0.0027	1	-	-	-
56	-	0.9036	1	0.0026	-	-	-	-
합계	2,141	-	1,735	-	1,678	1,615	1,548	1,4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런데 이 인원은 2012년도 사망한 사람의 생존 배우자 현황으로, 그 이후에도 매년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중에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들의 생존 배우자 수는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추정하면 될 것이다. 그 세부 내역은 첨부 [참고표 1~4]와 같다. 이와 같이 추정한 연도별 수급자(생존 배우자) 총 인원은 [표 4]와 같다.

[표 4] 수급대상자 (60세 이상 사망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 인원)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년	1,735	1,678	1,615	1,548	1,475
2013년	-	1,729	1,664	1,590	1,514
2014년	-	-	1,692	1,630	1,549
2015년	-	-	-	1,648	1,575
2016년	-	-	-	-	1,594
누적인원	1,735	3,407	4,971	6,416	7,7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무공영예수당 단가

[표 5]는 최근 5년간 무공영예수당 단가 현황이다. 매년 1만원씩 증액되어 오다가 2011년도에만 3만원이 증액되었다. 본 추계에서는 2011년도에만 특별한 경우로 보이므로, 향후 5년간은 매년 1만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연도별 추정 단가에 이를 곱한 결과, 배우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 단가는 [표 6]과 같다.

[표 5] 최근 5년간 무공영예수당 단가

(단위: 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월 단가	12	13	14	15	18

자료: 국가보훈처

[표 6] 배우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단가 전망: 2012~2016년

(단위: 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무공영예수당 단가(월)(A)	19	20	21	22	23
개정안의 단가(A×0.65)	12.4	13.0	13.7	14.3	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무공영예수당 소요액 추계 결과

무공영예수당 소요액은 [표 4]의 수급대상자 전망에 [표 6]의 무공영예수당 단가를 곱하면 될 것이다. 그 결과 소요액은 [표 7]과 같다.

2)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1만원씩 증액된다고 한다.

[표 7] 무공영예수당 연도별 소요액 전망: 2012~2016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배우자 인원(명)(A)	1,735	3,407	4,971	6,416	7,707	-
개정안의 단가(만원/월)(B)	12.4	13.0	13.7	14.3	15.0	-
소요액(백만원)(A×B×12개월)	2,582	5,315	8,172	11,009	13,873	40,9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8]과 같이 2012년 25억 8,200만원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 5년간 409억 5,1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2,582	5,315	8,172	11,009	13,873	40,9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I. 참고자료

[참고표 1] 2013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 (세)	2013년 사망자	배우자 구성비율	2013	여성 사망률	2014	2015	2016
104	1	0.6954	-	0.19101	-	-	-
103	0	0.6954	-	0.19101	-	-	0
102	1	0.6954	-	0.19101	-	0	0
101	0	0.6954	-	0.19101	1	0	0
100	1	0.6954	1	0.19101	0	0	0
99	0	0.6954	0	0.19101	1	0	0
98	1	0.6954	1	0.19101	0	0	0
97	1	0.6954	0	0.19101	1	0	0
96	1	0.6954	1	0.19101	0	0	0
95	2	0.6954	0	0.19101	0	0	0
94	3	0.6954	0	0.19101	1	1	1
93	6	0.6954	1	0.19101	1	1	1
92	10	0.6954	1	0.19101	1	1	2
91	18	0.6954	2	0.19101	2	3	4
90	36	0.6954	2	0.19101	4	5	9
89	43	0.6954	4	0.12857	6	10	18
88	58	0.6954	7	0.10377	12	20	22
87	96	0.6954	13	0.09979	23	25	31
86	163	0.6954	25	0.09750	28	35	54
85	200	0.6954	30	0.07383	37	59	94
84	247	0.8261	40	0.06765	63	101	118
83	257	0.8261	67	0.05874	107	125	175
82	271	0.8261	113	0.05476	133	186	187
81	251	0.8261	139	0.04869	195	196	200
80	174	0.8261	204	0.04245	205	209	189
79	78	0.8713	213	0.03708	217	196	133
78	27	0.8713	224	0.02893	202	137	63
77	13	0.8713	208	0.02647	140	65	22
76	10	0.8713	144	0.02403	67	23	11
75	9	0.8713	68	0.02048	23	11	9
74	11	0.9011	24	0.01805	11	9	8
73	12	0.9011	12	0.01591	9	8	10

연령 (세)	2013년 사망자	배우자 구성비율	2013	여성 사망률	2014	2015	2016
72	13	0.9011	9	0.01389	8	10	10
71	14	0.9011	8	0.01223	10	10	11
70	20	0.9011	10	0.01125	11	11	12
69	21	0.9111	11	0.00997	12	13	18
68	23	0.9111	12	0.00770	13	18	19
67	21	0.9111	13	0.00813	18	19	21
66	21	0.9111	18	0.00698	19	21	19
65	12	0.9111	20	0.00572	21	19	19
64	9	0.9116	21	0.00522	19	19	11
63	3	0.9116	19	0.00401	19	11	8
62	2	0.9116	20	0.00439	11	8	3
61	1	0.9116	11	0.00398	8	3	1
60	0	0.9116	8	0.00349	3	1	1
59	-	0.9036	3	0.00315	1	1	0
58	-	0.9036	1	0.00274	1	0	-
57	-	0.9036	1	0.00273	0	-	-
56	-	0.9036	0	0.00258	-	-	-
합계	2,161	-	1,729	-	1,664	1,590	1,5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2] 2014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 (세)	2014년 사망자	배우자 구성비율	2014	여성 사망률	2015	2016
100	1	0.6954	-	0.19101	-	-
99	0	0.6954	-	0.19101	-	-
98	1	0.6954	-	0.19101	-	0
97	1	0.6954	-	0.19101	1	0
96	2	0.6954	1	0.19101	0	0
95	2	0.6954	0	0.19101	1	0
94	5	0.6954	1	0.19101	1	1
93	8	0.6954	1	0.19101	1	1
92	14	0.6954	1	0.19101	1	2
91	28	0.6954	1	0.19101	3	4
90	47	0.6954	3	0.19101	5	8
89	57	0.6954	5	0.12857	9	16
88	87	0.6954	10	0.10377	18	27

연령 (세)	2014년 사망자	배우자 구성비율	2014	여성 사망률	2015	2016
87	145	0.6954	19	0.09979	30	33
86	214	0.6954	33	0.09750	37	52
85	232	0.6954	40	0.07383	56	88
84	285	0.8261	60	0.06765	95	133
83	263	0.8261	101	0.05874	141	145
82	250	0.8261	149	0.05476	153	215
81	172	0.8261	161	0.04869	226	200
80	83	0.8261	236	0.04245	209	193
79	32	0.8713	217	0.03708	201	135
78	14	0.8713	206	0.02893	139	65
77	11	0.8713	142	0.02647	67	26
76	10	0.8713	68	0.02403	27	11
75	12	0.8713	28	0.02048	12	9
74	12	0.9011	12	0.01805	10	8
73	14	0.9011	10	0.01591	8	10
72	16	0.9011	8	0.01389	10	11
71	21	0.9011	10	0.01223	11	12
70	24	0.9011	11	0.01125	12	14
69	25	0.9111	12	0.00997	14	18
68	21	0.9111	14	0.00770	19	22
67	23	0.9111	19	0.00813	22	22
66	15	0.9111	22	0.00698	23	19
65	9	0.9111	23	0.00572	19	21
64	4	0.9116	19	0.00522	21	14
63	1	0.9116	21	0.00401	14	8
62	1	0.9116	14	0.00439	8	4
61	0	0.9116	8	0.00398	4	1
60	0	0.9116	4	0.00349	1	1
59	-	0.9036	1	0.00315	1	0
58	-	0.9036	1	0.00274	0	-
합계	2,162	-	1,692	-	1,630	1,5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3] 2015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세)	2015년 사망자	배우자구성비율	2015	여성사망률	2016
98	1	0.6954	-	0.19101	-
97	1	0.6954	-	0.19101	-
96	2	0.6954	-	0.19101	-
95	4	0.6954	-	0.19101	0
94	6	0.6954	1	0.19101	1
93	11	0.6954	1	0.19101	1
92	22	0.6954	1	0.19101	2
91	37	0.6954	3	0.19101	3
90	63	0.6954	4	0.19101	7
89	86	0.6954	8	0.12857	13
88	131	0.6954	15	0.10377	23
87	190	0.6954	25	0.09979	40
86	248	0.6954	44	0.09750	55
85	269	0.6954	60	0.07383	85
84	292	0.8261	91	0.06765	125
83	243	0.8261	132	0.05874	163
82	172	0.8261	172	0.05476	178
81	82	0.8261	187	0.04869	231
80	34	0.8261	241	0.04245	193
79	16	0.8713	201	0.03708	138
78	12	0.8713	142	0.02893	66
77	10	0.8713	68	0.02647	27
76	12	0.8713	28	0.02403	14
75	13	0.8713	14	0.02048	10
74	14	0.9011	10	0.01805	9
73	16	0.9011	9	0.01591	10
72	23	0.9011	10	0.01389	11
71	25	0.9011	11	0.01223	13
70	28	0.9011	13	0.01125	15
69	22	0.9111	15	0.00997	21
68	23	0.9111	21	0.00770	22
67	17	0.9111	22	0.00813	25
66	12	0.9111	25	0.00698	20
65	4	0.9111	20	0.00572	21
64	2	0.9116	21	0.00522	15
63	1	0.9116	15	0.00401	11
62	0	0.9116	11	0.00439	4
61	0	0.9116	4	0.00398	2
60	0	0.9116	2	0.00349	1

연령(세)	2015년 사망자	배우자구성비율	2015	여성사망률	2016
59	-	0.9036	1	0.00315	-
합계	2,144	-	1,648	-	1,5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4] 2016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단위: 명)

연령(세)	2016년 사망자	배우자구성비율	2016년
104	1	0.6954	-
103	0	0.6954	-
102	0	0.6954	-
101	1	0.6954	-
100	1	0.6954	1
99	0	0.6954	0
98	1	0.6954	0
97	1	0.6954	1
96	3	0.6954	1
95	4	0.6954	0
94	8	0.6954	1
93	17	0.6954	1
92	28	0.6954	2
91	49	0.6954	3
90	95	0.6954	6
89	130	0.6954	12
88	172	0.6954	20
87	220	0.6954	34
86	287	0.6954	66
85	275	0.6954	90
84	270	0.8261	120
83	167	0.8261	153
82	82	0.8261	200
81	33	0.8261	191
80	17	0.8261	223
79	13	0.8713	138
78	11	0.8713	67
77	13	0.8713	27
76	13	0.8713	14
75	15	0.8713	12
74	17	0.9011	9
73	24	0.9011	11
72	28	0.9011	11
71	29	0.9011	13

연령(세)	2016년 사망자	배우자구성비율	2016년
70	25	0.9011	15
69	24	0.9111	22
68	16	0.9111	25
67	12	0.9111	26
66	5	0.9111	23
65	2	0.9111	22
64	1	0.9116	15
63	0	0.9116	11
62	0	0.9116	5
61	0	0.9116	2
60	0	0.9116	1
59	0	0.9036	0
58	0	0.9036	0
57	0	0.9036	0
56	0	0.9036	0
합계	2,110	-	1,5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5] 남자 가구주의 배우자 존재율: 2010년 기준

(단위: 명)

남자 가구주의 연령	계(A)	미혼	유배우(B)	사별	이혼	배우자 존재율(B/A)
0~14세	825	825	0	0	0	0
15~19세	35,660	35,453	207	0	0	0.005805
20~24세	145,684	136,085	9,311	0	288	0.063912
25~29세	553,935	347,590	203,109	88	3,148	0.366666
30~34세	1,172,151	308,597	845,140	473	17,941	0.721016
35~39세	1,709,630	232,052	1,418,001	2,185	57,392	0.82942
40~44세	1,822,302	147,467	1,569,828	6,263	98,744	0.861453
45~49세	1,903,695	80,371	1,679,888	13,404	130,032	0.882435
50~54세	1,802,635	40,907	1,609,012	25,000	127,716	0.892589
55~59세	1,304,665	15,393	1,178,880	30,493	79,899	0.903588
60~64세	993,770	6,434	905,883	35,368	46,085	0.911562
65~69세	764,178	2,959	696,233	42,271	22,715	0.911087
70~74세	586,635	1,188	528,597	46,984	9,866	0.901066
75~79세	347,537	448	302,818	40,964	3,307	0.871326
80~84세	143,319	160	118,402	23,781	976	0.826143
85세 이상	57,027	90	39,658	17,073	206	0.695425

자료: 통계청

[참고표 6] 남녀 사망률: 2009년 기준

(단위: 명)

연령	남	여
90세 이상	0.22942	0.19101
89세	0.17183	0.12857
88세	0.14753	0.10377
87세	0.14046	0.09979
86세	0.13647	0.09750
85세	0.11318	0.07383
84세	0.10741	0.06765
83세	0.08830	0.05874
82세	0.08323	0.05476
81세	0.07720	0.04869
80세	0.07227	0.04245
79세	0.06377	0.03708
78세	0.05177	0.02893
77세	0.04781	0.02647
76세	0.04224	0.02403
75세	0.03994	0.02048
74세	0.03740	0.01805
73세	0.03463	0.01591
72세	0.03205	0.01389
71세	0.02804	0.01223
70세	0.02677	0.01125
69세	0.02310	0.00997
68세	0.02106	0.00770
67세	0.02078	0.00813
66세	0.01911	0.00698
65세	0.01487	0.00572
64세	0.01408	0.00522
63세	0.01097	0.00401
62세	0.01187	0.00439
61세	0.01069	0.00398
60세	0.00980	0.00349
59세	0.00938	0.00315
58세	0.00748	0.00274
57세	0.00787	0.00273
56세	0.00703	0.00258
55세	0.00664	0.00221
54세	0.00674	0.00220
53세	0.00588	0.00207
52세	0.00559	0.00183
51세	0.00513	0.00176
50세	0.00477	0.00167

주: 통계청 자료를 가공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진료비용 중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가유공 당사자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또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외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진료비용 지원내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개정안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규모

	연령별 구분	의료시설 구분	현행	개정안
참전유공자	75세 미만	직접운영	100분의 60	전액지원
		위탁운영		100분의 60
	75세 이상	직접운영		전액지원
		위탁운영		전액지원

본 추계에서는 연령별, 의료시설별로 연도별 이용자 수와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을 추정한 후 이를 곱하여 연도별 진료비용을 추정한다. 이 값에

현행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진료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금액이다.

추계결과 참전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2년도에 10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5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전액 지원(안 제7조)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또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외의 위탁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 한하여 전액 지원(안 제7조)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표 1]과 같이 2012년도에 107억원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 54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안 제7조 (75세 이상 전액지원)	59	58	57	55	53	282
안 제7조 (75세 미만 일부지원)	48	50	53	55	57	263
합 계	107	108	110	110	110	5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비용추계 대상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추가지원(안 제7조) 규모이다.

나. 방법

(1) 진료비는 보훈병원 진료와 위탁의료시설 진료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text{〈 보훈병원 진료비 〉} \\ \text{참전유공자 수} \times (\text{진료비 전액} - \text{현행 법률에 따른 진료비})$$

$$\text{〈 위탁의료시설 진료비 〉} \\ \text{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수} \\ \times (\text{위탁의료시설 진료비 전액} - \text{동 시설 진료비 지원금액})$$

개정안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규모

	연령별 구분	의료시설 구분	현행	개정안
참전유공자	75세 미만	직접운영	100분의 60	전액지원
		위탁운영		100분의 60
	75세 이상	직접운영		전액지원
		위탁운영		전액지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참전유공자 진료비 추가지원 규모의 추정(안 제7조)

개정안에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전액과 동 의료시설 이외 위탁 의료시설의 진료비 전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의 규모가 각각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추계한다. 참고로 현재 지원되는 진료비는 진료비 전액의 100분의 60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보훈처의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보훈병원 진료’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의료시설 이외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를 ‘위탁 진료’로 하기로 한다.

가. 보훈병원 진료

(1)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추가 지원 진료비

참전유공자 연령별로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통계자료는 가용하지 않고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의 총 수만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는 전체 참전유공자의 연령별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보훈병원을 이용한 참전유공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본 추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수를 추정한다. 참고로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을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표 3] 참전유공자 보훈 병원 진료 실적 및 1인당 지원금액
(2009년도 12월말 기준)

(단위: 명, 천원)

	인원	금액	1인당 지원금액
입원	88,315	2,030,841	23
외래	245,322	13,034,777	53
계	333,637	15,065,618	45

자료: 국가보훈처

[표 3]의 보훈병원 이용자 수를 참고표 [1]의 참전유공자 연령별분포에 따라 구분하면 참고표 [2]와 같이 연령별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보훈병원 이용자 수의 추정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보훈병원 이용자의 수: 2010~2016년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참전유공자의 수	174,321	162,045	148,684	134,749	121,246	109,144	98,005
보훈병원 이용자	178,335	165,775	152,105	137,850	124,041	111,662	100,2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평균 45,000원의 진료비가 지원되며 이 금액은 전체 진료비의 100분의 60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체 진료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00원이며, 개정안에서는 이 금액을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금액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다. 2010년의 평균진료비는 2010년초의 진료비와 2010년도 말 진료비를 구하여 이를 평균한 값으로 한다. 2010년 초의 진료비와 2009년 말 진료비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10년도 말의 진료비는 2009년 말 진료비에 진료비 연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구한다. 그리고 2010년 이후의 진료비는 이렇게 구한 2010년 평균 진료비에 진료비 연평균상승률을 반영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진료비 연평균상승률은 반영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진료비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회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2010~2016년

(단위: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가 지원비	31,290	33,981	36,903	40,077	43,524	47,267	51,332

주: 2001~2005년 사이 연평균 진료비 상승률 8.6%를 적용함(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06.3.9, p. 8).

자료: 국가보훈처

위의 [표 4] 및 [표 5]에서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진료비 총액을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총액: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추가 지원비	5,613	5,525	5,399	5,278	5,147	26,9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에 추가 지원 진료비: 보훈병원 이용자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의 수, 추가 진료비 지원금액 등에 대한 추정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추가 지원 진료비’에서 구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수와 이들 중에서 보훈병원 이용자의 수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수 및 보훈병원 이용자의 수: 2010~2016년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참전유공자	134,977	130,106	126,033	122,276	118,310	113,458	108,117
보훈병원 이용자	138,091	133,109	128,941	125,099	121,041	116,076	110,6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에서 추정한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수를 [표 5]에서 구한 추가 진료비와 곱하면 75세 미만 보훈병원 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지원하는 진료비 총액을 구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총액: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추가 지원비	4,758	5,014	5,268	5,487	5,678	26,2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위탁 진료

(1)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추가 지원 진료비

참전유공자 연령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이외의 의료시설(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통계자료는 가용하지 않고 위탁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의 총 수만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는 전체 참전유공자의 연령별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한 참전유공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본 추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수를 추정한다. 참고로 참전유공자는 위탁의료시설을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표 9] 위탁의료시설 진료실적 및 1인당 지원금액: 2009년

(단위: 명, 천원)

	인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입원	24,850	420,000	17
외래	17,865	158,000	9
계	42,715	578,000	26

주: 외래진료비에 약제비 포함이며,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의 60%를 지원하는 금액임.

자료: 국가보훈처

[표 9]의 위탁의료시설 이용자 수(42,715명)를 참고표 [1]의 참전유공자 연령별분포에 따라 추정하면 참고표 [3]과 같이 연령별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보훈병원 이용자 수의 추정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위탁의료시설 이용자의 수: 2010~2016년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참전유공자의 수	174,321	162,045	148,684	134,749	121,246	109,144	98,005
위탁의료시설 이용자	22,834	21,227	19,478	17,651	15,881	14,300	12,8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9]에서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평균 26,000원의 진료비가 지원되며 이 금액은 전체 진료비의 100분의 60이다. 따라서 전체 진료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10,833원이며, 개정안에서는 이 금액을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금액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2010년도 평균 진료비를 추정한 후, 이 값을 기준으로 진료비 연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가 진료비를 추정한다.

[표 11]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회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2010~2016년
(단위: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가 지원비	11,299	12,271	13,326	14,472	15,717	17,069	18,537

주: 2001~2005년 사이 연평균 진료비 상승률 8.6%를 적용함(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06.3.9, p. 8).

자료: 국가보훈처

위의 [표 10] 및 [표 11]에서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진료비 총액을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총액: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추가 지원비	249	245	239	234	228	1,1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에 추가 지원 진료비

75세 미만이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 법률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100분의 60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가로 지원되는 진료비는 없다.

3. 추계결과의 정리

이상의 논의에서는 보훈병원과 위탁의료시설로 구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진료비 지원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3] 의료시설로 구분한 추가 진료비의 추정: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보훈병원	75세 이상	5,613	5,525	5,399	5,278	5,147	26,962
	75세 미만	4,758	5,014	5,268	5,487	5,678	26,205
	소 계	10,371	10,539	10,667	10,765	10,825	53,167
위탁의료시설	75세 이상	260	255	250	244	238	1,247
	75세 미만	0	0	0	0	0	0
	소 계	260	255	250	244	238	1,247
합 계		10,631	10,794	10,917	11,009	11,063	54,4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본 추계의 결과를 보다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미만이 참전유공자로 구분하여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는 진료비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4] 연령별로 구분한 추가 진료비의 추정: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75세 이상	보훈병원	5,613	5,525	5,399	5,278	5,147	26,962
	위탁의료시설	260	255	250	244	238	1,247
	소 계	5,873	5,780	5,649	5,522	5,385	28,209
75세 미만	보훈병원	4,758	5,014	5,268	5,487	5,678	26,205
	위탁의료시설	0	0	0	0	0	0
	소 계	4,758	5,014	5,268	5,487	5,678	26,205
합 계		10,631	10,794	10,917	11,009	11,063	54,4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표 15]와 같이 2012년도에 106억 3,100만원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 544억 1,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75세 이상	5,873	5,780	5,649	5,522	5,385	28,209
75세 미만	4,758	5,014	5,268	5,487	5,678	26,205
안 제7조(의료지원)	10,631	10,794	10,917	11,009	11,063	54,4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I. 참고자료

[참고표 1] 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0~2016년

(단위: 명)

연령	2009 생존 인원(A)	남자사망률 (B)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0(C)	2011(D)	2012(E)	2013	2014	2015	2016	
102		0.30								6
101		0.30							8	5
100		0.30						11	7	6
99		0.30					15	10	8	16
98		0.30			22	14	11	23	21	
97		0.30		32	20	16	33	30	46	
96	0	0.30	45	28	23	47	43	66	81	
95	59	0.24	37	30	62	56	87	106	136	
94	49	0.24	40	81	74	115	140	179	258	
93	52	0.24	107	97	151	184	236	340	438	
92	141	0.24	127	199	242	310	447	576	958	
91	167	0.24	262	318	408	588	758	1,260	2,228	
90	345	0.24	418	537	774	997	1,658	2,932	3,341	
89	498	0.16	639	921	1,187	1,974	3,490	3,977	4,791	
88	761	0.16	1,096	1,413	2,350	4,155	4,734	5,704	6,390	
87	1,305	0.16	1,682	2,798	4,946	5,636	6,791	7,607	8,551	
86	2,002	0.16	3,331	5,888	6,709	8,085	9,056	10,180	11,337	
85	3,965	0.16	7,009	7,987	9,625	10,781	12,119	13,496	14,530	
84	7,788	0.10	8,874	10,694	11,979	13,466	14,995	16,144	16,376	
83	9,860	0.10	11,882	13,310	14,962	16,661	17,938	18,196	9,859	
82	13,202	0.10	14,789	16,624	18,512	19,931	20,218	10,954	4,678	
81	16,432	0.10	18,471	20,569	22,145	22,464	12,171	5,198	3,009	
80	20,523	0.10	22,854	24,606	24,960	13,523	5,776	3,343	2,070	
79	24,313	0.06	26,177	26,553	14,386	6,145	3,556	2,202	1,510	
78	27,848	0.06	28,248	15,304	6,537	3,783	2,343	1,606	1,239	
77	30,051	0.06	16,281	6,954	4,024	2,493	1,709	1,318	1,338	
76	17,320	0.06	7,398	4,281	2,652	1,818	1,402	1,423	2,125	
75	7,870	0.06	4,554	2,821	1,934	1,492	1,514	2,261	2,662	
74	4,695	0.03	2,908	1,994	1,538	1,561	2,331	2,744	4,216	
73	2,998	0.03	2,056	1,586	1,609	2,403	2,829	4,346	8,182	

연령	2009 생존 인원(A)	남자사망률 (B)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0(C)	2011(D)	2012(E)	2013	2014	2015	2016
72	2,120	0.03	1,635	1,659	2,477	2,917	4,480	8,435	12,499
71	1,686	0.03	1,710	2,554	3,007	4,619	8,696	12,886	14,107
70	1,763	0.03	2,633	3,100	4,762	8,965	13,285	14,543	16,248
69	2,687	0.02	3,163	4,859	9,148	13,556	14,840	16,580	16,353
68	3,228	0.02	4,958	9,335	13,833	15,143	16,918	16,687	17,519
67	5,059	0.02	9,526	14,115	15,452	17,263	17,028	17,877	10,121
66	9,720	0.02	14,403	15,767	17,615	17,376	18,242	10,328	6,887
65	14,697	0.02	16,089	17,974	17,731	18,614	10,539	7,028	1,324
64	16,252	0.01	18,156	17,910	18,802	10,645	7,099	1,337	515
63	18,339	0.01	18,091	18,992	10,753	7,171	1,350	520	135
62	18,274	0.01	19,184	10,862	7,243	1,364	525	136	8
61	19,378	0.01	10,972	7,316	1,378	530	137	8	3
60	11,083	0.01	7,390	1,392	535	138	8	3	0
59	7,465	0.01	1,406	540	139	8	3	0	0
58	1,420	0.01	545	140	8	3	0	0	0
57	551	0.01	141	8	3	0	0	0	0
56	142	0.01	8	3	0				
55	8	0.01	3	0					
54	3	0.01	0						
생존자	326,119		309,726	292,916	275,738	258,207	240,803	223,796	206,122

주: 2010년의 나이가 Y인 생존자(C)= 2009년의 나이가 Y-1인 생존인원(A) × (1 - 나이가 Y-1의 생존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2] 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생존자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자 추정:
2011~2016년

(단위: 명)

연령	2009 생존 인원(A)	남자사망률 (B)	보훈병원 진료자 (C)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0(D)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2		0.30	0							6
101		0.30	0						8	5
100		0.30	0					11	7	6
99		0.30	0				15	10	8	17
98		0.30	0			22	14	11	24	21
97		0.30	0		32	20	16	34	30	48
96	0	0.30	0	46	29	23	48	43	68	83
95	59	0.24	60	38	30	63	57	90	109	139
94	49	0.24	50	40	83	75	118	143	183	264
93	52	0.24	53	109	99	155	188	241	347	448
92	141	0.24	144	130	204	247	317	457	589	980
91	167	0.24	171	268	325	417	601	775	1,289	2,279
90	345	0.24	353	428	549	791	1,020	1,696	2,999	3,417
89	498	0.16	509	654	942	1,214	2,019	3,570	4,068	4,902
88	761	0.16	779	1,121	1,445	2,404	4,250	4,843	5,836	6,538
87	1,305	0.16	1,335	1,720	2,862	5,060	5,765	6,948	7,783	8,748
86	2,002	0.16	2,048	3,407	6,024	6,863	8,271	9,265	10,414	11,598
85	3,965	0.16	4,056	7,171	8,170	9,846	11,030	12,398	13,807	14,865
84	7,788	0.10	7,968	9,078	10,940	12,255	13,775	15,341	16,517	16,754
83	9,860	0.10	10,087	12,155	13,617	15,305	17,045	18,352	18,616	10,086
82	13,202	0.10	13,506	15,130	17,006	18,939	20,391	20,684	11,207	4,786
81	16,432	0.10	16,811	18,896	21,043	22,657	22,982	12,452	5,318	3,077
80	20,523	0.10	20,996	23,381	25,174	25,535	13,835	5,909	3,419	2,118
79	24,313	0.06	24,873	26,781	27,165	14,718	6,286	3,637	2,253	1,545
78	27,848	0.06	28,490	28,899	15,657	6,687	3,869	2,397	1,644	1,268
77	30,051	0.06	30,744	16,656	7,114	4,116	2,550	1,749	1,349	1,370
76	17,320	0.06	17,719	7,568	4,379	2,713	1,861	1,435	1,457	2,174
75	7,870	0.06	8,051	4,659	2,886	1,980	1,527	1,550	2,313	2,723
74	4,695	0.03	4,803	2,975	2,041	1,574	1,598	2,385	2,807	4,313
73	2,998	0.03	3,067	2,104	1,623	1,647	2,459	2,894	4,446	8,371
72	2,120	0.03	2,169	1,673	1,698	2,535	2,984	4,584	8,630	12,788
71	1,686	0.03	1,725	1,750	2,613	3,076	4,726	8,897	13,183	14,433
70	1,763	0.03	1,804	2,694	3,171	4,872	9,172	13,591	14,879	16,622

연령	2009 생존 인원(A)	남자사망률 (B)	보훈병원 진료자 (C)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0(D)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9	2,687	0.02	2749	3,236	4,971	9,359	13,868	15,183	16,961	16,732
68	3,228	0.02	3302	5,072	9,550	14,151	15,493	17,307	17,073	17,925
67	5,059	0.02	5176	9,745	14,440	15,809	17,660	17,421	18,291	10,356
66	9,720	0.02	9944	14,735	16,132	18,020	17,777	18,664	10,567	7,046
65	14,697	0.02	15036	16,461	18,388	18,140	19,045	10,783	7,190	1,354
64	16,252	0.01	16627	18,574	18,323	19,237	10,892	7,263	1,368	526
63	18,339	0.01	18762	18,508	19,431	11,002	7,336	1,382	531	138
62	18,274	0.01	18695	19,627	11,113	7,410	1,396	536	139	8
61	19,378	0.01	19825	11,225	7,485	1,410	541	140	8	3
60	11,083	0.01	11338	7,561	1,424	546	141	8	3	0
59	7,465	0.01	7637	1,438	552	142	8	3	0	0
58	1,420	0.01	1453	558	143	8	3	0	0	0
57	551	0.01	564	144	8	3	0	0	0	0
56	142	0.01	145	8	3	0				
55	8	0.01	8	3	0	0				
54	3	0.01	3	0	0	0				
생존자	326,119		333,635	316,426	298,884	281,046	262,949	245,082	227,738	210,880

주: 1. 연령별 보훈병원진료자(C)는 2009년의 연령별 생존인원 / 전체 생존인원 × 보훈병원 이용자의 수

2. 2010년의 나이가 Y인 생존자(D)= 2009년의 나이가 Y-1인 보훈병원이용자(C) × (1 - 나이가 Y-1의 생존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3] 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생존자에 따른 위탁 의료시설 진료자 추정:
2011~2016년

(단위: 명)

연령	2009 생존 인원(A)	남자사망률 (B)	위탁시설 진료자 (C)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0(D)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2		0.30	0							1
101		0.30	0						1	1
100		0.30	0					1	1	1
99		0.30	0				2	1	1	2
98		0.30	0			3	2	1	3	3
97		0.30	0		4	3	2	4	4	6
96	0	0.30	0	6	4	3	6	6	8	11
95	59	0.24	8	5	4	8	8	11	14	18
94	49	0.24	6	5	11	10	15	18	24	34
93	52	0.24	7	14	13	20	24	31	45	57
92	141	0.24	18	17	26	32	41	59	75	125

연령	2009 생존 인원(A)	남자사망률 (B)	위탁시설 진료자 (C)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0(D)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1	167	0.24	22	34	42	54	78	99	165	292
90	345	0.24	45	55	71	102	130	217	384	438
89	498	0.16	65	84	121	155	258	457	521	627
88	761	0.16	100	144	185	307	544	620	747	837
87	1,305	0.16	171	220	366	648	738	889	996	1,120
86	2,002	0.16	262	436	771	879	1,058	1,186	1,333	1,486
85	3,965	0.16	519	918	1,046	1,260	1,412	1,587	1,769	1,904
84	7,788	0.10	1020	1,162	1,400	1,569	1,763	1,965	2,115	2,145
83	9,860	0.10	1291	1,556	1,743	1,959	2,183	2,350	2,383	1,292
82	13,202	0.10	1729	1,937	2,177	2,426	2,611	2,648	1,436	613
81	16,432	0.10	2152	2,419	2,695	2,901	2,942	1,595	681	393
80	20,523	0.10	2688	2,994	3,223	3,269	1,772	757	437	272
79	24,313	0.06	3185	3,429	3,478	1,885	805	465	289	199
78	27,848	0.06	3648	3,700	2,005	856	495	307	212	163
77	30,051	0.06	3936	2,133	911	527	327	225	173	175
76	17,320	0.06	2269	969	561	348	239	184	186	279
75	7,870	0.06	1031	597	370	254	196	198	297	350
74	4,695	0.03	615	381	262	202	204	306	361	552
73	2,998	0.03	393	270	208	210	315	372	569	1,073
72	2,120	0.03	278	214	217	325	383	587	1,106	1,637
71	1,686	0.03	221	224	335	395	605	1,140	1,688	1,849
70	1,763	0.03	231	345	407	624	1,175	1,740	1,906	2,129
69	2,687	0.02	352	415	637	1,199	1,776	1,945	2,172	2,142
68	3,228	0.02	423	650	1,223	1,812	1,985	2,216	2,186	2,294
67	5,059	0.02	663	1,248	1,849	2,025	2,261	2,231	2,341	1,326
66	9,720	0.02	1273	1,887	2,066	2,307	2,277	2,389	1,353	903
65	14,697	0.02	1925	2,108	2,354	2,323	2,438	1,381	921	172
64	16,252	0.01	2129	2,378	2,346	2,463	1,395	930	174	65
63	18,339	0.01	2402	2,370	2,488	1,409	939	176	66	19
62	18,274	0.01	2394	2,513	1,423	948	178	67	19	1
61	19,378	0.01	2538	1,437	958	180	68	19	1	0
60	11,083	0.01	1452	968	182	69	19	1	0	0
59	7,465	0.01	978	184	70	19	1	0	0	0
58	1,420	0.01	186	71	19	1	0	0	0	0
57	551	0.01	72	19	1	0	0	0	0	0
56	142	0.01	19	1	0	0				
55	8	0.01	1	0	0	0				
54	3	0.01	0	0	0	0				
생존자	326,119		42,717	40,517	38,272	35,989	33,670	31,381	29,163	27,006

주: 1. 연령별 보훈병원진료자(C)는 2009년의 연령별 생존인원 / 전체 생존인원 × 보훈병원 이용자의 수

2. 2010년의 나이가 Y인 생존자(D)= 2009년의 나이가 Y-1인 보훈병원이용자(C) × (1 - 나이가 Y-1의 생존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군용비행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 및 진동에 따른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는 동시에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전국에는 군사활동을 위한 군용비행장 등이 전국적으로 있어, 이들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고, 국가안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의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가 계속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소음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진동 대책구역을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추계서에서는 추계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소음·진동 대책을 위한 구체적 소요비용 산정을 위하여 국방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참조하여 비용을 추계하였는데, 국방부는 39개 군용비행장중 23개를 대상으로 실제소음을 측정하였으므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는 실제 측정한 수치를 평균치로 하고 비용추계를 하였다.

추계결과 군용비행장 등에 대하여 소음방지 건물이전이나 토지매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경우 2013년 4조 8,39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25조 6,9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소음진동대책구역의 지정 등(안 제6조, 안 제7조)

제정안 제6조는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민·군공용비행장(이하에서 이들을“군용비행장”이라 한다)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 환경 침해 등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소음진동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며, 안 제7조는 소음진동대책구역을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음진동대책구역에 대한 사후 조사(안 제8조)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구역의 소음·진동도 변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이 되기 전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자동소음 측정망의 설치(안 제12조)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등의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 소음·진동 방지 시설의 설치(안 제17조)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군용 비행장에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방음시설의 설치(안 제18조)

국방부장관은 제1종 구역 안에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시설과 제2종 및 제3종 구역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녹지대의 조성(안 제19조)

국방부장관은 제1종 구역 안에서의 소음영향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에서 매수한 토지에 녹지대 또는 완충지대를 조성하거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녹지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안 제20조)

국가는 주변지역의 주민생활 또는 사업활동이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생활환경시설 또는 사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발생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아. 이전보상(안 제22조)

제1종 및 제2종 구역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을 소음·진동대책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토지매수의 청구(안 제23조)

제1종 및 제2종 구역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차.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국방부장관은 토지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카.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안 제28조)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대책구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의 내용 및 대상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안 제29조)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 대책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감면계획의 내용 및 감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 소음·진동대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0조, 안 제32조)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진동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진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법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법안 심의와 예산안 심의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자동 소음 측정망의 유지보수비 등의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2) 제1종 및 제2종 구역 내의 주민은 전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토지 및 건물 등은 모두 국가가 매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를 하기로 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진동 피해 대책으로 방음시설의 설치, 건물 이전 보상과 토지 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표 1]과 같이 2013년 4조 8,39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25조 6,91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안 제6조 (소음·진동대책구역의 지정)	19.5	-	-	-	-	19.5
안 제8조 (소음·진동 대책구역에 대한 사후조사)	-	-	-	19.5	-	19.5
안 제10조 (자동 소음 측정망의 설치)	89.0	15.6	15.6	15.6	15.6	151.4
안 제18조 (방음시설의 설치)	5,350.0	5,521.0	5,681.0	5,846.0	6,016.0	28,414
안 제20조(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안 제2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212.0	218.0	225.0	231.0	238.0	1,124.0
안 제22조 (건물 등의 이전보상), 안 제23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1종 구역 14,460.7	14,923.5	15,356.2	15,801.6	16,259.8	76,801.8
	제2종 구역 26,858.4	27,717.8	28,521.6	29,348.8	30,199.9	142,646.5
안 제25조(감정평가 등의 비용부담)	4.5	4.7	4.8	4.9	5.1	24.0
안 제29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1,379.5	1,446.8	1,518.9	1,596.3	1,679.4	7,620.9
안 제30조와 안 제32조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16.1	16.3	17.4	18.5	19.7	88.0
합 계	48,389.7	49,863.7	51,340.5	52,882.2	54,433.5	256,909.6

주: 1. 방음시설의 설치, 건물이전 보상과 토지매수 관련 비용은 소요액을 5년간으로 등분하고, 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곱하여 계산한 것임.

2.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30% 감면혜줄 경우 소요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상

(1) 소음·진동대책구역의 지정(안 제6조)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해 소음·진동 영향도별로 소음·진동 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2) 소음·진동대책구역에 대한 사후조사(안 제8조)

소음·진동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구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이 되기 전에 조사할 수 있다.

(3)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안 제12조)

소음·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음·진동규제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설치(안 제17조)

군용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안 제18조)

소음·진동대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녹지대의 조성(안 제19조)

제1종 구역 안에서 소음영향도를 줄이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녹지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안 제20조)

국가는 군용비행장 등의 설치·운영으로 그 주변지역의 주민생활 또는 사업활동이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환경시설 등에 정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 이전 보상 (안 제22조)

제1종 및 제2종 구역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소음·진동대책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토지매수의 청구(안 제23조)

제1종 및 제2종 구역내에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0)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국방부장관은 토지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1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안 제28조)

소음·진동대책구역 내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안 제29조)

소음·진동대책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3) 소음·진동대책위원회 설치(안 제30조 및 안 제32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진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상과 같은 13개 항목이 비용추계 대상이 된다.

나. 방법

(1) 소음·진동대책구역의 지정 기준

제정안 제5조는 소음·진동 대책구역 지정기준으로 소음은 75웨클 (WECPNL)¹⁾이상으로 하며, 진동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제7조에서는 소음·진동 대책구역을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되, 구역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진동대책구역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표 2]와 같이 제1종 구역은 소음·진동이 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은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은 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약자로 항공기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 야간, 심야 등 시간대별로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소음평가 단위이다.

[표 2] 소음·진동 대책구역 구분

(단위: 웨클)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소음·진동범위	95 이상	90 이상~95 미만	75 이상~90 미만

(2) 소음·진동대책구역 대상

제정안은 소음·진동대책구역을 군용비행장²⁾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표 3]과 같이 군용비행장 3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표 3] 소음·진동대책구역 현황

(단위: 개소)

사업대상	공군	육군	해군	합 계
비행장	12	24	3	39

주: 1. 공군비행장(12): 서산, 광주, 충주, 사천, 대구, 강릉, 수원, 청주, 성남, 원주, 예천, 청원
 2. 육군비행장(24): 논산, 덕소, 부천, 용인, 이천, 조치원, 하남, 현리,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양양, 전주, 파주, 가평, 포천, 양평, 춘천, 화천, 홍천, 연기, 영천, 음성
 3. 해군비행장(3): 진해, 포항, 목포
 자료: 국방부 자료를 재구성함.

(3) 소음·진동 대책구역 비용 산정

소음·진동 대책구역 지정 현황 및 소요 비용 산정은 국방부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수행한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예산추계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2007.12) (이하 “국방부 용역보고서”라 한다)를 참고하기로 한다.

참고로 국방부 용역보고서는 23개 군용 비행장에 대해서는 실제 소음을

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측정하여 소요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총 39개 군
용비행장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4) 비용추계 방법

〈 비용 추계 방법 〉

재정소요

= 소음진동대책구역의 지정·고시+ 소음진동대책구역에 대한 사후조사+ 자동소음측
정망의 설치+ 방음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와 지원사업계획의 수
립+ 건물이전 보상과 토지 매수 + 감정평가 비용부담+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
험료의 감면 + 소음진동대책위원회 설치·운영

2. 소음·진동대책구역의 지정·고시(안 제6조)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진동 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음 실태 조사비로 비행장은 1개소 당 5,000만원 정
도(전술/지원 항공작전기지 기준)가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음·진동대책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진동 수준의 조사비용도 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적용한 결과 소음·진동 대책구역 지
정·고시 비용은 [표 4]와 같이 19억 5,000만원으로 전망된다.

[표 4] 소음·진동 대책구역 지정 비용: 2010년 기준

	소요액
비행장(39개소)	19억 5,000만원(39개소 × 5,00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소음·진동 대책구역에 대한 사후 조사(안 제8조)

제정안은 소음·진동 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3년마다 해당 구역의 소음·진동도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음·진동 대책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비용만큼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2016년도에 19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4. 자동 소음 측정망의 설치(안 제12조)

제정안은 군용비행장 등의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민간비행장에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표 5]는 김포공항 등 3개 민간공항에 설치된 측정망과 관련 소요비용 현황이다.

[표 5] 민간 공항의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 현황

(단위: 백만원)

공항 명	설치년도	사업비	측정망 수	비고
김포	2000	373	9개소	신규 설치
	2007	263	12개소(3개소 추가)	시스템 개량
김해	2009	565	6개소	신규 설치
제주	2003	495	6개소	시스템 개량
	2009	583	6개소(3개소 이전)	신규 설치

자료: 한국공항공사

표에서 보듯이 최근에 측정망이 신규 설치(2009년)된 곳은 김해공항으로, 1개소 당 평균 9,417만원(5억 6,500만원/6개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추계에서도 이 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 횟수에 있어 군용비행장이 민간공항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여 측정망 소요는 군용 비행장 당 2개를 설치한다고 가정한다.

측정망의 설치 이후에는 운영경비가 소요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김포 국제공항의 경우 측정망 1개소 당 운영경비가 연 2,000만원(2010년 기준)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을 전제로 군용 비행장 39곳에 측정망 78개(39곳×2개)를 설치할 경우, 소요경비는 [표 6]과 같다.

[표 6]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 및 운영 비용: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설치비용(78개×9,417만원)	7,345	-	-	-	-	7,345
운영유지비(78개×2,000만원)	1,560	1,560	1,560	1,560	1,560	7,800
합 계	8,905	1,560	1,560	1,560	1,560	15,1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설치(안 제17조)

제정안은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제1종 및 제2종 구역 내 건물 및 주민을 모두 이전 또는 이주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므로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민간 비행장인 김포 국제공항의 경우 1988년도에 청사 주변에 방음벽(규모 686m, 16억원)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군용비행장 39개소에도 이와 같은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소요 비용은 2013년도 기준으로 1,794억원(46억원³⁾× 39개소)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방음시설의 설치(안 제18조)

제정안은 제1종 구역 안에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시설과 제2종 및 제3종 구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추계에서는 제1종 및 제2종 구역 내의 시설 및 주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제3종 구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방음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

방음시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본 추계에서는 개인 주택 등에 방음시설⁴⁾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 방음시설 소요기준

국방부 용역보고서에서 적용한 개인시설(주택 등)과 공공시설(학교 등)에 대한 방음시설 비용기준은 각각 [표 7] 및 [표 8]과 같다. 이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민간공항인 김포 및 김해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해 항공기 소음 대책으로 사용한 기준이다. 본 추계에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표 7] 개인시설 방음대책 비용 기준

(단위: 백만원)

	단독주택	연립/아파트
1 개소 당 방음비용	11	6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p. 63.

3) 1개소 당 46억원은 1988년도 16억원에 소비자 물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값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과 같음 ('89~'10년도는 통계청, '11년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5.7	8.6	9.3	6.2	4.8	6.3	4.5	4.9	4.4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2.9	2.8	3.0

4) 국토해양부에서는 김포비행장 등 민간 공항 시설 주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이러한 시설을 해주고 있음.

[표 8] 공공시설 방음대책 비용 기준

(단위: 백만원)

	학교	병원	보건소	경로당/마을회관
1개소 당 소음대책비용	교실(20평)당 13	병실 당 10	85	85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p. 64.

나. 소음진동 대책구역 내 시설(개인시설과 공공시설) 현황

소음·진동대책구역 내 시설 현황은 [표 9]와 같다. 제1종 구역 내 4,130개소, 제2종 구역 내 6,696개소, 제3종 구역 내 212,435개소가 있어, 총 22만 3,261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소음·진동대책 구역 내 시설 수 현황: 2007년 기준

(단위: 개소)

	제1종(95 이상)	제2종(90~94)	제3종(75~89)	합계
공군비행장	4,130	6,696(19)	176,631	187,457
육군비행장	-	-	19,176	19,176
해군비행장	-	-	16,628	16,628
합 계	4,130	6,696	212,435	223,261

주: ()는 공공시설 숫자임.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재구성.

다. 방음시설 비용 추계 결과

방음시설 소요비용은 위의 방음시설 비용기준과 시설 수를 곱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방음시설 비용은 제3종 구역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표 10]과 같이 2007년 기준으로 2조 2,257억 원이 된다. 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⁵⁾을 곱하여 2013년도로 환산하면 2조 6,753억 원이 된다.

5) 각주 3 참조.

[표 10] 제3종 구역 방음시설 소요 비용: 2007년 기준

(단위: 백만원)

소음도(웨클)		제3종			계
		85~90	80~85	75~80	
소음대책 비용	공군	251,054	533,459	715,653	1,500,166
	육군	48,982	220,323	247,076	516,381
	해군	52,778	57,038	99,314	209,130
총 비용		352,814	810,820	1,062,043	2,225,677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의 pp. 195~201과 p. 226 재구성.

그런데 이를 단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다. 따라서 추계기간인 5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2013년도 소요액을 5년으로 나누어 연간 소요액 5,350억원(2조 6,753억원/5년)을 구한 다음, 이후 연도의 소요액은 이에 소비자 물가 전망을 곱하면 될 것이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이 2013년부터 5년간 2조 8,4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1] 방음시설 소요액: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금액	5,350	5,521	5,681	5,846	6,016	28,414

주: 소비자 물가 전망은 2013년 3.2%, 2014년 이후 2.9%(국회예산정책처,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2010.11, p.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녹지대의 조성(안 제19조)

제정안은 제1종 구역 안에서의 소음 영향도를 줄이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녹지대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제1종 및 제2종 구역안의 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므로 별도의 녹지대 조성비용은 추계하지 않기로 한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김포 국제공항에도 별도의 녹지대를 조성한 것은 없다고 한다.

7.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안 제20조)와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안 제28조)

제정안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음·진동대책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환경시설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 제28조는 소음대책구역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접경지역 종합계획’⁶⁾을 수립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지역사회 발전, 지역경제 및 자연생태, 문화사업 발전 등이다. 본 제정법안도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 양 법의 취지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접경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참고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산림·환경 보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정주생활환경개선 관련 비용만 참고하기로 한다. [표 12]는 이에 따라 발췌한 정주생활환경개선 관련 비용현황이다. 표에서 접경지역 km² 당 평균 지원예산은 1.83억원(2003년 기준)으로 나타난다. 이를 본 추계에서도 적용하기로 한다.

소음·진동 대책구역은 [표 13]과 같이 427km² 이다. 이에 위의 접경지역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은 2003년 기준으

6)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종합계획(2003~2012)」.

로 781억원($427\text{km}^2 \times 1.83\text{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03년도 기준 가격이므로, 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이를 2013년도 비용으로 환산하면 1,058억원이 된다. 이를 단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크므로, 본 추계에서는 5년간으로 나누어 지원한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1년에 212억원(1,058억원/5년)이 되며, 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연도별로 추정하면 [표 14]와 같다.

[표 12] 접경지역 종합계획 현황: 2003~2012년

(단위: 억원)

대상지역	총 사업비				사업면적 (단위: km^2) (c)	km^2 당 평균예산 ($c=(a+b)/c$)
	국비(a)	지방비(b)	기타	소계		
15개 사군	11,379	3,436	311	15,126	8,097	1.83

주: 15개 접경지역은 인천광역시(2) 강화군/옹진군, 경기도(7)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군 /연천군/포천군, 강원도(6)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임.
자료: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종합계획』, p. 12, p. 71.

[표 13] 공군·육군·해군별 소음·진동 대책구역 범위

	공군	육군	해군	계
면적(km^2)	311	83	33	427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p.187.

[표 14] 소음·진동대책구역 지원사업 소요액 전망: 2013~2016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금액	212	218	225	231	238	1,1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건물 등의 이전 보상과 토지 매수 비용(안 제22조와 제23조)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한 제1종 및 제2종 구역 내에 있는 건물 등의 이전 보상과 토지 매수의 경우, 본 추계에서는 국가에서 전체 보상 및 매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가. 비용 산출 기준

제1종과 제2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등을 모두 매수하고 주민을 이주 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건물 및 지가 보상비, 토지매입비가 해당된다. 비용 산출 기준은 국방부 용역보고서를 참고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건물보상비는 그 지역의 평균적인 건물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1가구 당 200㎡(60평) 기준, 연립 및 아파트의 경우 1가구 당 100㎡(30평)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토지매수비는 토지형태별로 대표적인 평균 실거래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표 15]와 같다.

[표 15] 지역별 제1종 구역 내 토지형태별 지가/㎡

(단위: 원)

비행장	전	답	임야	기타
서산	52,000	45,000	39,000	185,000
광주	150,000	120,000	44,000	100,000
충주	-	-	-	-
사천	100,000	90,000	20,000	300,000
대구	290,000	260,000	50,000	1,700,000
강릉	120,000	130,000	23,000	210,000
수원	350,000	360,000	50,000	1,500,000
청주	110,000	120,000	50,000	455,000
성남	250,000	260,000	40,000	280,000
원주	23,000	22,000	11,000	110,000
예천	24,000	28,000	12,000	120,000
연천다락대	30,000	24,000	10,000	-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pp. 61~62.

나. 대상 구역 내 시설 수와 토지 면적

제1종과 제2종 구역 내 형태별 건물 수와 토지면적은 [표 16]과 같다. 제1종 구역의 건물 수는 4,130개소, 면적은 12km²이고, 제2종 구역의 건물 수는 6,696개소이며, 면적은 17km²가 된다.

[표 16] 소음·진동 대책구역 내 건물 및 토지 면적 현황: 2007년 기준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94웨클)	
	건물 수(개소)	토지 면적(km ²)	건물 수(개소)	토지 면적(km ²)
공군비행장	4,130	12	6,696	17
육군비행장	-	-	-	-
해군비행장	-	-	-	-
합 계	4,130	12	6,696	17

주: 23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현황임.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재구성.

다. 이전 보상 및 토지 매수 비용

위의 보상기준과 소음·진동대책구역 내의 건물 수와 토지 면적으로 추정된 이전보상 및 토지매입 소요 비용은 [표 17]과 같다. 제1종 구역은 6조 1,052억원이며, 제2종 구역은 11조 1,722억원이다. 따라서 제1종과 제2종 구역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17조 2,774억원으로 전망된다(세부 비행장 별 내역은 [참고표 1] 참조).

[표 17] 제1종 및 제2종 구역의 이전 보상 및 토지매수비 소요: 2007년 기준
(단위: 백만원)

	제1종(95 이상)	제2종(90~94)	합계
공군비행장	6,105,209	11,172,165	17,277,374
육군비행장	0	74	74
해군비행장	0	0	0
총비용	6,105,209	11,172,239	17,277,448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재구성(p. 226)

그런데 이는 2007년도 기준 소요액이다. 따라서 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13년도로 환산하면 총 20조 6,595억원(제1종 구역 7조 2,303억원, 제2종 구역 13조 4,292억원)이 된다.

그런데 이를 단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다. 따라서 추계기간인 5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2013년도 소요액을 5년으로 나누어 연간 소요액 4조 1,319억원(20조 6,595억원/5년)을 구한 다음, 이후 연도의 소요액은 이에 소비자 물가 전망을 곱하면 될 것이다. 그 결과 [표 18]과 같이 2013년부터 5년간 21조 9,4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8] 이전 보상 및 토지 매수 비용 소요액: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제1종 구역	1,446,072	1,492,346	1,535,624	1,580,158	1,625,982	7,680,182
제2종 구역	2,685,836	2,771,783	2,852,165	2,934,877	3,019,989	14,264,650
합 계	4,131,908	4,264,129	4,387,789	4,515,035	4,645,971	21,944,832

주: 소비자 물가 전망은 2013년 3.2%, 2014년 이후 2.9%(국회예산정책처,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2010.11, p.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토지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비용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와 실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실비는 여비와 물건조사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실비는 출장일수와 토지의 필지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감정평가액에 수수료 요율

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동 기준에 따르면 1조원이 넘는 감정평가액의 경우 수수료 요율 기준은 [표 19]와 같으며, 상한의 경우 기준요율×1.1이다.

본 추계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표 18]에 있는 건물이전 보상 및 토지매수 비용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비용에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을 곱하면 감정평가 관련 비용은 [표 20]과 같이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9] 감정평가수수료 기준: 2011년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	기준요율	상한
1조원 초과	(1만분의 1)×0.9	1만분의 1	(1만분의 1)×1.1

자료: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

[표 20] 감정평가 비용 소요액: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건물 및 토지매입 비용	4,131,908	4,264,129	4,387,789	4,515,035	4,645,971	-
감정평가 비용	454	469	483	497	511	2,414

주: 감정평가 비용= 건물 및 토지 매수비용×(1만분의 1)×1.1

10.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안 제29조)

제정안은 소음·진동 대책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의 전기·수도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감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요금 등에서의 감면금액을 해당 회사에서 손실로 흡수할 수도 있겠지만, 본 추계에서는 국

가가 그 금액만큼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감면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국민 1인당 전기·수도 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국민 1인당 전기·수도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은 [표 21]과 같다. 한편 소음·진동대책구역 내의 거주민 수는 [표 22]와 같다. 따라서 이 둘을 이용하여 소음·진동대책구역 내의 주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추정하면 [표 23]과 같다. 그런데 이 금액들은 산출기준연도가 다르므로 이를 감안하고, 이에 각 요금별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표 24])을 곱하여 2013년도 이후를 추정하면 [표 25]와 같다.

제정안은 감면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결과 추가재정소요는 [표 26]과 같이 2013년부터 5년간 7,62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21] 국민 1인당 전기·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기요금(2009년 기준)	수도요금(200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676,404원/년	61,104원/년	357,180원/년

자료: 1.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2009 한국전력통계」, 2010.5.
 2. 수도요금: 통계청, 상수도 급수현황과 수도요금 현황, 2008.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11.3.1

[표 22] 소음·진동 대책구역 내 주민 수 현황: 2007년 기준

	제3종 구역				합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85~89	80~84	
소음도(웨클)	95 이상	90~94	85~89	80~84	
주민 수(명)	10,058	18,874	110,477	220,681	360,090

주: 실제 소음 측정된 23개 비행장 주변의 소음 대책 구역 별 주민 수임.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의 자료 재구성.

[표 23] 전기·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추정액

(단위: 백만원)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합계
	95이상	90~94	85~89	80~84	85~89	80~84	
소음도(웨클)	95이상	90~94	85~89	80~84			
전기요금(2009년 기준)	6,803	12,766	74,727	149,269			243,565
수도요금(2008년 기준)	614	1,153	6,750	13,484			22,001
국민건강보험료(2010년 기준)	3,592	6,741	39,460	78,822			128,615
합 계	11,009	20,660	120,937	241,575			394,1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4] 최근 5년간 전기·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평균 증가율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전기요금 (판매단가 인상률)	-0.1	-0.1	2.7	1.8	1.2	6.1	-	2.34
수도요금 (평균단가 인상률)	3.3	2.3	2.5	4.6	0.9	-	-	2.72
국민건강보험료 (1인당 보험료 인상률)	10.7	6.2	9.1	13.6	13.3	2.9	7.8	9.34

주: '-'는 자료 없음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세부자료는 [참고표 4]를 참조)

[표 25] 전기·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전망: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전기요금	266,757	272,893	279,169	285,590	292,159	1,396,568
수도요금	25,135	25,814	26,511	27,227	27,962	132,649
국민건강보험료	167,939	183,557	200,628	219,286	239,680	1,011,090
합 계	459,831	482,264	506,308	532,103	559,801	2,540,3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6] 전기·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30% 감면 시 재정소요액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전기수도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전망(a)	459,831	482,264	506,308	532,103	559,801	-
30% 감면액(a×0.3)	137,949	144,679	151,892	159,630	167,940	762,0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소음진동대책위원회(안 제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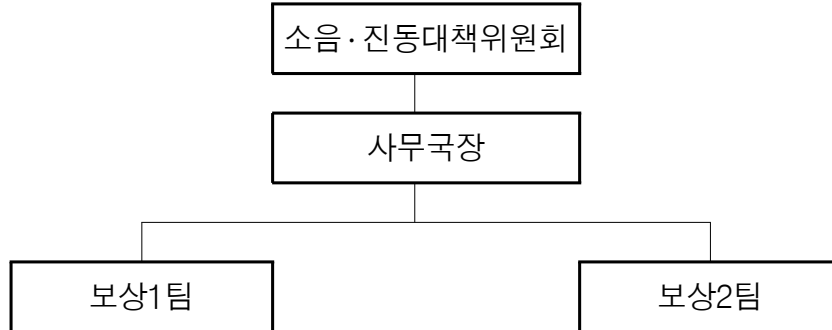
제정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진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에 따른 비용은 회의비와 자료인쇄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경비에 포함시켜 추계하기로 한다.

한편 위원회의 업무로는 소음·진동대책구역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피해와 관련된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소음·진동피해의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정안은 소음 피해 대책으로 제1종 및 제2종 구역 내의 건물이전과 토지매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조사와 건물이전 보상 및 토지 매수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사무국 규모

소음·진동 피해 조사 및 보상 등의 업무를 감안하여, 사무국 조직을 추정해보면 [그림 1] 및 [표 27]과 같이 사무국장과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소요인원은 총 12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사무국 조직(가상)



[표 27] 사무국의 업무 및 인원

부서	업무	인원
사무국장	사무국 업무 총괄	2명(고위공무원 1, 사무원 1)
보상 1팀	소음·진동대책업무 기획, 소음·진동피해와 관련된 민원 조사 및 보상, 인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5명(4급 1, 5급 1, 6급 1, 8급 2)
보상 2팀	소음·진동 피해지역 조사, 건물 및 토지 보상	5명(4급 1, 5급 1, 6급 1, 8급 2)
	합 계	12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소요비용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비와 자산취득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인건비

인건비는 연간 보수와 법정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연간보수는 월봉급에 각종 수당을 합하여 계산하며, 각종 수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기준에 따라 12명에 대한 보수 소요액을 산정

한 결과, 2011년도 기준으로 [표 28]과 같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건비 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2013년도부터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한편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은 연간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일정비율(9.3%)⁷⁾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그 결과 보수와 법정부담금을 합한 사무국 직원 인건비 소요액은 [표 30]과 같다.

[표 28] 사무국 직원 연간 보수액 소요: 2011년 기준

(단위: 천원)

	월 봉급	연 보수액(A)	인원(B)(명)	인건비 소요액(A×B)
국장(고위공무원단 나급)	6,554	92,804	1	92,804
팀장(4급 연봉제)	5,217	73,246	2	146,492
5급	2,766	60,741	2	121,482
6급	2,213	50,190	2	100,380
8급	1,625	39,585	4	158,340
기능 10급	1,798	44,230	1	44,230
계	-	-	12	663,728

- 주: 1. 월 봉급은 행정안전부 기준임(『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p. 98).
 2. 연보수액은 ‘월 봉급×12개월×각종 수당 계산 비율’로 계산함. ‘각종 수당 계산 비율’은 정근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실지급액 추정 계수로서, 3급 연봉제 1.18, 4급 연봉제 1.17, 5급 1.83, 6급은 1.89, 8급은 2.03, 10급은 2.05를 적용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1.1, p. 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9] 연도별 보수 소요액: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금액	762	816	874	936	1,002	4,390

- 주: 인건비 상승률은 2011년 7.2%, 2012년 이후 7.1%(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 전망』, 2008.4, p. 3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1.1, p. 27.

[표 30] 사무국 직원 인건비 소요액: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보수 소요액(a)	762	816	874	936	1,002	4,390
법정부담금(b = a×0.093)	70	76	81	87	93	407
인건비(a+b)	832	892	955	1,023	1,095	4,7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기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장 조사 여비, 자료 인쇄비, 회의비 등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60.3%)⁸⁾을 이용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그 결과 기본 경비 소요액은 [표 31]과 같다.

[표 31] 기본경비 소요액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인건비(a)	832	892	955	1,023	1,095	4,797
기본경비(a×60.3%)	502	538	576	617	660	2,8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사무 공간 임차비

위원회는 서울 도심권에 위치하며, 사무 공간은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무 공간 소요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기준 정보를 이용하기로 하며, 이 경우 직원 1인당 38m⁹⁾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사무

8)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1.1, p. 13.

9) 전계서

국 인원 12명에 적용하면 필요한 사무공간은 456㎡가 된다.

그리고 사무 공간 임차 단가는 서울 도심권의 경우 월 33,736원/㎡ (2011.2월)¹⁰⁾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적용하여 사무 공간 임차비용을 계산하면 연 1억 8,460만원(456㎡×33,736원×12월)이 된다. 이에 소비자 물가 전망을 적용하여 2013년 이후 연도별로 추정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사무 공간 임차비: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금액	195	202	207	214	219	1,037

(4) 자산 취득비

자산 취득비는 전산장비와 사무집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이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2010년도 기준, 1인당 평균 자산 취득비는 588만 2,000원¹¹⁾이다. 이에 소비자 물가 전망을 적용하여, 2013년도로 환산하면 678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요인력 12명에 이를 곱하면, 자산 취득비는 8,136만원(12명×678만원)이 된다. 동 비용은 자산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취득연도인 2013년도 한 해만 반영하기로 한다.

다. 사무국 운영비용 추계 결과

사무국 운영비용은 위에서 본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을 합하면 될 것이다. 그 결과 [표 33]과 같이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88억 8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10) 사무실 임대료 조사 기관인 에스아이피엠(SIPM: Strategy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의 2011.2월 자료 기준임. 빌딩임차료에는 임차보증금의 연 이차비용과 연 관리비를 포함하여 환산한 금액임.

11)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1.1, p. 13.

[표 33] 사무국 운영비용 추계 결과: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인건비	832	892	955	1,023	1,095	4,797
기본경비	502	538	576	617	660	2,893
사무 공간 임차비	195	202	207	214	219	1,037
자산 취득비	81	-	-	-	-	81
합 계	1,610	1,632	1,738	1,854	1,974	8,8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제정안에 따라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진동 피해 대책으로 건물 이전 보상과 토지 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표 34]와 같이 2013년도 4조 8,39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25조 6,91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34]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안 제6조 (소음·진동대책구역의 지정)		1,950	-	-	-	-	1,950
안 제8조 (소음·진동 대책구역에 대한 사후조사)		-	-	-	1,950	-	1,950
안 제10조 (자동 소음 측정망의 설치)		8,905	1,560	1,560	1,560	1,560	15,145
안 제18조 (방음시설의 설치)		535,000	552,100	568,100	584,600	601,600	2,841,400
안 제20조(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안 제28조(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21,200	21,800	22,500	23,100	23,800	112,400
안 제22조 (건물 등의 이전보상),안 23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 1 종 구역	1,446,072	1,492,346	1,535,624	1,580,158	1,625,982	7,680,182
	제 2 종 구역	2,685,836	2,771,783	2,852,165	2,934,877	3,019,989	14,264,650
안 제25조(감정평가 등의 비용부담)		454	469	483	497	511	2,414
안 제29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137,949	144,679	151,892	159,630	167,940	762,090
안 제30조와 안 제32조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1,610	1,632	1,738	1,854	1,974	8,808
합 계		4,838,976	4,986,369	5,134,062	5,288,226	5,443,356	25,690,989

주: 1. 방음시설의 설치, 건물이전 보상과 토지매입 관련 비용은 소요액을 5년간으로 등분하고, 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곱하여 계산한 것임.

2.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30% 감면해줄 경우 소요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I. 참고자료

[참고표 1] 공군비행장 별 소음시설 및 토지매수 비용

(단위: 백만원)

비행장	소음대책	소음도(웨클)					계
		95 이상	90~95	85~89	80~84	75~79	
서산	소음시설비용	-	-	4,074	26,978	25,179	56,231
	토지매입비용	122,098	225,813	-	-	-	347,911
	계	122,098	225,813	4,074	26,978	25,179	404,142
광주	소음시설	-	170	508	15,595	20,230	36,503
	토지매입	160,420	225,400	-	-	-	385,820
	계	160,420	225,570	508	15,595	20,230	422,323
충주	소음시설	-	-	3,740	11,016	13,477	28,233
	토지매입	-	-	-	-	-	0
	계	-	-	3,740	11,016	13,477	28,233
사천	소음시설	-	-	7,172	13,923	28,705	49,800
	토지매입	35,830	77,466	-	-	-	113,296
	계	35,830	77,466	7,172	13,923	28,705	163,096
대구	소음시설	-	-	119,816	201,940	249,176	570,932
	토지매입	1,276,954	4,402,153	-	-	-	5,679,107
	계	1,276,954	4,402,153	119,816	201,940	249,176	6,250,039
강릉	소음시설	-	-	29,985	58,166	86,648	174,799
	토지매입	362,950	479,003	-	-	-	841,953
	계	362,950	479,003	29,985	58,166	86,648	1,016,752
수원	소음시설	-	-	43,384	101,769	136,580	281,733
	토지매입	3,360,820	4,818,458	-	-	-	8,179,278
	계	3,360,820	4,818,458	43,384	101,769	136,580	8,461,011
청주	소음시설	-	-	33,397	76,385	87,179	196,961
	토지매입	710,485	812,268	-	-	-	1,522,753
	계	710,485	812,268	33,397	76,385	87,179	1,719,714
성남	소음시설	-	-	-	3,800	12,640	16,440
	토지매입	31,701	57,293	-	-	-	88,994
	계	31,701	57,293	0	3,800	12,640	105,434
원주	소음시설	-	-	701	6,502	9,473	16,676
	토지매입	10,635	16,672	-	-	-	27,307
	계	10,635	16,672	701	6,502	9,473	43,983
예천	소음시설	-	-	5,643	11,100	21,069	37,812
	토지매입	33,316	57,469	-	-	-	90,785
	계	33,316	57,469	5,643	11,100	21,069	128,597
청원	소음시설	-	-	2,634	6,285	25,297	34,216
	토지매입	-	-	-	-	-	0
	계	-	-	2,634	6,285	25,297	34,216
합 계		6,105,209	11,172,165	251,054	533,459	715,653	18,777,540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pp. 219~220.

[참고표 2] 육군비행장 별 소음시설 및 토지매수 비용

(단위: 백만원)

비행장	소음대책	소음도(웨클)					계
		95 이상	90-95	85-90	80-85	75-80	
논산	소음시설	-	-	5,209	4,945	15,145	25,299
	토지매입	-	-	-	-	-	0
	계	-	-	5,209	4,945	15,145	25,299
덕소	소음시설	-	-	10,127	61,433	11,537	83,097
	토지매입	-	-	-	-	-	0
	계	-	-	10,127	61,433	11,537	83,097
부천	소음시설	-	-	-	4,491	24,979	29,470
	토지매입	-	-	-	-	-	0
	계	-	-	-	4,491	24,979	29,470
용인	소음시설	-	-	-	-	21,721	21,721
	토지매입	-	-	-	-	-	0
	계	-	-	-	-	21,721	21,721
이천	소음시설	-	22	55	1,144	5,097	6,318
	토지매입	-	4	-	-	-	4
	계	-	26	55	1,144	5,097	6,322
조치원	소음시설	-	-	825	1,320	2,211	4,356
	토지매입	-	-	-	-	-	0
	계	-	-	825	1,320	2,211	4,356
하남	소음시설	-	-	110	110	539	759
	토지매입	-	-	-	-	-	0
	계	-	-	110	110	539	759
현리	소음시설	-	-	-	-	1,127	1,127
	토지매입	-	-	-	-	-	0
	계	-	-	-	-	1,127	1,127
수색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포천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양주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양구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비행장	소음대책	소음도(웨클)					계
		95 이상	90-95	85-90	80-85	75-80	
양양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전주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파주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가평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포천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양평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춘천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화천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홍천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연기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영천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음성	소음시설	-	3	2,041	9,180	10,295	21,518
	토지매입	-	-	-	-	-	0
	계	-	3	2,041	9,180	10,295	21,518
합계		0	74	48,982	220,323	247,076	516,439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pp. 222~224.

[참고표 3] 해군비행장 별 소음시설 및 토지매수 비용

(단위: 백만원)

비행장	소음대책	소음도(웨클)					계
		95 이상	90-95	85-90	80-85	75-80	
진해	소음시설	-	-	21,378	18,378	32,378	39,756
	토지매입	-	-	-	-	-	0
	계	-	-	21,378	18,378	32,378	39,756
포항	소음시설	-	-	13,807	19,647	33,831	33,454
	토지매입	-	-	-	-	-	0
	계	-	-	13,807	19,647	33,831	33,454
폭포	소음시설	-	-	17,593	19,013	33,105	69,710
	토지매입	-	-	-	-	-	0
	계	-	-	17,593	19,013	33,105	69,710
합계		0	0	52,778	57,038	99,314	209,130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p. 225.

[참고표 4] 최근 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보험료(억원)	137,409	156,142	169,277	188,106	217,287	249,730	261,661	284,577
- 직장	91,684	108,283	121,209	138,975	163,485	190,297	202,377	220,831
- 지역	45,725	47,859	48,068	49,141	53,802	59,434	59,284	63,746
세대당 월보험료(원)	43,978	47,787	50,080	53,773	59,278	66,217	66,916	70,989
- 직장	44,581	49,675	52,956	57,092	62,430	69,169	70,250	73,399
- 지역	43,390	45,818	46,871	49,688	55,054	61,982	61,902	67,168
1인당 월보험료(원)	16,248	17,985	19,104	20,851	23,690	26,837	27,620	29,765
- 직장	15,727	17,752	18,999	20,713	23,449	26,304	27,049	28,659
- 지역	16,807	18,256	19,237	21,050	24,065	27,736	28,652	31,899

주: 1인당 월 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참고표 5] 최근 6년간 수도요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부과액(백만원)	2,392,369	2,551,291	2,681,523	2,737,604	2,814,978	2,855,712
급수인구(천명)	43,633	44,187	44,671	45,270	46,057	46,733
평균단가(원)	532.9	550.7	563.2	577.3	603.9	609.3

자료: 통계청,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참고표 6] 최근 7년간 전기요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판매수입 (백만원)	21,925,576	23,276,653	24,752,637	26,652,703	28,695,989	30,328,758	32,975,019
판매단가(원)	74.68	74.58	74.46	76.43	77.85	78.76	83.59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9」

조직법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설치)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5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5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
(한국환경보건진흥원 설립)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가정법원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가사·소년·가정보호 등의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사·소년·가정보호 등의 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관할 구역 이외의 도시에도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본 추계에서는 우선 개정안에 따라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을 신설할 지역의 가사·소년·가정보호 등의 사건 수를 기준으로, 신설 법원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규모에 따라 향후 소요될 인건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은 기존의 가정법원 등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산하였다. 법원청사 건축비는 예상 규모에 따라 신축대상과 증축대상으로 나누고 증축인 경우에는 정부의 공사단가 등을 참고한 건축비만을, 신축인 경우에는 건축비에 예정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추산하였다.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을 신설할 경우 5년간 약 5,236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설치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고등법원이 소재한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개정안은 지방법원 및 지원이 설치된 모든 지역에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개정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법원 9개소 및 가정지원 38개소가 추가로 신설될 것이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2) 관할사건 수 및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가정법원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지원은 현재의 지방법원을 증축하여 청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정법원은 2013년과 2014년 2년간 부지매입 및 청사 건축을 완료하고, 가정지원은 2013년에 증축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직원 충원 등 운영은 공사완료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0년 2.9%, 2011년 4.1%, 2012년 3.2%, 2013년 3.1%, 2014년 2.9%, 2015년 이후 3.1%를 적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4).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을 신설할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표 1]과 같이 향후 5년간 약 5,236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인건비	-	25,336	40,243	41,490	42,777	149,846
자산취득비	-	3,876	2,168	-	-	6,044
운영비	-	8,000	12,707	13,102	13,508	47,317
청사 신·증축비	275,354	45,071	-	-	-	320,425
합 계	275,354	82,283	55,118	54,592	56,285	523,632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개정안은 지방법원 및 지원이 설치된 지역에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법원신설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그리고 청사 신축 또는 증축비용이다. 다만 판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개정안 통과 후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개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해당 판사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법원직원들의 인건비로 한정한다.

< 비용 추계 방법 >

$$\text{총 비용} = \text{인건비} + \text{자산취득비} + \text{운영비} + \text{청사공사비}$$

2. 신설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의 규모 추정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4개 기관은 법률 개정(2011.4.5)으로 가정지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승격되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 및 당시 가정지원이었던 4개 기관의 2010년도 기준 사건수 및 관할 인구수와 법원 직원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의 규모는 대체로 관할 사건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먼저 서울가정법원 등 5개 기관의 관할 사건수와 인구수를 검토하여 직원 1인당 평균 관할 사건수를 추정한 후, 각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지방법원 및 지원의 2010년도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 수를 바탕으로 신설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의 규모를 추정하도록 하겠다.

2010년 기준, 서울가정법원 및 당시 가정지원이었던 4개 기관의 사건 수와 직원수는 [표 2]와 같다. 따라서 직원 1인당 사건 수는 약 267건(84,683건/317명)으로 도출된다.

[표 2] 2010년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직원수 및 사건수

(단위: 명, 건)

	직원수	사건수
서울가정법원	167	41,283
대전가정지원	30	7,080
대구가정지원	39	11,853
부산가정지원	51	15,735
광주가정지원	30	8,732
계	317	84,683

주: 사건수에는 가사(본안·조정·비송·신청), 소년, 가정보호 사건수가 모두 포함되었음
 자료: 법원행정처

2010년 기준, 가정법원·가정지원·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내 가사사건(소년, 가정보호 사건 포함) 총 수에 위에서 도출한 직원 1인당 267건을 적용하면, 신설 가정법원 규모는 [표 3]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표 3] 신설 가정법원 규모 추정

(단위: 건, 명)

	2010년 관할 사건 수	직원 수(추정)
수원가정법원	13,278	50
인천가정법원	12,349	46
의정부가정법원	7,707	29
창원가정법원	6,784	25
전주가정법원	3,883	15
청주가정법원	3,652	14
울산가정법원	3,550	13
제주가정법원	2,606	10
춘천가정법원	2,436	9

신설 가정지원의 규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신설 가정지원 규모 추정

(단위: 건, 명)

	2010년 관할 사건 수	직원 수(추정)
성남지원	3,656	14
안산지원	3,773	14
고양지원	3,243	12
부천지원	2,711	10
순천지원	2,611	10
안양지원	2,292	9
천안지원	2,009	8
군산지원	1,594	6
진주지원	1,564	6
평택지원	1,534	6
포항지원	1,298	5
목포지원	1,395	5
여주지원	1,019	4
강릉지원	1,053	4
원주지원	1,010	4
홍성지원	953	4
김천지원	1,138	4
통영지원	1,171	4
서산지원	891	3
충주지원	825	3
안동지원	689	3
경주지원	808	3
정읍지원	684	3
속초지원	539	2
영월지원	456	2
공주지원	473	2
논산지원	661	2
제천지원	506	2
상주지원	538	2
밀양지원	437	2
해남지원	573	2
영동지원	293	1
의성지원	295	1
영덕지원	292	1

	2010년 관할 사건 수	직원 수(추정)
거창지원	394	1
장흥지원	285	1
남원지원	370	1
마산지원	0	0

주: 마산지원은 2011년 3월에 개소하였으므로 2010년 관할 사건 실적이 존재하지 않음

추정결과에 따르면 춘천가정법원과 지원관할구역의 연간 사건 수가 대부분 2,000건 미만이어서 추정 직원 수가 10인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서 가사사건,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을 별도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행정 및 민원접수 인력 등을 포함하여 판사를 제외하고 최소 10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표 3]과 [표 4]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추정 직원수가 10인 미만인 기관은 모두 10인의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규모는 가정법원 212인, 가정지원 390인, 총 602인으로 예상된다.¹⁾

3. 인건비

인건비는 2010년도 가정법원 및 당시 가정지원의 인건비 집행액을 참고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0년 서울가정법원 및 당시 가정지원 4개소의 인건비 총액은 18,097백만원이고 총 직원 수는 317인이므로,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약 5,700만원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적용하여 가정법원 신설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하면 12,084백만원(212인 × 5,700만원)이 된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가정지원 신설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하면 22,230백만원(390인 × 5,700만원)이 된다.

1) [표 3]의 춘천가정법원과 [표 4]의 안양지원 등 지원 35개소는 모두 10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각 [표 3], [표 4]와 동일함.

가정법원은 2015년부터 직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가정지원은 2014년부터 직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물가상승 전망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정법원 신설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추정 : 2014~2017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인건비	가정법원	-	14,172	14,611	15,064	43,847
	가정지원	25,336	26,071	26,879	27,713	105,999
합 계		25,336	40,243	41,490	42,777	149,846

4.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추계는 가장 최근에(2009년) 신축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기준으로 한다. 2009년 당시 안양지원 자산취득비 총액은 11억 2,600만원이고 당시 직원수는 129명이었으므로, 안양지원 1인당 자산취득비는 약 872만원으로 도출된다.

안양지원 신축 당시 자산취득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일괄투입될 가정법원과 가정지원의 자산취득비는 [표 6]과 같이 추정된다.

[표 6]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신설에 따른 총 자산취득비 소요액 추정

안양지원 1인당 자산취득비 (2009년)	증원인력		자산취득비 소요액		
	가정법원	가정지원	2014년(가정지원)	2015년(가정법원)	합계
872만원	212명	390명	3,876백만원	2,168백만원	6,044백만원

주: 자산취득비 소요액 = 안양지원 1인당 자산취득비 × 직원수 × 소비자 물가 상승률

5. 운영비

운영비는 2010년도 당시 가정지원의 운영비 집행액을 참고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운영비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다. 2010년 당시 가정지원의 직원 1인당 평균 운영비 소요액은 약 18백만원이다. 이 금액을 적용하여 운영비 추가소요를 추정하면 가정법원에 대하여 3,816백만원(212인 × 18백만원), 가정지원에 대하여 7,020백만원(390인 × 18백만원)이 된다. 최초 가정에 따라, 가정법원은 신축공사를 마무리한 후인 2015년부터, 가정지원은 증축공사를 마무리 한 후인 2014년부터 운영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신설에 따른 운영비 추가소요액은 [표 7]과 같다.

[표 7] 운영비 추가소요 추정 : 2014~2017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운영비	가정법원	-	4,475	4,614	4,757	13,846
	가정지원	8,000	8,232	8,488	8,751	33,471
합 계		8,000	12,707	13,102	13,508	47,317

주: 1. 증원인력: 가정법원 212명, 가정지원 390명

2. 운영비 소요액 = 1인당 운영비 추정액 × 직원수 × 소비자 물가 상승률

6. 청사 신축 및 증축 비용

가. 가정법원: 신축공사

(1) 부지매입비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신축시 부지 면적은 지원의 경우 16,530㎡ (5,000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른 가정법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

원의 부지면적을 준용하기로 한다.

또한 부지매입단가는 개정안에 따른 신설 가정법원과 관할을 같이 하는 각 지방법원 소재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설 가정법원의 부지매입비를 추정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신설 가정법원 부지매입비 추정

지방법원	공시지가(1㎡당)(천원)	부지매입비 추정액(2013년)(백만원)
수원	1,110	18,348
인천	1,600	26,448
의정부	983	16,248
창원	692	11,438
전주	372	6,149
청주	1,080	17,852
울산	697	11,521
제주	1,150	19,009
춘천	354	5,851
합 계		132,864

주: 부지매입비 = 부지매입단가(지방법원 소재지 공시지가) × 16,530㎡

부지매입비는 입지나 매입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 가정법원의 부지매입비는 2013년에 약 132,864 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축비

청사 건축 비용은 순수 건축비와 설계비 등의 부대경비로 구분된다. 공사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3, 2/3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청사의 1인당 적정 면적은 평균 132.5㎡(40평)이다. 가정법원의 예상 인력증원 규모가 212명이므로, 가정법원 신축 대상이 되는 청사의 총 건평은 28,09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단가는 「2009

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분석(조달청, 2010.5)」에 따라 1㎡당 1,995천원을 적용하면²⁾, 가정법원의 순수 건축비는 2010년 기준으로 약 56,039백만원(1,995천원 × 28,090㎡)이 된다.

순수 건축비에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³⁾를 포함한 가정법원의 신축비는 [표 9]와 같다.

[표 9] 가정법원 신축비 : 2013~2014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합 계
순수건축비	20,649	42,579	63,228
부대경비 효율	5.853%	5.853%	-
합 계	21,857	45,071	66,928

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0년 기준 건축비 중 1/3은 2013년도 물가, 2/3은 2014년도 물가를 적용

나. 가정지원: 증축공사

법원을 신설하려면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보통이나, 개정안에 따른 가정지원의 경우에는 예상 증원 인력이 기관별로 각각 10명 내외에 불과하여 부지매입 없이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청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청사의 1인당 적정 면적은 평균 132.5㎡(40평)이다. 가정지원의 인력증원 규모가 390명이므로, 증축공사대상이 되는 총 건평은 51,675㎡가 될 것이다. 공사단가는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1㎡당 1,995천원을 적용하면, 가정지원의 순수 건축비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03,091백만원(1,995천원 × 51,675㎡)이 된다.

순수 건축비에 부대경비를 포함한 가정지원의 증축비는 [표 10]와 같다.

2) 총 공사비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부대시설의 공사에 필요한 직접공사비와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3) 건축비에 대한 부대경비[설계비(4.651%), 감리비(0.972%), 부대비용(0.23%), 총 5.853%]의 효율은 「2012 예산안작성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1. 5)」을 참고 하였음.

[표 10] 가정지원 증축비 : 2013년

(단위: 백만원)

	2013
순수건축비	113,963
부대경비 요율	5.853%
합 계	120,633

7.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을 신설할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표11]과 같이 향후 5년간 약 5,236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인건비	-	25,336	40,243	41,490	42,777	149,846
자산취득비	-	3,876	2,168	-	-	6,044
운영비	-	8,000	12,707	13,102	13,508	47,317
청사 신·증축비	275,354	45,071	-	-	-	320,425
합 계	275,354	82,283	55,118	54,592	56,285	523,632

주: 백만 단위 미만은 반올림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국제 인삼거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삼사업의 국제화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인삼산업의 시장 조사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개선과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①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②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③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④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제공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센터가 수행할 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안 제20조의2제2항(수출 및 국제화 촉진)이 규정한 사업을 국제인삼유통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고 동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추계하지 아니한다.

추계결과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2012년 21억 3,1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01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운영(안 제20조의2제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개선과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수출 및 국제화 촉진(안 제20조의2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①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②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③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④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제공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안 제20조의2제1항은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센터가 수행할 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안 제20조의2제2항(수출 및 국제화 촉진)이 규정한 사업을 국제인삼유통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고 동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추계하지 아니한다.

(2)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2012년 21억 3,1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01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인건비	952	1,020	1,093	1,171	1,254	5,490
운영비	209	224	240	258	276	1,207
임차비	290	300	311	322	333	1,556
사업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자산취득비	380	-	-	-	-	380
합 계	2,131	1,844	1,944	2,051	2,163	10,133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안 제20조의2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개선과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고, 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제3항)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①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②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③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④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제공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규정한 사업을 유통센터의 업무로 보고, 유통센터의 조직 및 인원을 가상적으로 구성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이 3개 팀 총 1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2] 국제인삼유통센터 업무 및 인력 분장

조직	업무	총원	구성원
센터장	• 유통센터 업무총괄	2	선임연구위원 1인, 연구보조원 1인
정보지원팀	•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 인삼산업 관련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3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2인
사업지원팀	•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제공 • 인삼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	3	”
연구개발팀	•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연구	3	”
합 계	-	11	-

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자산취득비, 임차비, 사업비 등이 소요된다. 첫째, 인건비는 유사한 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0년도 직급별 인건비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인건비 단가는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유통센터 11인에 대한 총 인건비는 2012년의 경우 9억 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 전망」에 따라 인건비 상승률¹⁾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54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제인삼유통센터 인건비 단가: 2012년 예상

(단위: 천원)

구 분	단가	월	인원	계
선임연구위원	9,006	12	1	108,072
책임연구원(박사)	8,658	12	3	311,688
연구원(석사)	6,661	12	6	479,592
연구보조원(학사)	4,423	12	1	53,076
계	-	-	11	952,428

[표 4] 국제인삼유통센터 인건비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인건비	952	1,020	1,093	1,171	1,254	5,490

둘째, 경상운영비는 유통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운영비로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에 따르면 정책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는 인건비의 22% 수준이므로 해당 비율을 적용한다. 경상운영비는

1) 인건비 상승률 2011년 7.2%, 2012년 이후 7.1%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 전망』 2008, p. 323).

2012년 2억 9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2억 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5] 국제인삼유통센터 경상운영비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경상운영비	209	224	240	258	276	1,207

셋째, 임차비의 경우 사무실이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기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유통센터와 유사한 기관인 교육기관의 평균사무공간이 1인당 약 115.61m²인 것을 고려하면 유통센터의 사무공간은 약 1,272m²(11*115.61m²)로 추정된다. 2006년의 경기지역 소형 사무실 임차료가 3.3m²당(1평) 월 임차비 50,928원이므로 2006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3,600만원(1,272m²×15,433원×12개월)이 된다.²⁾ 여기에 임차비 상승률 연 3.5%³⁾를 적용하면 2012년 사무실 임차비는 2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5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6] 국제인삼유통센터 임차비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임차비	290	300	311	322	333	1,556

2) 평당 임차비(임차보증금의 연 이자비용과 연 관리비를 포함한 것임)는 (주)SAMS의 Office Market Report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3) 연 3.5% 인상률은 최근 3년간의 환산임차료 값(서울지역, 11월 기준으로 2006년 28,723원/m², 2007년 29,645원/m², 2008년 31,375원/m², 2009년 31,980원/m²)을 이용하여 산출한 값이다.

넷째, 사업비는 인삼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개최지원 1억원(2회*5,000만원), 해외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2억원(2회*1억원)이다. 안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 및 국제화촉진사업을 실시할 경우 2012년 3억원이 소요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국제인삼유통센터 사업비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사업비	300	300	300	300	300	1,500

다섯째, 자산취득비는 유통센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용품, 기타 물품 등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에 따르면 정책연구기관의 평균 자산취득비가 2,900만원(2006년 기준)이므로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12년 1인당 3,46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통센터 구성원(11명) 전체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취득한 자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012년 한해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종합하면 개정안에 따라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2012년 21억 3,1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01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인건비	952	1,020	1,093	1,171	1,254	5,490
운영비	209	224	240	258	276	1,207
임차비	290	300	311	322	333	1,556
사업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자산취득비	380	-	-	-	-	380
합 계	2,131	1,844	1,944	2,051	2,163	10,133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영세한 중소기업 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중소기업 납품업자의 사업영역과 적정한 납품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정수반요인은 중소기업 납품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납품업의 정보, 상담 및 기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재정소요이다.

본 추계에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현재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여 유사한 실태조사의 예산을 준용하였는데, 중소기업 납품업체수는 5만개, 종사자수는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바,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실태조사의 경우 업체수 3만개, 종사자수 9만명으로 예산액은 1억원(2009년 기준)이 소요된 바, 본 추계에서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와 유사한 1억원을 실태조사 예산으로 예측하였다.

중소기업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에 중앙센터 1개와 지역별센터 13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중소기업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신설되는 조직으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설치·운영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 경기, 광주, 전남의 2009 회계년도 인건비와 사무실면적을 참고하여 비용을 산출하기로 한다.

이 때 중앙센터는 센터장 1인 포함 13인의 규모로 가정하며, 13개 지역별 센터는 2013년부터 4개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 7개, 2015년 10개, 2016년 13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이

때 1개의 지역센터는 센터장 1인 포함 총 7인 규모로 가정하였다.

추계결과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에 1개, 지역센터를 연도별로 13개 까지 확대하는 경우 2012년 13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01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안 제7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안 제8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정보, 상담 및 기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앙에 1개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서,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안 제7조)를 2년마다 실시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안 제8조)를 서울에 1개, 지역센터를 연도별로 13개까지 확대하는 경우 2012년 13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0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실태조사 (안 제7조)	1	-	1	-	1	3
종합지원센터 (안 제8조)	12.49	38.64	57.99	81.26	107.44	297.82
소요 비용	13.49	38.64	58.99	81.26	108.44	300.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현황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산업용재, 공구시장)의 시장규모는 약 3조원 정도이고 5만여 업체에서 종사자 수는 2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표 2] 산업용재,공구 중소유통업체 현황

(단위: 개, 명)

	중소업체수	종사자수
기계공구	9,000	45,000
베어링	1,200	6,000
기타 산업용재(안전, 철물 등)	40,000	150,000
합 계	50,200	201,000

자료: 의원실 제공, 2010.10.

2. 소모성 자재대행업(MRO) 현황

국내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¹⁾은 1999년부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시작하여 6조원 규모로 매년 30~40%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추세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MRO 잠재용품 시장은 21조원으로 추정) 주요

1) MRO는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의 약자로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간접자재를 말하며, MRO 사업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B2B 사업으로 기업 구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MRO자재(사무용품, 공장용품, 유지보수자재)를 구매에서 부터 관리까지 대행해 주고 있음

취급품목은 아래 [표 3]과 같이 사무용품, 공구, 청소용품, 기계부품, 전기부품, 포장재, 건설자재, 전산소모품 등이다.

[표 3] MRO 자재의 종류

		내용	상품
공장 용품	부자재	생산용 보조자재	테이프, 튜브, 약품, 밴드, 포장용 박스 등
	유지용	정기교체, 수시 구매자재	기계부품, 페인트, 밸브, 스위치, 윤활유 등
	보수용	즉시 조달자재	기계부품, Gasket, 패스트너, 베어링 등
OA, 사무용품		정기구매 사무용품	사무기구, 컴퓨터장비, 사무용품 등

자료: 의원실 제공, 2010.10.

MRO업체는 과거 IMF 외환위기에 따른 원가절감을 위해 대기업 그룹사 납품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1·2차 협력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IMF 이후 진출한 상위 6개사가 전체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3. 재정수반요인

가. 실태조사(안 제7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는 [참고표 1] 중소기업청 실태조사 현황(통계청 승인 실태조사 대상)을 참고하여 유사한 실태조사의 예산을 준용하도록 한다.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수는 5만개, 종사자수는 20만명으로 추정되며, 유사한 조사로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업체수 3만개, 종사자수 9만명)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와 유사하게 1억원을 실태조사 예산으로 가정한다.

[표 4]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소요비용 추계: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실태조사	100	-	100	-	100	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나.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안 제8조)

(1) 규모

제정안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상담, 협의, 조정 및 기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에 중앙센터 1개와 지역별센터 13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중앙센터는 센터장 1인 및 총 3개팀, 총무기획팀(4명), 정보지원팀(4명), 마케팅지원팀(4명)으로 구성되어 총 13명의 인원규모이며, 13개 지역별 센터는 각각 센터장 1인과 총무기획(3명), 정보상담(3명)으로 총 7명 규모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중앙센터는 2012년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별센터는 중소기업체의 수요에 따라 기능 및 운영인력을 확충하되, 2013년도에 4개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 7개, 2015년 10개, 2016년 13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자산취득비,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제정안에서 신설되는 조직으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설치·운영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중 경기, 광주, 전남의 2009 회계년도 인건비와 사무실면적²⁾을 참고하여 비용을 산출하기로 한다. 이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인건비 단가와 1인당 사무실면적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단지 인원 규모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2) 경기, 광주,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2009회계연도 인건비 및 사무실 면적

[그림 1]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조직도(가상)

		조직	총원
중앙 센터	서울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4명), 정보지원팀(4명), 마케팅지원팀(4명)	13
지역 센터	부산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인천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광주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대전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울산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경기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강원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충북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충남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경북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전북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전남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제주	센터장(1인), 총무기획팀(3명), 정보지원팀(3명)	7
합 계			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경기	광주	전남	평균
인원(명)	97	11	6	
인건비(백만원)	5093	477	168	
1인당 인건비(백만원)	52.51	43.36	28.00	41.29
1인당 사무실 면적(m ²)		28.52	46.36	37.44

자료: 경기, 광주,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0.10.

(2) 인건비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의 인건비는 기존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 경기(광주 52백만원), 광주(43백만원), 전남(28백만원)의 2009년 인건비를 평균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다. 2009년 연평균 인건비는 4,129만원이고, 2010년도 기획재정부의 임금상승률 0.5%를 감안하여 2010년의 인건비로 환산하면 4,150만원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1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5.1%를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NABO 인건비 상승률³⁾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 직원 13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2012년 6억 700만원이고 향후 5년간 총 인건비는 34억 9,900만원이다.

[표 5] 연도별 인건비 소요액: 2012~2016년

(단위: 명,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인력수	13	13	13	13	13	
1인당 인건비	47	50	54	57	61	
소요 비용	607	650	697	746	799	3,4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경상운영비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의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율은 50%를 적용하도록 한다. 아래의 [표 6]은 인건비 소요액에 운영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연도별 운영비 소요액으로서 2012년 운영비는 3억 400만원이 될 것이고 향후 5년간 17억 4,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인건비 상승률 2011년 7.2%, 2012년 이후 7.1%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 2008, p. 323).

[표 6] 연도별 운영비 소요액: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운영비	304	325	348	373	399	1,7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임차비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는 신축하지 않고 기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존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 광주, 전남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을 평균한 값인 37.44m²를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직원 13인 규모의 중앙센터의 사무공간은 약 487m²(13×37.44m²)로 추정된다. 2006년의 서울기타지역 소형 사무실 임차료가 3.3m²당(1평) 월 임차비 59,512원⁴⁾이므로 2006년 기준으로 연간 1억 500만원(487m²×18,002원×12월)이 된다. 여기에 임차비 상승률 연 2.6%⁵⁾를 적용하면 2012년 사무공간 임차비는 1억 2,300만원이 되고 향후 5년간 총 6억 4,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연도별 임차비 소요액: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임차비	123	126	129	132	136	6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2006, p.152 참조

5) 최근 5년간의 월임대료 추이(천원/m²)

2006.1분기	2007.1분기	2008.1분기	2009.1분기	2010.1분기	연평균상승률
13.9	14.3	14.9	15.1	15.4	2.6%

자료: 국토해양부, 2010.7., 2010년 2/4분기 임대사례 조사/투자수익률 분석결과

(5) 자산취득비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용품, 기타물품 등 각종 자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센터와 유사한 상담 정보센터⁶⁾의 2006년 평균 자산취득비 1,423만원을 적용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2년 1인당 1,66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기계지원센터 구성원 13명의 자산취득비는 약 2억 1,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취득한 자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취득연도인 2012년 한 해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중앙센터 재정소요액

제정안 제8조에 따라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자산취득비, 임차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표 8]은 중앙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소요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서 2012년 12억 4,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5년간 61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인건비	607	650	697	746	799	3,499
운영비	304	325	348	373	399	1,749
임차비	123	126	129	132	136	646
자산취득비	216	-	-	-	-	216
소요 비용	1,249	1,101	1,174	1,251	1,334	6,110

주: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6)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2006, p.135 참조

라. 지역센터 재정소요액

13개 지역별 센터는 2013년부터 4개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 7개, 2015년 10개, 2016년 13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1개의 지역센터는 센터장 1인 포함 총 7명 규모로서 다음과 같이 2013년 5억 7,1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26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9]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역센터 1개 설치시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인원수 (A)		7	7	7	7	
1인당 인건비 (B)	47	50	54	57	61	
인건비 (C=A*B)		350	375	402	430	1,557
운영비 (C*50%)		175	188	201	215	779
임차비		46	47	48	49	190
자산취득비		120	-	-	-	120
소요 비용		571	609	651	695	2,6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아래 [표 10]는 지역별 센터가 연도별로 2016년까지 13개로 확대되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2013년 27억 6,300만원, 향후 5년간 236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역센터 13개 설치시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개소	-	4	7	10	13	
인건비	-	1,401	2,625	4,017	5,592	13,635
운영비	-	700	1,313	2,008	2,796	6,818
임차비	-	183	328	481	641	1,633
자산취득비	-	479	359	369	379	1,586
소요 비용	-	2,763	4,625	6,875	9,409	23,6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합 계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센터 1개와 지역별 센터 13개 총 14개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2012년 12억 4,900만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297억 8,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11]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시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중앙센터 (1개)	1,249	1,101	1,174	1,251	1,334	6,110
지역센터 (13개)	-	2,763	4,625	6,875	9,409	23,672
추가 재정소요	1,249	3,864	5,799	8,126	10,743	29,7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안 제7조)를 2년마다 실시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안 제8조)를 서울에 1개, 지역센터를 연도별로 13개까지 확대하는 경우 2012년 13억 4,9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00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실태조사 (안 제7조)	1	-	1	-	1	3
종합지원센터 (안 제8조)	12.49	38.64	57.99	81.26	107.44	297.82
추가 재정소요	13.49	38.64	58.99	81.26	108.44	300.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I. 참고자료

[참고표 1] 중소기업청 실태조사 현황(통계청 승인 실태조사 대상)

조사명	시작년도	작성주기	최근조사	전체(모집단) 사업체수	전체(모집단) 조사자수	조사대상수(표본수)	용역비용 (백만원)	위탁기관
중소기업실 태조사	1967년	1년	2010년	조사자 5~299인 규모 중소제조업체 111,060개 조사자 5~299인 규모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체 17,872개	2,072,217명(추정) (현재 조사결과 취합중) 275,623명(추정) (현재 조사결과 취합중)	8,000개 2,000개	500	중소기업 중앙회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1999년	1년	2010년	09년말 기준 벤처확인 기업 18,893개사	약 517천명(추정)	2,000개	180	벤처기업협회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07년	2년	2009년	32,027개	91,917명(추정)	2,020개	100	(재)장애인 기업종합지원 센터
전국소상공 인실태조사	2007년	3년	2010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도소매, 음식, 숙박 등) 혹은 10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소상공인 사업체 2,273,964개 ① 임차인 : 국내 모든 임차사업장 2,447,218개 ② 임대사업자 :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체 4,972개 ③ 중개업자 : 1년 이상 중사, 비주거용 건물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74,394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도소매, 음식, 숙박 등) 혹은 10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소상공인 3,305,020명 ① 임차인 : 국내 모든 임차사업장 15,217,892명 ② 임대사업자 :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 4,972명 ③ 중개업자 : 1년 이상 중사, 비주거용 건물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74,394명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도소매, 음식, 숙박 등) /10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10,069개 6,892개 (임차인 6,006개, 임대사업자 382개, 중개업자 504개)	340	소상공인 진흥원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2002년	5년	2008년				4.5	전국 61개 소상공인지원 센터 활용

자료: 중소기업청, 2010.1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분야의 조사·연구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국가환경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보건 취약지역의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오염 피해지역 역학조사 등 단편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설치목적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환경보건 교육·홍보 등 총괄적인 환경보건분야의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출연으로 지원하고자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진흥원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에 관한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제시(안 제26조 제4항)한 진흥원의 수행사업 대부분은 이미 환경부 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되고 있고 진흥원 설립 후에는 진흥원에서 통합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액만큼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추계에서는 첫째 인건비 산출을 위해 조직규모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인건비는 신규 조직임을 감안하여 유사한 기능과 규모를 가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건비 단가의 9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이렇게 추계된 총인건비에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인건비를 상계한 후 연도별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5년간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을 산출하였다. 둘째, 관리운영비는 사무실임차료,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과 ‘2011 2/4분기 오피스·매장용 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결과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산출하였다. 셋째, 사업비의 경우 진흥원이 추진할 사업 중 이미 추진되고 있는 기존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환경보건진흥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2013년 124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2013-2017) 총 672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한국환경보건진흥원 설립

동 개정안은 환경보건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건 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확대를 위하여 (가칭)‘한국환경보건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2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 제26조(한국환경보건진흥원)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는 진흥원의 소요인원 및 소관사업 범위와 관련된 환경부(환경보건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개정안이 제시(안 제26조제4항)한 진흥원의 수행사업 대부분은 이미 환경부 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되고 있어, 진흥원 설립 후 진흥원에서 통합 추진될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2013~2017년간 이들 기존 사업의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나, 이러한 비용증가가 동 개정안의 직접적 효과가 아니기에 기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은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한다. 즉, 여기에서 추가재정소요는 2013년부터 진흥원에서 신규로 추진될 사업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에 한정한다.

(4) 진흥원의 설립에 따라 인건비 지출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데,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추진되는 환경보건사업 일부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 이를 상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즉, 2013~2017년간 전체 인건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에서 기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신규 재정소요로 간주한다.

(5)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경우, 2013년 124억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7년에는 145억원에 이르는 등 5년간(2013~2017년) 672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안 제26조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124	129	134	140	145	672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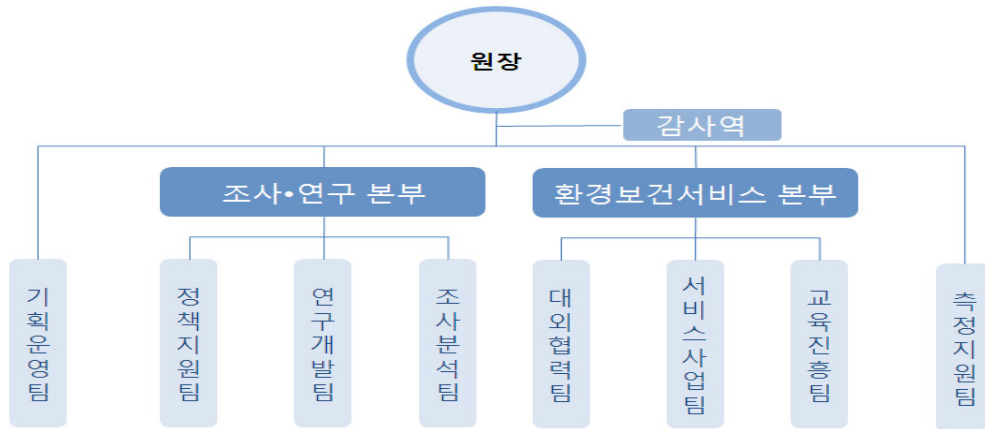
1. 추계의 대상 및 내용

개정안은 진흥원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에 관한 추가재정소요 파악이 필요하다.

가. 인건비 지원

개정안 제26조 특히 제26조제4항에 근거하여 설립될 진흥원 규모를 환경부는 원장을 비롯하여 2본부 8개 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예상하고 있다.1)

[그림 1] 환경보건진흥원 예상조직도



1) 조직구성 및 임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연구본부는 환경보건장기종합계획 수립지원, 환경보건분야 R&D 기획, 평가 및 관리, 그리고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위하여 정책지원팀, 연구개발팀, 조사분석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 또한, 환경보건서비스 본부는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친환경건강도우미사업, 홍보·교육자료 및 환경성 질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팀, 서비스사업팀, 교육진흥팀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상. 이 밖에도 진흥원 주요 업무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위한 기획운영팀과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 등을 위한 측정지원팀 등의 구성을 예상.(환경부, 2011. 9)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원은 원장 등 임원직 3명을 포함한 정규직 38명과 전문계약직 등 비정규직 18명으로 총 56명으로 계획할 수 있다.2)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 규모를 환경부 산하기관 중 개정안에 의해 설립이 예상되는 진흥원과 유사한 규모를 갖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2011년 현재 기준으로 28억 2,200만원이 산정된다.3)

[표 2] 인건비 소요 예산 추정치(2011년 기준)

(단위: 명, 천원)

	인원(A)	단가(B)	인건비(A×B)
수석연구원(임원)	3	95,832	287,496
책임연구원	4	76,980	307,920
선임연구원	8	58,742	469,936
연구원	20	44,136	882,720
전문계약직	12	46,839	562,068
위촉직	6	44,136	264,816
연구지원 인턴	3	15,652	46,956
계	56	-	2,821,912

2011년 인건비 소요 예산 추정치를 바탕으로, 연도별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2013~2017년간 인건비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보면, 2013년에는 32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9억원에 이르러 5년간 총 17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난다.4)

2) 환경부 협의와 더불어 환경부 산하기관 중 사업대상은 다르지만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력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임.

3) 진흥원은 신규로 설립되는 조직임을 감안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금단가의 90%를 적용

4) 인건비 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2011),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이 제시한 연도별 임금상승률을 적용함.

[표 3] 진흥원 인건비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총 인건비 재정소요	3,170	3,343	3,531	3,729	3,938	17,712

하지만, 2011년 현재 환경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보건센터에 일용임금 예산 1억 9,800만원과 위탁사업 인건비 5억 8,700만원이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역무대행사업 인건비 5억 4,200만원 등 총 13억 2,700만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어, 진흥원 설립 시 인건비로 상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재정소요는 총 인건비 재정소요에서 기존 인건비 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2013~2017년간 인건비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보면, 2013년에 1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26억원 등 5년간 총 11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표 4] 개정안에 따른 진흥원 인건비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총 인건비 재정소요(A)	3,170	3,343	3,531	3,729	3,938	17,712
기존 인건비(B)	1,327	1,327	1,327	1,327	1,327	6,635
인건비 추가 재정소요(A-B)	1,843	2,016	2,204	2,402	2,611	11,077

나. 관리운영비 지원

개정안 제26조에 따른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은 사무실 임차료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운영비 등의 관리운영비 추가 재정소요를 동반한다. 2011년

기준으로 사무실 임차료, 자산취득비, 운영비를 산출하면 각각 1억 2,200만원, 1억 7,100만원, 2억 3,900만원으로 총 5억 3,200만원으로 나타난다.

[표 5] 관리운영비 소요 예산(2011년 기준)

(단위: 백만원)

	산출내역	소요예산
사무실 임차료	678m ² ¹⁾ x 15.1(천원) ²⁾ x 12(개월)	122
자산취득비	- ³⁾	171
운영비	추가인건비의 16% ⁴⁾	239
계	-	532

- 주 1) 사무실 임차료 산정 시 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참조 1인당 단위면적을 계산
 2) 임대료는 ‘2011 2/4분기 오피스·매장용 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보고서(국토해양부, 2011)’를 참조하여 계산하였는데, 진흥원의 설립 소재지가 미정이어서 전국 평균임대료를 적용.
 3) 자산취득비는 환경부의 ‘한국환경보건의진흥원 관련 소요예산 검토’(2011. 9) 자료를 참조
 4) 운영비는 신설 조직임을 감안하여 추가인건비(14억 9,400만원)의 16%를 적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운영비 기준 18%의 90% 적용).

2011년을 기준으로 한 관리운영비 소요예산액을 바탕으로 2013~2017년간 관리운영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여 보면, 2013년 5억 6,60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6억 3,800만원으로 5년간 30억 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⁵⁾

[표 6] 개정안에 따른 진흥원 관리운영비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관리운영비 추가 재정소요	566	582	601	619	638	3,006

- 5) 연도별 사무실 임대료 증감률을 예측하기 어렵고 더욱이 자산취득비의 경우 초기에는 자산구입비가 많이 요구되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구입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여기에선 전체 관리운영비 소요예산에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산함.

다. 진흥원 사업비 지원

개정안 제26조제4항은 진흥원 소관사업으로 (1) 환경보건분야 조사·연구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의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3)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사업, (4) 환경보건센터 총괄 조정·지원, (5)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사업, (6) 환경보건기술, 환경보건정책 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DB구축, (7) 대국민 환경보건 교육·홍보, (8) 그 밖에 환경보건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현재 다수의 기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환경보건분야 R&D’와 ‘정보관리시스템구축’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표 7] 환경보건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 존 사 업	환경보건정책 수립지원	883
	친환경건강도우미사업	500
	환경보건 조사연구	2,00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1,400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	700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	250
	라돈저감사업	250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관리	1,20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위해성관리	500
	어린이용품 제조업자 자가관리계획 수립지원	200
	어린이포털사이트 운영 및 웹진 발간	200
소 계	8,083	
신 규 사 업	환경보건분야 R&D 추진	8,000
	정보시스템구축 및 교육·홍보	2,000
	소 계	10,000

자료: 환경부(2011. 9)

개정안에 따라 진흥원이 설립되면, 현재 추진 중이거나 2013년부터 신규로 추진될 환경보전사업은 동 진흥원에서 통합 추진될 것이므로, 2013~2017년 간 진흥원의 사업비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기존사업비를 제외한 신규사업 사업비 재정소요 추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진흥원 사업비 추가 재정소요는 100억원이고 2017년에는 113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2013~2017년간 총 사업비 추가 재정소요는 53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표 8] 개정안에 따른 진흥원 사업비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사업비 추가 재정소요	10,000	10,290	10,609	10,938	11,277	53,114

주: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비 추산

2.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진흥원을 설치·운영할 경우, 2013년 124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145억원 등 향후 5년간 672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인건비	1,843	2,016	2,204	2,402	2,611	11,077
관리운영비	566	582	601	619	638	3,006
사업비	10,000	10,290	10,609	10,938	11,277	53,114
추가 재정소요	12,409	12,888	13,414	13,959	14,526	67,197

사업법안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33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 배치)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9
(어도 추가 설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61
(영아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3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운영비 지원)
-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287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서교사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지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도서관 교육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액은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또는 순회사서교사)를 배치할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에서 현재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각 학교별로 1인의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학교에 1명의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 수는 순회 사서교사제도는 실시 사례가 없으므로 보건교사의 학교별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학교 수 대비 34.6%로 가정한다.

또한 신규충원에 따른 소요기간,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 동안 매년 전체 사서교사의 20%씩 충원하고, 현재 근무 중인 4,391명의 비정규직 사서직원은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사서교사의 인건비는 2012년 교사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건비 예산액 전망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사서교사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액은 2012년 723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1조 2,669억원으로 예상된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 배치

개정안 제12조제2항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서교사 등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배치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학교에 1인 이상의 사서교사를 둘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1개 학교에 1인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개정안의 단서조항에서 순회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일정규모 이하인 학교는 여러 학교에 1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다.

(2)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2012년부터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서교사의 배치는 신규충원에 따른 소요기간, 국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순차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법안시행 5년에 걸쳐 매년 20%씩 배치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경우 2012년 723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1조 2,6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안 제12조제2항	723	1,533	2,435	3,435	4,543	12,669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의 개요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액은,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또는 순회사서교사)가 배정될 때의 총 인건비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사서교사의 총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현재 비정규 사서직원이 채용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비용 추계 방법 >

$$\begin{aligned} \text{※ 재정 소요액} &= \text{개정 시 사서교사 총 인건비} - \text{현행 제도 유지 시 사서교사 총 인건비} \\ &= \{(\text{총 사서교사 수} \times \text{사서교사 1인당 연간 인건비}) \\ &\quad + (\text{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수} \times \text{사서교사와 비정규 사서직원의 인건비 차이})\} \\ &\quad - (\text{현행제도 유지 시 예상 사서교사 수} \times \text{사서교사 1인당 연간 인건비}) \end{aligned}$$

2. 현행 제도 하에서의 사서교사 수 추정

현재 「한국도서관진흥법」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서교사는 정책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치되고 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서 교사의 배치현황은 [표 2]와 같다.

사서교사 총원은 사서수급현황, 학교정책 등에 따라 일정한 추세 없이 매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해본 결과 2011년도 사서교사 총원계획은 없다고 하며 현행법 하에서는 사서교사를 배치할 의무나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인원인 5,150명이 추계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표 2] 사서교사 등의 수: 2002~2010년

(단위: 명)

	전담인력			
	사서교사	사서직원		계
		정규직	비정규직	
2002	164	20	880	1,064
2003	232	39	1,135	1,406
2004	284	46	1,685	2,015
2005	313	57	1,881	2,251
2006	424	60	2,716	3,200
2007	537	62	2,552	3,151
2008	625	55	2,858	3,538
2009	699	34	4,281	5,014
2010	724	35	4,391	5,150

주: 정규 사서직원은 사서직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학교도서관으로 배치된 자임. 법 제12조제 2항의 ‘사서교사 등’에는 사서교사와 정규직 사서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3.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 수

가. 학교도서관 수 추정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의 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사서교사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도서관 수를 추정한다.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1)에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8.4%로 거의 100%에 가깝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학교 수

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설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곧 학교도서관 수가 된다.

향후 학교수는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육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4]의 지난 10년간 학교 수 현황을 보면, 2006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07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낮은 출생률로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 수 있으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거나 지역을 개발하는 등 신규학교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2010년 증가율(약 0.6%)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향후 5년간의 예측에 이를 반영하여 학교수를 추정하면 [표 4]와 같다.

[표 3] 초·중·고등학교 수 현황: 2000~2010년

(단위: 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총계(A)	전년대비 증감(B)	증감율 (B/A)
2000	5,267	2,731	1,957	170	10,125		
2001	5,322	2,770	1,969	176	10,237	112	1.1
2002	5,384	2,809	1,995	177	10,365	128	1.2
2003	5,463	2,850	2,031	177	10,521	156	1.4
2004	5,541	2,888	2,080	175	10,684	163	1.5
2005	5,646	2,935	2,095	176	10,852	168	1.5
2006	5,733	2,999	2,144	175	11,051	199	1.8
2007	5,756	3,032	2,159	176	11,123	72	0.6
2008	5,813	3,077	2,190	182	11,262	139	1.2
2009	5,829	3,106	2,225	183	11,343	81	0.7
2010	5,854	3,130	2,253	170	11,407	64	0.6

주: 1. 분교는 제외함.

2.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중,고)가 포함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함.

자료: 교육통계시스템(<http://cesi.kedi.re.kr/index.jsp>)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표 4] 초·중·고등학교(도서관) 수 추정: 2012~2016년

(단위: 개)

	2012	2013	2014	2015	2016
초·중·고등학교 수	11,544	11,614	11,683	11,753	11,8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순회교사를 고려한 신규사서교사 수요 추정

모든 학교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를 둔다면 학교도서관 수가 곧 총 사서교사 수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작은 학교에도 사서교사 1명을 두는 것은, 재정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 정원을 산정할 때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학생수가 1,500명이상, 즉 전담사서교사가 배치될 학교의 비율이 전체학교의 2~10%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90~98%의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사서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모든 학교에 1명의 사서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기준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미 5,000여명 정도의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

[표 5] 2010년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

(단위: 개)

	100명 이하	100~300명	300~600명	600~1000명 ¹⁾	1000~1500명	1500명 이상	계	1500명 이상 학교비율 (%)
초등학교	1,678	721	861	1,327	1,053	214	5,854	3.65
중학교	626	379	421	1105	536	63	3,130	2.01
고등학교	115	273	379	587	652	247	2,253	10.96
계	2,419	1,373	1,661	3,019	2,241	524	11,237	5.54

주: 1)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600~1050명임.

자료: 교육통계시스템의 자료(<http://cesi.kedi.re.kr/index.jsp>)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 2)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 ③ 이하 생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존재하는 시행령 기준은 개별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할 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순회사서교사제도는 실시 사례가 없으므로 비슷한 규정이 존재하는 보건교사 사례를 참조하겠다.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³⁾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배치 기준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등학교는 9학급이다.

[표 6] 보건교사 사례기준으로 분류한 학교 수 (2010년)

(단위: 개)

	기준학급 미만	기준학급 이상	계	기준학급 미만인 학교 비율(%)
초등학교	2,757	3,097	5,854	47.09
중학교	908	2,222	3,130	29.00
고등학교	223	2,030	2,253	9.89
계/평균	3,888	7,349	11,237	34.6

주: 기준학급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등학교는 9학급임.

자료: 교육통계시스템 자료(<http://cesi.kedi.re.kr/index.jsp>)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보건교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순회사서교사를 배정할 학교가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나, 사서교사는 보건교사와 달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학생수 기준보다 현실적이므로 이 기준을 사용하기로 한다.

3)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보건교사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마다 기준학급 수 미만인 학교수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경우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총 학교수 대비 기준학급 미만인 학교수가 34.6%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순회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교수는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다르게 배치될 수 있으나 학교도서관 활성화란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사서교사가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순회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수는 최대 5개로 한정한다.

그런데 규모가 큰 경우(예를 들어 17학급인 초등학교의 경우)는 작은 경우(5학급 미만인 학교)보다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1명의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는 크고 작은 규모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 수는 5개보다 작을 것이다. 여기서는 평균 3개로 가정한다. 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서교사 수요를 추정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 수요: 2012~2016년

(단위: 명)

	예상 학교수(A)	순회사서교사 배치학교수 ($B=A \times 0.346$)	전담사서교사배치학교수 ($C=A-B$)	사서교사 수요 ($D=C+B/3$)
2012	11,544	3,994	7,550	8,881
2013	11,614	4,018	7,596	8,935
2014	11,683	4,042	7,641	8,988
2015	11,753	4,067	7,686	9,042
2016	11,824	4,091	7,733	9,0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8] 개정안에 따른 총원 대상자 추정: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서교사 수요 (A)	8,881	8,935	8,988	9,042	9,097
현행법상 예측치 (B)	5,150	5,150	5,150	5,150	5,150
총원목표인원 (A-B)	3,731	3,785	3,838	3,892	3,9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서교사의 수가 5,150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총원인원은 사서교사의 수요에서 5,150명을 뺀 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인력의 공급, 재정을 고려할 때 2012년에 3천명이 넘는 사람을 한번에 선발·배치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본 추계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89명(2012, 2013년은 790명)씩 균등하게 총원하여 2016년에 목표인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9] 사서교사 등의 연도별 총원 인원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총원인원	790	790	789	789	789	3,947
누적인원	790	1,580	2,369	3,158	3,94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비정규 사서직원의 정규직 전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서직원 등’에는 비정규 사서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채용된 4,391명의 비정규 인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본다.⁴⁾ 다만, 재정부담 등을

4)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도 입법자의 의도는 비정규 사서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정규 사서직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에는 비정규 사서직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고려할 때 일시에 모든 인원을 전환할 수 없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매년 1,098명(2016년에만 1,097명)씩 점진적으로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고 본다.

[표 10]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의 구성 변화: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서교사 등	759	1,857	2,955	4,053	5,150
비정규 사서직원	4,391	3,293	2,195	1,097	0
계	5,150	5,150	5,150	5,150	5,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규 총원인원과 비정규 사서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모두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사서교사 등의 인원수 변화추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인원수 변화 추정: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서교사 등(정규)	1,549	3,437	5,324	7,211	9,097
- 현재 정규사서교사	759	759	759	759	759
- 총원인원(누적)	790	1,580	2,369	3,158	3,947
- 정규직전환인원(누적)	0	1,098	2,196	3,294	4,391
비정규 사서직원	4,391	3,293	2,195	1,097	0
계	5,940	6,730	7,519	8,308	9,0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총원에 따른 보수 및 인건비성 경비

위에서 구한 필요사서교사수에 1인당 인건비를 곱하면 추가재정소요를 도출할 수 있다. 교사(공무원연금기여금기호, 7C3)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평균 3,709,380원이므로 연봉은 약 4,451만원이다. 정규 사서직원은 학

교도서관 담당자 비율이 낮고 공무원 신분이므로 신규교사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건비 예산액 전망을 참고하여 사서교사의 인건비가 신규교사의 연간 보수 상승률 7.1%⁵⁾라 한다. 동일호봉 기본급 상승률은 각 연도별 소비자물가전망치⁶⁾를 적용한다. 이 때 사서교사 등의 인건비는 [표 12]와 같다.

[표 12] 신규 총원수와 사서교사 1인당 소요 인건비

(단위: 명, 천원)

	총원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년 임용자	790	45,667	48,909	52,382	56,101	60,084
2013년 임용자	790	-	46,991	50,328	53,901	57,728
2014년 임용자	789	-	-	48,307	51,737	55,410
2015년 임용자	789	-	-	-	49,660	53,185
2016년 임용자	789	-	-	-	-	51,050

주: 2012년 인건비 44,510천원에 매년 7.1%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비정규 사서직원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원액의 기준 및 액수가 다르게 나타난다(Ⅲ. 참고자료 참조). 지원하고 있는 시·도의 1일 기준액 평균은 46,796만원이다.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년 근무일수는 약 270일⁷⁾이므로, 연봉은 약 1,263만원이다. 매년 비정규(계약직) 사서직원 1,09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비정규 직원의 지원액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비정규 사서직원의 경우 보수 상승은 쉽지 않으므로 1,263만원이 추계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이를 반영한 정규 사서교사 등과 비정규 사서직원의 인건비 차이는 [표 13]과 같다.

- 5) 인건비 상승률은 2012년 이후 7.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 전망」, 2008.4, p. 323)
- 6) 중기 소비자 물가 전망 2011년 2.7%, 2012년에 2.6%, 2013년에 2.9%, 2014년 이후에는 2.8% 적용(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0.5., p. 71)
- 7) 1년은 365일(52주)이다. 주 5일제 근무나 격주로 토요일은 나올 경우 총 78일을 쉬고, 16일은 국경일이다. 방학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하여 방학에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따로 휴가는 주지 않는다고 보면 271일(=365-78-16)이다.

[표 13] 정규직전환자 수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건비 차이

(단위 : 명, 천원)

	전환자 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년 전환자	1,098	33,032	36,274	39,747	43,466	47,449
2013년 전환자	1,098	-	34,356	37,693	41,266	45,093
2014년 전환자	1,098	-	-	35,672	39,102	42,775
2015년 전환자	1,098	-	-	-	37,025	40,550
2016년 전환자	1,097	-	-	-	-	38,415

주: 사서교사 1인당 인건비에서 비정규 사서직원 인건비(1,263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표 12]에서 신규임용자 수에 각 연도마다 다르게 산출된 1인당 인건비를 곱하면 신규 사서교사의 채용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도출된다. 그리고 [표 13]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인건비 차이만큼을 곱하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을 구한다. 신규 사서교사의 채용비용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합한 금액이 곧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의 총액이다. 이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경우 2012년 723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1조 2,6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한다.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안 제12조제2항	723	1,533	2,435	3,435	4,543	12,6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I. 참고자료

[참고표 1] 사서교사 및 사서직원 현황

(단위: 명, 원)

	사서교사 등 (정규직) 인원	사서교사(비정규직)	
		인원	교육청 지원기준 ¹⁾
서울시	223	757	13,866,000(260일 기준, 일 53,330 원)
경기도	97	1,364	21,000,000(일 57,534 원)
부산광역시	55	401	16,589,000(일 45,449 원)
대구광역시	28	348	12,300,000(10달 기준, 일 41,000 원)
인천광역시	31	126	17,222,100(일 47,180 원)
광주광역시	25	247	학교운영비에서 지출
대전광역시	22	147	학교운영비에서 지출
울산광역시	17	11	²⁾
강원도	25	293	12,750,000(일 34,931 원) ³⁾
경상북도	59	139	일 49,430 원 ⁴⁾
경상남도	44	122	21,000,000(일 57,534 원)
전라북도	35	65	22,076,000(일 60,482 원)
전라남도	35	17	학교운영비에서 지출 ⁵⁾
충청북도	22	168	일 20,700 원
충청남도	30	174	일 47,180 원 ⁶⁾
제주도	11	12	학교운영비에서 지출
합 계	759	4,391	

주: 1. 비정규직자료가 없는 시·도는 학교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거나, 학부모도우미 등을 활용함.

2. 울산광역시의 경우 한시적으로 시범학교 운영(일 지급단가 42,290 원)하였으나, 2011년 도에는 계획이 없음.

3. 강원도의 경우 시 지원액은 85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함.

4. 경상북도의 경우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차액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함.

5. 전라남도에서는 1명당 8~30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사서제도(월 급여 150만원)를 시행한 바 있음.

6. 충청남도의 금액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일 42,290원이 지급됨.

자료: 사서교사 수는 교육과학기술부, 비정규직 임금은 각 시·도 교육청에 전화를 통해 취합한 자료임.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취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도의 설치·관리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어도종합관리계획, 시·도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어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뿐 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또한, 어도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2개년은 시스템 신규 구축, 3개년 이후는 시스템정착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실태조사에 기초한 자료 갱신을 하여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개정안은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어도 중 파손 또는 훼손된 어도를 연차적으로 개수·보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고,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어도를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2016년까지 전국 어도 설치율을 25%(8,503개소)로 하고, 추가 설치하는 어도는 3,422개소로 하여 매년 684개소의 어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추계결과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어도를 사후관리하며, 어도를 추가 설치할 경우 2012년 347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8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9조의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도종합관리계획, 시·도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어도관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나.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안 제19조의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 어도의 사후관리(안 제19조의6)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어도를 설치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 어도의 추가 설치(안 제19조의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서,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어도를 사후관리하며, 어도를 추가 설치할 경우 2012년 347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8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실태조사 실시 (안 제19조의4)	5	5	5	5	6	26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제19조의5)	10	5	2	2	2	21
어도의 사후관리 (안 제19조의6)	31	32	32	33	34	162
어도의 추가 설치 (안 제19조의7)	301	310	319	329	340	1,599
합 계	347	352	358	369	382	1,808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실태조사의 실시

개정안 제19조의4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도종합 관리계획, 시도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어도관리계획에 각각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뿐 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비용추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2010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보 및 어도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전국의 보 및 어도 현황

(단위: 개, %)

	하천	보(A)	어도(B)	어도설치율 (B/A)
한강	877	6,995	1,302	18.6
금강	723	7,156	807	11.3
낙동강	1,170	12,350	1,605	13.0
영산강	337	2,459	492	20.0
섬진강	421	5,052	875	17.3
합 계	3,528	34,012	5,081	14.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실태조사 재정소요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및 여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활용한다. 2011년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월 임금은 각각 2,149,870원

및 1,437,110원이며, 한강을 비롯한 5대강 권역별로 연구원 1인씩 및 연구보조원 5인씩을 고용하여 매분기 5일의 현지 출장으로 실태조사를 담당하도록 하면 [표 3]과 같이 연간 3억 8,500만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¹⁾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20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어도 실태조사 전담인원 지원시 소요재정

(단위: 백만원)

	상세산식	계
연구원 임금	2,149,870원×1인×5권역×12월	129
연구보조원 임금	1,437,110원×5인×5권역×6월	216
국내여비	337,400원(4박5일)×6인×5권역×4회	40
합 계		385

주: 국내여비는 운임 8,700원, 일비 20,000원, 숙박비 30,000원, 식비 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표 4]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실태조사 실시	385	397	408	421	434	2,045

2.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개정안 제19조의5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9조의5제3

1)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3년 3.1%, 2014년 2.9%, 2015년 및 2016년 각각 3.1% 적용(국회에 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p. 47)

항은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비용추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2개년은 시스템 신규 구축, 3개년 이후는 시스템정착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실태조사에 기초한 자료 갱신을 하여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은 인프라 구축비 3억 2,700만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 17억 7,300만원 등 총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시 소요재정

(단위: 백만원)

	내역	구축·운영 연도	금액
인프라구축 비용	하드웨어(WEB, 서버 등) 구입 소프트웨어(운영프로그램, 백신, 보안 등) 구입	2012년	100 227
시스템 개발 비용	2억 7,700만원×2년	2012-2013년	544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억 7,766만원×3년	2012-2014년	533
시스템 운영 비용	1억 3,920만원×5년	2012-2016년	696
합계			2,1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표 6]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시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920	592	314	137	137	2,100

3. 어도의 사후관리

개정안 제19조의6제2항은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어도를 설치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비용추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어도 중 파손 또는 훼손된 어도를 연차적으로 개수·보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보는 34,012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어도는 5,08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설치된 어도의 30%인 1,524개소가 파손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향후 5년간 매년 305개소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개·보수하는 어도의 사업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11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를 적용한다. 어도²⁾ 1개에 대한 개·보수 비용은 2012년의 경우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어도 305개에 대한 개·보수 비용은 2012년의 경우 30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³⁾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162억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어도길이는 30m, 어도입구와 내부의 파손 등을 수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3)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2011) p. 47

[표 7] 어도 1개당 개·보수비 내역: 2012년 예상

(단위: 천원)

	금 액
재료비(A)	684
노무비(B)	5,258
경비(C)	1,658
공사비 소계(D=A+B+C)	7,600
일반관리비(E=D×5.2%)	395
이윤[F=(B+C+E)×15%]	1,096
공급가액(G=D+E+F)	9,091
부가가치세(H=G×10%)	909
합 계(G+H)	10,000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표 8] 어도 개·보수비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어도 개·보수비	3,050	3,144	3,235	3,336	3,439	16,204

4. 어도의 추가설치

개정안 제19조의7제2항은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에 따라 어도를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비용추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2016년까지 전국 어도 설치율을 25%(8,503개소)로 하고, 추가 설치하는 어도는 3,422개소로 하여 매년 684개소의 어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추가 설치하는 어도의 사업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11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를 적용한다. 2012년의 경우, 어도⁴⁾ 1개에 대한 추가 설치 비용은 4,400만원으로, 어도 684개에 대한 개·보수 비용은 300억 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⁵⁾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1,599억 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9] 어도 1개당 추가 설치비 내역: 2012년 예상

(단위: 천원)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어도블럭	너비(m)×높이(m) 3m×1.5m	70개	440	30,800
기초토목공사	-	1식	6,600	6,600
블럭설치공사	-	1식	6,600	6,600
합 계	-	-	-	44,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표 10] 어도 추가 설치시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어도 추가 설치	30,096	31,028	31,928	32,918	33,939	159,909

4) 기존 계단식 어도를 대상으로 산출

5)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2011) p. 47

5.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어도를 사후관리하며, 어도를 추가 설치할 경우 2012년 346억 4,6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808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실태조사 실시 (안 제19조의4)	500	515	530	546	562	2,653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19조의5)	1,000	500	200	200	200	2,100
어도의 사후관리 (안 제19조의6)	3,050	3,144	3,235	3,336	3,439	16,204
어도의 추가 설치 (안 제19조의7)	30,096	31,028	31,928	32,918	33,939	159,909
합 계	34,646	35,187	35,893	37,000	38,140	180,8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영아전담 보육교사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영아 시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법령은 영아보육기반을 확충하고 영아보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보육료 중 부모부담 보육료를 표준보육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차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보조의 기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기준으로 영아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가 커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준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조 기준에 상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본 추계는 기본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가 공립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수준으로 지원받되, 기존 기본보육료를 통하여 지원받는 인건비는 차감하여 지원받을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로 파악한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만0세~만2세의 영아 장래인구 추계치와 보육시설 이용률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산출한다. 둘째, 민간 어린이집 아동 수를 산출하고,

이들 중 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수를 추출하여 기본보육료 지원액을 산출함으로써, 기본보육료를 통한 영아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구한다. 셋째, 공립 어린이집 영아 교사의 1인당 인건비를 구한 다음,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를 차감하여, 인건비 지원·미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 차이를 구한다. 다섯째, 1인당 인건비 차이를 인건비 미지원 영아 보육교사 수에 곱하여 최종 추가 재정소요를 산출한다.

추계결과,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2~2016년간 매년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7조 5,577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영아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개정안은 기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되었던 인건비 지원대상을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확대하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도록 규정(안 제36조의2)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 지급 규정(안 제36조의3)의 경우, 2012년부터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교사 1인당 5만원씩 지급(2012년도 예산안 406억 6,200만원)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총 영아 수 대비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자 수 비중은 2010년 기준 만0세 67.4%, 만1세 69.7%, 만2세 67.1%이며, 동 비중은 추계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기본보육료 대비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비중은 80%로 가정한다.

(3) 추계기간 중 기본보육료 및 인건비 증가율은 3%로 가정한다.

(4) 추계기간은 2012~2016년의 5년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기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되었던 인건비 지원대상을 동법 제10조제3호·제5호·제7호에 규정된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확대하되, 동법 제10조제2호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2~2016년간 매년 1.5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7.6조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36조의2):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만0세	6,434	6,501	6,560	6,611	6,657	32,763
만1세	4,845	4,849	4,846	4,840	4,832	24,212
만2세	3,936	3,772	3,702	3,631	3,562	18,603
합 계	15,215	15,122	15,108	15,082	15,051	75,577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 방법

개정안은 기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되었던 인건비 지원대상을 동법 제10조제3호·제5호·제7호1)에 규정된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확대하되, 동법 제10조제2호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도록 규정(안 제36조의2)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기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하 “공립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영아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를 지원받는 반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이하 “민간 어린이집”이라 한다) 영아 보육교사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1인당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중 일정부분을 인건비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본 추계는 기본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가 공립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수준으로 지원받되, 기존 기본보육료를 통하여 지원받는 인건비는 차감하여 지원받을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로 파악한다. 구체적인 추계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만0세~만2세의 영아 장래인구 추계치와 보육시설 이

-
-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용률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산출한다. 둘째, 민간 어린이집 아동 수를 산출하고, 이들 중 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수를 추출하여 기본보육료 지원액을 산출함으로써, 기본보육료를 통한 영아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구한다. 셋째, 공립 어린이집 영아 교사의 1인당 인건비를 구한 다음,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를 차감하여, 인건비 지원·미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 차이를 구한다. 넷째, 1인당 인건비 차이를 인건비 미지원 영아 보육교사 수에 곱하여 최종 추가 재정소요를 산출한다. 구체적인 추계방식은 다음의 <비용추계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다.

〈 비용추계 산식 〉

$$\text{추가 재정소요} = \sum_{i=0}^2 \{ [\{ \text{영아 연령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연 보수총액}^1) \times \text{지원비율}(80\%^2) \} - \{ (\text{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액}^3) \times 0.8 \} \div \text{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 연령별 보육교사 수}^4 \} \times \text{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 연령별 보육교사 수} \times i$$

이 때, i 는 만0세~만2세의 영아 연령

1)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 연령별 보육교사 1인당 연 보수총액 =

$$\left[\sum_{r=1}^{30} (\text{교사 호봉}(1\sim 30\text{호봉})\text{별 월 지급액} \times 12 \times \text{호봉별 가중치}1) \right] \times \text{영아 연령별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비중}2)$$

* 호봉별 가중치 = 호봉별 보육교사 수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 인원 수

** 영아 연령별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비중 = 영아 연령별 인건비 미지원 보육교사 수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총 인원 수

2)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영아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를 지원받음

3) 영아 연령별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액 =

$$(\text{영아 연령별 인구 수} \times \text{보육시설 이용률}) \times \text{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민간 보육시설 아동 수 비중}(74\%) \times \text{영아 연령별 민간 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수 비중}^*(2010\text{년 기준}) \times \text{영아 연령별 월 기본 보육료} \times 12\text{월} \times \text{조정계수}(0.7)^{**}$$

* 영아 연령별 민간 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수 비중(2010년 기준)은 만0세 67.4%, 만1세 69.7%, 만2세 67.1%

** 조정계수(0.7)는 2010년 기본보육료 결산액을 감안한 계수임

4)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 연령별 보육교사 수는 2010년 영아 연령별 전담 보육교사 수를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수의 증가율을 적용

2.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1인당 연 보수총액

개정안은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공립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재정소요 산출 시 기존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와 공립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 차이를 산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추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한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는 영아 연령별로 상이하게 책정된 기본보육료²⁾ 중 일부를 인건비로 받는다.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가 기본보육료를 통하여 받는 인건비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 연령별 영아의 수를 추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추계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06)를 기초로, 추계기간 중 연령별 영아 수 증가율을 산출하였다. 그 다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상 연령별 영아 수(2010년말)를 기준으로 동 증가율을 적용하여 연령별 영아 수 추계치를 산출하였다.³⁾ 둘째, 앞에서 산출한 연령별 영아 수에 어린이집 이용률⁴⁾을 곱하여 연령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수를 산출한 다음, 총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비 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비중(74%)을 곱하여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별 영아 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별 영아 수 대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 연령별 영아 수 비중⁵⁾을 각각 곱하여 민간 어린이집

2) 민간 어린이집 영아는 보육료 이외에 기본보육료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2011년 현재 연령별 1인당 월 기본보육료는 만0세 36.1만원, 만1세 17.4만원, 만2세 11.5만원이다. 2012년 예산안에도 동 기본보육료 수준은 변함이 없다.

3) 이는 2006년에 작성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4) 추계기간 중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9년 보육시설 이용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령별 이용률 증가폭(만0세 2.1%p, 만1세 2.5%p, 만2세 1.6%p)을 적용하였다.

5) 2010년 기준 만0세 67.4%, 만1세 69.7%, 만2세 67.1%이며, 동 비중은 추계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영아 중 기본보육료 지원 영아 수를 연령별로 산출하였다([표 1] 참조). 넷째, 기본보육료 지원 영아 수에 연령별 월 기본보육료와 12개월을 곱한 후, 조정계수 0.7을 곱하여 연령별 연간 기본보육료 총 지원금액을 산출하였다([표 2] 참조). 이 때, 조정계수는 연간 기본보육료 총 지원금액 추계치와 실제 기본보육료 결산액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⁶⁾ 다섯째, 민간 어린이집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기본보육료의 일부에서 지출된다. 본 추계에서는 영아 1명당 연령별 기본보육료의 80%를 인건비를 받는다고 가정⁷⁾하여, 앞에서 산출한 연령별 기본보육료 총 지원금액에 0.8을 곱하여 민간 어린이집 연령별 영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총액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산출한 연령별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 총액을 민간 어린이집 연령별 영아 보육교사 수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을 산출하였다([표 3] 참조). 이 때, 추계기간 중 연령별 영아 보육교사 수는 2011년 교사 수⁸⁾를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지원 영아 수 증가율을 적용하였다.([표 4] 참조)

[표 1] 민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영아 수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만0세	77,892	80,937	83,810	86,556	89,187
만1세	121,701	125,259	128,463	131,453	134,297
만2세	149,567	147,419	148,478	149,221	149,816
합 계	349,161	353,614	360,750	367,230	373,300

- 6) 총 기본보육료 지원금액 추계치는 지원대상인 영아가 1년간 지속적으로 기본보육료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이었던 영아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도 중에 신규로 지원대상에 편입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총 기본보육료 지원금액 추계치와 실제 기본보육료 결산액의 차이는 이러한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조정계수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기본보육료 대비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비중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기본보육료의 대부분이 교사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동 비중을 80%로 가정한다.
- 8) 2011년 기준 만0세 보육교사 46,579명, 만1세 43,104명, 만2세 34,477명으로, 총 124,160이다.

[표 2] 민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액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만0세	236,201	252,795	269,621	286,812	304,394
만1세	177,878	188,570	199,197	209,947	220,924
만2세	144,482	146,679	152,164	157,513	162,887
합 계	558,562	588,044	620,982	654,272	688,205

[표 3] 기본보육료를 통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만0세	4.121	4.487	4.872	5.276	5.700
만1세	3.420	3.683	3.958	4.247	4.550
만2세	3.502	3.692	3.890	4.097	4.313
가중평균	3.709	3.993	4.289	4.600	4.925

주: 가중평균 1인당 인건비에서 가중치는 [표 4]의 연령별 보육교사 수 비중을 사용

[표 4] 민간 어린이집 영아전담 보육교사 수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만0세	45,856	45,069	44,273	43,491	42,726
만1세	41,605	40,960	40,257	39,546	38,848
만2세	33,010	31,786	31,293	30,756	30,213
합 계	120,471	117,814	115,822	113,793	111,787

3.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1인당 연 보수총액

전술한 바와 같이 2011년 현재 공립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를 지원받는다. 민간 어린이집의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를 개정안에

따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에 대한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공립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는 호봉별(1호봉~30호봉)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본 추계에서는 2010년말 기준 각 호봉별 연 보수총액에 공립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총 인원 수 대비 각 호봉별 영아 보육교사 수 비중(호봉별 가중치)을 곱한 다음, 이를 모두 합하여 가중평균된 연 보수총액⁹⁾을 산출하였다. 둘째, 본 추계에서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개 영아 연령별로 분리하여 추계하였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 영아 연령별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는 [표 3]에 제시된 민간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통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1인당 가중평균 인건비 대비 영아 연령별 1인당 인건비 비중을 앞에서 산출한 호봉별 가중평균 연 보수총액에 곱하여 산출하였다. 다섯째, 공립 유치원 영아 연령별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은 앞에서 산출한 영아 연령별 1인당 인건비에 지원비율 0.8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만0세	18.151	18.911	19.689	20.478	21.280
만1세	15.066	15.522	15.997	16.485	16.987
만2세	15.424	15.558	15.720	15.902	16.103

9) 2010년 기준 19,250,576원이다.

4.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기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되었던 인건비 지원대상을 동법 제10조제3호·제5호·제7호에 규정된 비영리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확대하되, 동법 제10조제2호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액은 [표 5]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단가에서 [표 3]의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표 4]의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 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2~2016년간 매년 1.5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7.6조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36조의2):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만0세	643,382	650,084	655,970	661,132	665,699	3,276,267
만1세	484,518	484,925	484,631	483,951	483,153	2,421,178
만2세	393,551	377,197	370,205	363,086	356,227	1,860,266
합 계	1,521,451	1,512,205	1,510,806	1,508,169	1,505,079	7,557,7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택시 회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그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재정수반요인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가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재정소요이다.

본 추계의 추정방법은 우선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되는 택시의 운행대수를 추정하고, 여기에 택시운영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2009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국토해양부, 2010.1)” 조사 결과,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교통약자는 장애인콜택시를 6.4% 이용하고 있고, 일반택시는 6.2%를 이용하고 있는 바, 장애인콜택시와 일반택시 이용자수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수는 2010년 12월 기준 장애인 콜택시 운영대수 1,302대로 추정하였고, 이 값이 향후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택시 운영비 단가는 일반중형택시 1일 대당 운영비의 24.7% 수준인 50,656원을 적용하였는데, 24.7%로 추정한 이유는 일반중형택시 1일 대당 영업횟수는 33.15회로 나타나고, 특별교통수단 일일운행회수는 8.2회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중형택시의 약 24.7%(8.2÷33.15) 정도의 운영비 보조를 가정한 것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적용된 물가상승률은 택시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평균임금에서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5년간 임금상승률 4.1%이다.

추계결과 2012년 기준 257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39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운영비 지원

시장 또는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안 제1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1) 2009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결과(국토해양부, 2010.1),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교통약자는 장애인콜택시 6.4%, 일반택시 6.2%로, 장애인콜택시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승용자동차의 대수는 2010년 12월말 기준 장애인콜택시 1,302대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운영비용은 일반 중형택시 1일 대당 영업횟수가 33.15회, 특별교통수단 일일운행회수는 8.2회로 나타나서 전체 운영비의 약 24.7%(8.2÷33.15) 정도의 운영비 보조를 가정하여 추정한다.

(3)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서,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4)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될 때, 재정소요는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되는 택시의 운행대수는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 1,302대로 가정하며(2009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콜택시 이용 교통약자 6.4%, 택시 이용 교통약자 6.2%로, 장애인콜택시와 일반택시 이용자수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함), 이 값이 향후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본다. 택시 운영비 단가는 일반중형택시 1일 대당 운영비의 24.7% 수준인 50,656원을 적용한다(일반 중형택시 1일 대당 영업횟수는 33.15회, 특별교통수단 일일운행회수는 8.2회로 나타나서 전체의 약 24.7%(8.2÷33.15) 정도의 운영비 보조를 가정함),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5년간 임금상승률 4.1%를 향후 5년간 적용하여 추정 한 결과, 2012년 기준 257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39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택시를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안 제16조)	257	268	279	290	302	1,3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교통약자 및 특별교통수단 현황

가. 교통약자

2009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2010년 1월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¹⁾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4%인 1,211만명 수준이며, 교통약자 중에서는 고령자(65세이상)가 506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41.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9년 교통약자 세부현황

(단위: 명, %)

	2008	2009	증가율
장애인	1,416,005	1,475,151	4.18
고령자	4,861,476	5,069,273	4.27
임산부	470,000	475,000	1.06
어린이	2,955,048	2,806,805	-5.02
영유아동반자	2,315,766	2,290,058	-1.11
합 계	12,018,295	12,116,287	0.82

주: 교통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제외
 자료: 국토해양부(2011.3)

교통약자는 통행 시 지하철(29.8%) > 버스(24.9%) > 자가용(22.8%)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은 버스(37.8%) > 자가용(32.1%) > 지하철(21.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표 3]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버스	자가용	지하철	보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	무료 셔틀	철도	합 계
교통약자	① 지체장애인	12.8	36.3	19.1	11.7	7.9	9.4	2.1	0.4	100.0
	② 시각장애인	17.8	5.5	37.2	9.6	5.7	22.6	1.2	0.4	100.0
	③ 청각장애인	30.0	15.5	49.7	2.7	2.2	-	-	-	100.0
	④ 고령자	38.0	24.1	29.9	6.0	1.1	-	-	0.8	100.0
	⑤ 임산부	26.3	32.7	13.1	13.5	14.4	-	-	-	100.0
평 균		24.9	22.8	29.8	8.7	6.2	6.4	0.6	0.3	100.0
⑥ 일반인		37.8	32.1	21.4	5.1	2.9	-	0.7	0.1	100.0
총평균		29.8	29.6	23.8	7.4	4.9	3.4	0.9	0.2	100.0

자료: 국토해양부(2010. 1) 「2009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나.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채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²⁾.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1급·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기타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등이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가 있으며³⁾, 법적 기준에 따른 운행대수는 전국적으로 총 2,785대이며, 2010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1,302대로 도입률은 46.7%이다.

2)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및 정기적으로 지정 노선을 순회하는 차량을 포함

3) 도입비(대당 40백만원 이상), 월운영비(대당 3백만원 이상)를 운행권자인 지자채에서 전액 부담

[표 4]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운영현황운행대수 및 이용대상

(단위: 대, %)

	기존 대수	운영 대수	도입율	이 용 대 상	운영구간
서울특별시	409	325	79.5	지체·뇌병변 1·2급 기타 휠체어 1·2급	시내 원척, 인접지역,공항
부산광역시	205	118	57.6	1,2급중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중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시내(왕복) 김해,양산편도
대구광역시	141	60	42.5	1~3급, 상이등급 3급이상 등	시내버스 운 행지역
인천광역시	145	114	78.6	1,2급 3급 뇌병변 및 하지장애 지체장애인	시내 및 인접지역
광주광역시	78	30	38.5	1,2급 3급지적·자폐성,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시내 및 인접지역
대전광역시	84	52	61.9	1·2급	시내
울산광역시	53	22	41.5	1·2급, 3급 지적·자폐성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시내 및 일부 인근지역
경기도	562	176	31.3	사·군별 상이 (휠체어, 목발 사용자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 지역
강원도	120	28	23.3	사·군별 상이(1·2급,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 지역
충청북도	109	49	44.9	사·군별 상이 (1·2급, 휠체어 이용자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충청남도	146	39	26.7	1·2급, 65세이상 노인 교통약자 동반자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전라북도	142	33	19.7	사·군별 상이 (주로 1·2급, 1~3급)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전라남도	159	24	15.1	사·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관내
경상북도	188	54	28.7	사·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관내
경상남도	205	169	82.4	사·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제주도	39		23.0	중증 지체, 뇌병변 및 지적장 애인 노인 등	관내
합계/평균	2,785	1,302	46.7		

자료: 국토해양부(2010.12)

2. 재정수반요인

가. 대상

2009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결과, 버스, 자가용, 지하철 등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6.4%로 나타나며,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6.2%로 나타나서, 장애인콜택시와 일반택시 이용자수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수는 [표 4]에 나타난 2010년 12월 기준 장애인 콜택시 운영대수 1,302대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단가

울산지역 일반 중형택시의 1일 대당 운영비(2010년 기준)는 중앙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4,788원, 대당 일일 영업횟수는 33.15회로 조사되었다(참고표 2). 다음 [표 5]에서 울산지역 특별교통수단 일일운영횟수는 8.2회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 운영비 단가는 일반중형택시 1일 대당 운영비에 24.7%(=8.2회÷33.15회)를 곱한 50,656원으로 가정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표 5]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운행횟수 및 이용요금

(단위: 대, %)

	운영단체	이용요금	일일 운행횟수	연간 이용자수 (2009년)	휠체어 탑승설비 이용률
서울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8.9	647,923	55.4%
부산	부산법인택시 사업운송조합	택시요금의 35% 수준	7.7	643,939	49.3%
대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10	95,564	26.0%
인천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7.9	173,029	65.0%
광주	(사)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택시요금의 35% 이내	6.3	37,651	37.5%
대전	시각장애인 연합회	택시요금의 50%이내	7.1	49,676	37.9%
울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협회	시내버스요금의 3배 이내	8.2	24,107	28.7%
경기도	운송사업자/ 시설관리공단	시·군별 상이	5.5	73,897	44.6%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지체장애인 협회 등	시·군별 상이	6.1	36,489	79.5%
충청북도	장애인단체	시·군별 상이	7.3	31,715	71.4%
충청남도	지체장애인 협회 등	시·군별 상이	5.4	42,390	39.6%
전라북도	장애인단체	시·군별 상이	7.7	46,977	98.0%
전라남도	장애인단체	시·군별 상이	10.7	24,309	63.4%
경상북도	장애인단체	시·군별 상이	4.0	18,556	58.9%
경상남도	택시업체 위탁운영	시·군별 상이	6.0	47,011	64.0%
제주도	장애인단체	무료	6.5	22,403	38.3%
평균/합계			7.2	2,015,636	53.6%

자료: 국토해양부(2011.3)

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택시의 운행대수는 [표 4]의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 1,302대가 향후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운영비 단가는 일반중형택시 1일 대당 운영비에 24.7%를 곱한 50,656원을 적용한다. [참고표 2]의 울산지역 중형택시 운송원가 집계표에 의하면 택시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평균임금⁴⁾에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5년간 연평균 상승률 4.1%를 향후 5년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 2012년 기준 257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39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6] 택시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소요예산 추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택시를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25,721	26,771	27,864	29,001	30,185	139,5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될 때, 재정소요는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되는 택시의 운행대수

4) 고용노동부 직종별 임금 (단위: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32,728	1,724,513	1,759,152	1,890,864	1,916,041
전년대비 증가율	7.3%	5.6%	2.0%	7.5%	1.3%

자료: 통계청(2010) 한국통계연감

는 2010년 기준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 1,302대로 가정하며, 이 값이 향후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본다. 택시 운영비 단가는 일반중형택시 1일 대당 운영비에 24.7%를 곱한 50,656원을 적용한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5년간 임금상승률 4.1%를 향후 5년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2012년 기준 257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39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택시를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안 제16조)	257	268	279	290	302	1,3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III. 참고자료

[참고표 1]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2010년도 예산집행계획
서울특별시	18,677	19,484
부산광역시	3210	3,840
대구광역시	1353	3,950
인천광역시	5,464	5,663
광주광역시	1,235	1,430
대전광역시	951	2,191
울산광역시	624	910
경기도	1,589	4,004
강원도	496	498
충청북도	1,200	1,817
충청남도	493	407
전라북도	536	957
전라남도	249	367
경상북도	849	663
경상남도	6,011	8,880
제주도	203	550

자료: 국토해양부(2011.3)

[참고표 2] 울산지역 중형택시 운송원가 집계표

(단위: 원)

		대당 1일	구성비(%)
운송원가	유류비	40,176	19.6%
	인건비	90,100	44.0%
	복리후생비	4,898	2.4%
	차량유지비	6,553	3.2%
	감가상각비	12,273	6.0%
	차량보험료	8,467	4.1%
	사고보상비	305	0.1%
	소 계	162,772	79.5%
일반관리비	인건비	10,551	5.2%
	복리후생비	1,856	0.9%
	제세공과금	1,902	0.9%
	기타경비	4,582	2.2%
	소 계	18,891	9.2%
영업외수익	-8,985	-4.4%	
총원가	172,678	84.3%	
적정이윤	13,493	6.6%	
부가가치세	18,617	9.1%	
총운송원가	204,788	100.0%	

주: 울산지역 일일 영업횟수 33.15회
 자료: 중앙경제연구원, 2010년 기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제정안은 군인스포츠 교류 및 군사외교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발의되었다.

제정안에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등을 설립하고,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보완하고, 선수촌을 건설하고 그리고 대회 운영을 위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동 제정안에서는 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익의 발생 등이 예상된다.

본 추계에서는 경기장 및 부대시설 보완 비용은 세계군인체육대회 경기종목과 관련 경기장 현황을 비교하여 개보수 대상, 시설물 설치 및 환경 개선 필요 경기장으로 구분한 후 소요비용을 산정하였다¹⁾. 선수촌 건설비용은 예상하는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필요한 선수촌의 수를 추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참석 예상인원은 110개국 약 5,400여명의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3,300명 등 총 8,700여명이다.

대회 운영비에 대한 추계는 운영비가 소요되는 부분을 경기부문, 행사부문, 지원부문, 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비용은 운영비용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였다.

추계결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 2012년 113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431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대구경북연구원,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조직위원회의 설립(안 제3조)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며, 위원회의 업무는 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나. 기금의 설치(안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유치·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각각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다. 수익사업(안 제9조)

조직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라.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안 제21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또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시행일을 법률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안과 관련 예산안 심의 기간 및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연도가 2015년임을 감안하여, 추계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정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관련시설(경기장, 선수촌 등)을 준비하고 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 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1]과 같이 2012년도 113억원을 비롯하여 2015년까지 4년간 431억원(국비 269억원, 지방비 16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5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합계
안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경기장 시설 보완	17	18	18	18	71
	대회 운영	117	117	117	117	468
	소 계(a)	134	135	135	135	539
안 제9조(수익사업)(b)		22	22	22	42	108
추가 재정소요(a-b)		113	113	113	92	431

주: 추가 재정소요는 국방부 및 경상북도 문경시의 계획에 따라 선수촌 건설비용(2,975억원)을 민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동 비용을 추계하지 않은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비용추계 대상

(1) 조직위원회의 설립(안 제3조)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며, 위원회의 업무는 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2) 기금의 설치(안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유치·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각각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3) 수익사업(안 제9조)

조직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4)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안 제21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또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비용추계 방법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이하 “세계군인체육대회”라 한다)개최 관련 비용은 주로 경기장 건설비, 선수촌 건설비, 대회 운영비 등의 지출소요와, 휘장 및 광고 사업 등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요비용은 국방부와 경상북도 문경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 추가 재정소요 >

재정소요= 경기장 및 부대시설 보완비용+대회운영비-사업 수익

2. 경기장 및 부대시설 보완 비용(안 제3조 관련)

국방부에 의하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정식 종목 26개 중 스키를 제외한 25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 종목과 관련 경기장 현황은 [표 2]와 같다. 25개 예정 종목 가운데 일반경기 4종 및 군사 경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가 향후 이전하는 국군체육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군 체육부대는 부대시설(경기장 및 연습장 등)과 함께 2012년 까지 문경시로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표 2] 세계군인체육대회 경기종목과 관련 경기장 현황

CISM ²⁾ 운영 종목		국군체육부대 시설 이용 유·무	경기장 시설 이용 가능 지역	
구기 (4종목)	축 구	유	문경, 김천, 상주, 영주, 안동	
	농 구	유	문경, 안동	
	핸 드 볼	유	문경, 상주	
	배 구	유	문경, 김천	
일반 경기 (18종목)	복 싱	유	문경, 영주	
	유 도	유	문경, 국군체육부대	
	태 권 도	유	문경, 국군체육부대	
	레 슬 링	유	문경, 국군체육부대	
	사 격	유	문경, 국군체육부대	
	수 영	유	문경, 김천	
	펜 싱	유	문경, 국군체육부대	
	육 상	유	문경, 상주	
	사 이 클	유	국군체육부대	
	승 마	유	상주	
	골 프	유	안동	
	근대 5종	유	국군체육부대	
	야지횡단	유	문경	
	세 일 링	-	포항	
	독 도 법	-	영주	
	파라슈팅	-	포항	
	철인 3종	유	포항	
	마 라 톤	-	문경	
군사 경기 (16종목)	육 군 (5종)	수류탄투척	-	국군체육부대
		수 영	유	국군체육부대
		장 애 물	-	국군체육부대
		야지 횡단	유	문경
		사 격	유	국군체육부대
	해 군 (5종)	인명 구조	-	포항
		수 영	유	포항
		장 애 물	-	포항
		수륙 횡단	-	포항
		함상 기술	-	포항
	공 군 (6종)	사 격	-	포항
		수 영	유	포항

CISM ²⁾ 운영 종목		국군체육부대 시설 이용 유·무	경기장 시설 이용 가능 지역
	펜싱	유	포항
	구기	유	포항
	장애물	유	포항
	독도법	-	포항

주: 「기본계획」, p. 96

자료: 국방부

따라서 추가 시설 보완이 필요한 시설 현황 및 소요 비용 내역은 [표 3]과 같다. 주경기장 30개소, 보조경기장 4개소, 연습경기장 22개소의 개보수 소요예산은 71억 2,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비용을 연도별로 균등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추계하면 [표 4]와 같다.

[표 3] 개보수 필요 시설 및 관련 소요 예산

구분	경기장			사업비 (백만원)
	주	보조	연습	
경기장 시설물 설치 등	13개소	13개소	-	1,867
개보수	11개소	5개소	-	4,740
환경 개선	32개소	12개소	4개소	515
합계	56개소	30개소	4개소	7,122

주: 「기본계획」, p. 264

자료: 국방부

[표 4] 개보수 비용의 연도별 소요 전망: 2012~2015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합계
소요액	1,781	1,781	1,780	1,780	7,1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이며, CISM은 불어이고, 영어로는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임.

3. 선수촌 건설비(안 제3조 관련)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 예정 인원은 110개국 약 5,400명의 선수단과 약 3,300명의 관계자로 총 8,700명을 예상하고 있다. 선수촌은 2개(제1선수촌과 제2선수촌)로 건설할 예정이며, 건설비용 내역은 [표 5]와 같다. 제1선수촌 건설비용은 2,394억원이며, 제2선수촌은 581억원으로 총 2,975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문경시에 의하면, 제1선수촌은 민자유치로 건설하고, 제2선수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 형태로 건설하며, 건설된 아파트 등은 대회 종료 후에 임대 및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정부에서 선수촌 건설과 관련하여 직접 지원 재정소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추계에서도 추가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회 종료 후 선수촌(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의 분양이 미진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선수촌 규모와 건설 비용

구분	규모	소요예산	비고
제1선수촌	• 공동주택: 아파트형 700세대(109,340 m ²) 타운하우스형 200세대(53,550 m ²)	2,180억원	민자유치로 건설
	• 부대시설: 컨벤션시설, 국제교류센터, 체육부대 홍보관, 의료지원시설, 선수 촌 업무지원시설 등 21,840m ² (6,600평)	214억원	
	소 계	2,394억원	
제2선수촌	• 공동주택: A블럭 314세대(11,626m ²) B블럭 194세대(11,487m ²)	581억원	한국토지주 택공사에서 건설
합 계		2,975억원	

주: 「기본계획」, pp. 144~146
자료: 국방부

4. 대회 운영비(안 제3조 관련)

국방부는 대회 운영비 소요를 크게 경기부문, 행사부문, 지원부문, 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세부 내역은 [표 6]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대회운영비는 총 467억 3,900만원으로 본 추계에서는 이를 균등하여 연도별 소요액으로 추계하기로 하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대회 운영비

부문	구분	소요비용 (백만원)	산출 내역
경기 부문	경기기획	520	경기진행 매뉴얼 작성 1억원, 경기장 운영계획 작성 1억원, 경기프로그램 수립 0.8억원, 경기기술규정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배포 0.4억원, 경기전문위원회 운영 0.2억원, 종목담당관제 운영 1억원, 경기 종합상황본부 운영 0.8억원
	경기운영	5,388	대회운영비(인력활용비 등) 28.48억원, 경기요원 교육비 0.63억원, 경기용 기구 임차비 19.71억원, 일반 물자 5.06억원
	시상운영	680	시상요원 교육 및 훈련, 메달 및 증서 제작, 기타 시상용품 제작 및 관리 비용 6.8억원
	소 계	6,588	
행사 부문	개폐회식	3,300	800명 인력의 행사연습 및 진행 5억원, 개폐회식 프로그램 작성 2억원, 행사운영물자 구입 3억원, 전문공연팀 확보 10억원, 행사연습 계획 0.3억원, 행사 연습장소 확보 및 수송 2.7억원, 물자 및 인력 운영 10억원
	성화봉송	300	성화채화 시나리오 작성 및 작품제작과 공연 0.3억원, 주자요원 선발 및 행사 진행 1억원, 성화 안치 및 출발지 행사 0.8억원, 성화 봉송 맞이 축제 행사 0.8억원
	문화행사	360	선수촌 문화행사용 프로그램 제작 0.2억원, 행사 공간 확보 및 진행 1억원, 경축전야제 0.6억원, 기획 문화행사 지원 1억원, 방위산업전시회 개최 0.8억원
	소 계	3,960	
지원 부문	인력지원	2,426	대회운영 요원 15.12억원, 교육훈련 1.05억원, 후생복지 8.09억원
	물자지원	1,394	물자확보 지원사업비 5억원, 2개의 중앙창고 설치 및 운영비 0.8억원, 물자 회수 및 처리비 1억원, 디자인 0.5억원, 모자 0.84억원, 1,815벌의 정장 1.82억원, 5,945벌의 잠바 1.78억원, 2,000벌의 트레이닝복 1.2억원, 100벌의 성화봉송복 0.8억원, 6,413벌의 조끼 0.96억원 등
	수송운영	4,992	약 8,704명에 대한 김포공항에서 예천공항과 포항공항까지 항공지원료 8.7억원, 승용차 대형 30대, 중형 30대, 소형 50대의 임대비 1.22억원, 12인승 164대의 승합차 임대비 2.71억원, 45인승 346대의 버스 임대비 12.97억원, 1.5톤 14대의 화물차 임대비 0.42억원, 특수차 30대 임대비, 480명의 운전요원 10.8억원, 급유 등 소모성 물자비 9.8억원 등

부문	구분	소요비용 (백만원)	산출 내역
속소운영	속소운영	9,000	제1선수촌 30.62억원, 제2선수촌 21.95억원, 문경권 분촌 27억원, 포항권 분촌 10.43억원으로 구성 -제1선수촌에는 총 1,915명의 선수단, 502명의 임원, 600명의 미디어진 예상 -제2선수촌에는 총 2,162명 선수단 예상
	시설운영	2,579	40동의 임시화장실 임차비 1억원, 36동의 행사용 텐트 임차비 0.3억원, 미디어센터 임차비 3.6억원, 43개소 경기장 임차비 6.02억원, 5개소의 행사용 전기공사 3.45억원, 가로변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3.83억원, 50개 경기장 청소비 5억원 등
	기술지원	1,609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3.5억원, 통신운영 3.7억원, 구내방송설비 운영 5.14억원, 전광판 운영 2.25억원, 전자 시설 운영 1.5억원
	의전운영	546	전담 통역 3.76억원, 리셉션 등 0.9억원, 귀빈관광 0.8억원
	홍보운영	3,459	국내홍보 10.26억원, 해외 홍보 4.33억원 보도 지원 10억원(등록 및 상황운영, 협의회 운영, 작업실 조성 및 운영, 취재 지원, 기자회견 운영 등), 방송 지원 10억원(방송 지원실, 국제방송신포 제작실, 개별방송신포 제작실 등 운영비와 경기장 방송중계시설 운영비 등)
	보도방송		
	안전관리	1,499	45개소의 수요시설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4.5억원, 개폐회식 등 4회의 주요 행사 경비와 경호 대행비 3.4억원, 37개소의 숙박시설 및 경기장 경비경호 대행비 6.29억원 등
	국제협력	725	국제학술회의 개최 7.2억원 및 대회초청장 발송비 0.05억원
	의무지원	980	33개 의료지원팀구성과 운영을 위해 0.99억원, 의약품과 소모품 등 3.96억원, 17개소 도핑 시설설치비 1.7억원, 도핑 시설운영비 2.55억원, 보건·위생교육 0.3억원, 예방접종 및 보건검사 등 0.3억원
	소 계	29,209	
관리 부문	기관운영	5,400	5년간 인력 총원과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50억원과 위원회 구성 1억원, 위원회 운영 1억원, 집행위원회 운영 4억원
	재정운영	300	재정계획수립 0.3억원, 재원 확보 지원 0.5억원, 보험운영 2.2억원
	CISM 대 회개최비	782	CISM 대회개최비 7.82억원: CISM 규정상 대회 개최국가가 CISM에 500,000 유로를 지불하는 규정에 의한 것임.
	예비비	500	
	소 계	6,982	
합계		46,739	

주: 「기본계획」p. 267

자료: 국방부

[표 7] 대회운영비의 연도별 소요 전망: 2012~2015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금액	11,685	11,685	11,685	11,684	46,7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대회 관련 위원회 운영비용(안 제3조, 안 제21조)

조직위원회와 지원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운영비용은 위의 [표 6]에 있는 것처럼 대회운영비 중 기관운영비(54억원)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추계하지 않기로 한다.

6. 수입

국방부와 문경시에 의하면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휘장 판매와 광고 등으로 인한 사업수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액은 [표 8]과 같다. 휘장 사업으로 62억원, 광고 사업으로 26억원, 숙박비 수입으로 20억원 등 총 108억원을 예측하고 있다.

[표 8] 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휘장 사업 (엠블럼, 마스코트 등)	광고 사업	숙식 사업	합계
6,208	2,568	1,996	10,772

주: 「기본계획」p. 287

자료: 국방부

그런데 동 「기본계획」을 검토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목표치가 달성되지 못할 소지³⁾가 있다고 보고 있어,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추계에서는 수입을 4년간으로 균등하여 발생할 것으로 하고, 숙박사업만 2015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그 결과 연도별 수입 전망은 [표 9]와 같다.

[표 9] 수입액의 연도별 전망: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합계
수입액	2,194	2,194	2,194	4,190	10,7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관련시설(경기장, 선수촌 등)을 준비하고 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 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10]과 같이 2012년도 112억 7,200만원을 비롯하여 2015년까지 4년간 430억 8,9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기본계획」에 의하면 소요비용의 부담을 국비 269억 3,100만원, 지방비 161억 5,8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계엑스포 행사의 경우 총 관람객 100만명 이상 사업에서 휘장사업 실적은 약 10억원 정도 규모이며, 2007년 추진된 인도 세계군인대회의 경우 기념품(로고와 Bison마스코트)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10]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5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합계
안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경기장 시설 보완	1,781	1,781	1,780	1,780	7,122
	대회 운영	11,685	11,685	11,685	11,684	46,739
	소 계(a)	13,466	13,466	13,465	13,464	53,861
안 제9조(수익사업)(b)		2,194	2,194	2,194	4,190	10,772
추가 재정소요(a-b)		11,272	11,272	11,271	9,274	43,089

주: 추가 재정소요는 국방부 및 경상북도 문경시의 계획에 따라 선수촌 건설비용(2,975억원)을 민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동 비용을 추계하지 않은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발 간 일	2012년 4월 19일
편 집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과
발 행 인	주 영 진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원양산업 (TEL 02·2263·9262)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TEL 02·788·3773)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521-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2

